

2024 주요 부처별 수출 지원사업 세부내용



조달청

KIP 한국조달연구원

참고

수출바우처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수출바우처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주관부처에 따라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으로 개별 공고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신청시 확인이 필요함

사업명 (주관부처/운영기관)	세부사업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국고 보조율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기부/중진공)	내수	0불 < 전년도 수출액 < 1,000불	최대 3천만원 (특정한 내수기업: 4.5천만원)	전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60% (300억원 이상) 50%
	초보	1,000불 < 전년도 수출액 < 10만불	최대 3천만원	
	유망	10만불 < 전년도 수출액 < 100만불	최대 4.5천만원	
	성장	100만불 < 전년도 수출액 < 500만불	최대 7천만원	
	강소	500만불 < 전년도 수출액	최대 1억원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산업부/KOTRA)	소재·부품·장비	기초 소재, 제약, 의료기기,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전력·플랜트, 기계·장장비 등	(진입) 5천만원 (성장) 7천만원 (확장) 1억원 중 택	(중소) 70% (중견) 50%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진입) 3천만원 (성장) 5천만원 (확장) 5.5천만원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T 서비스 등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부/KOTRA)	내수중견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액 1,000만불 미만	1억원	70%
	Jumping 중견글로벌	예비중견기업		
	중견글로벌	① WC 300, WC Plus, ② 중견기업	(중소) 1.3억원 (중견) 2억원	(중소) 70% (중견) 50%
	Post 중견글로벌	위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2억원	30%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1점 부여

1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사업명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해외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컨설팅, 광고·홍보,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등 14개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참고-바우처 운영방식) 운영기관인 중진공·KOTRA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선정기업은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를 통해 각종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 <p style="text-align: center;">[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p> <p>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p>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4.4.1.일 기준)**

-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 1) 2022년 4월 1일 이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은 바우처 사용률 검토 대상
 - 2) '23년 참여기업 중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하단표 참조)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협약일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04.01~'24.02.29 (23년1차)	63% 이상 77% 미만 63%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07.01~'24.03.31 (23년2차)	54% 이상 66% 미만 54%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08.01~'24.03.31 (지방청 자율예산)	52% 이상 63% 미만 52%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10.23~'24.03.31 (첫걸음기업)	42% 이상 51% 미만 42%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3.10.7)으로 인해 취소·연기된 전시회 및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는 증빙서류* 확인 후 사용으로 간주
 - * 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진출 내용이 포함된 사용 계획서 2. 전쟁발발 전 접수한 해당지역 전시회 혹은 인증신청을 한 신청서(부스신청서, 접수증), 인보이스, 계약금 입금증, 환불영수증 등 비용 증빙 3. 전쟁으로 인해 취소·연기됨을 안내 받은 서류/ 메일 등 증빙서류를 '24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특수관계여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캠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4개 분야 약 8,000여개 서비스(아래 그림 참고)를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 바우처: 수출바우처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30~50%)으로 구성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가능

- (바우처 발급액)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은 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5가지 세부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으로 분류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이 상이함

세부사업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내수	전년도 수출액 0불~1,000불 미만	최대 3천만원
	특정한 내수기업*	최대 4.5천만원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최대 3천만원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최대 4.5천만원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최대 7천만원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최대 1억원

* 특정한 내수기업은 '내수' 유형 신청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간접수출 실적의 경우,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신청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단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바우처 졸업제 적용: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하여 각 유형별 최대 발급 한도가 적용됨 → (내수) 6천만원, (초보) 6천만원, (유망) 9천만원, (성장) 14천만원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23년도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실적 인정기준)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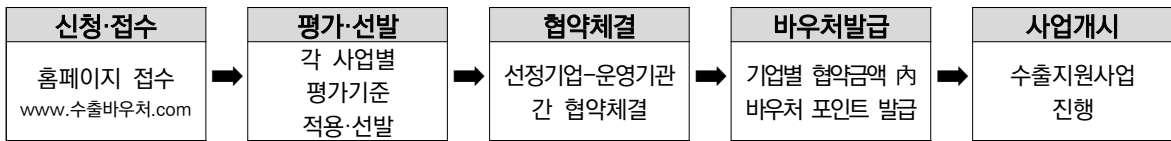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1)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국고 보조율) 기업의 전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율이 상이함

매출액 규모	국고 보조율(%)
전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전전년도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60
전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

▪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의 단계를 따름



신청기간

▪ 전년 12월~1월, 6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웹사이트(www.수출바우처.com/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산업부(KOTRA)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가능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참고)
 -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참고-평가절차) 평가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나,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자동연계 신청기업 중 '강소' 단계는 발표 평가 필수
 -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참고-가점항목) 가점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가점항목	가점
1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기업)	1
2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 기업(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또는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1
4	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호 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1
5	'23년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 기업*	1
6	초격차 스타트업	1
7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
8	소부장 스타트업 100	1
9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10	명문장수기업	1
11	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지역 스타기업	1
12	소부장 강소기업	1
13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1
14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2024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불가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24년도 공고 기준)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내 작성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제출
⑤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⑧	'21~'23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실적)	
⑨	선택 (희망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⑪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⑫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⑬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2~'23년) ※ 수출국다변화 성공기업 필수 제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①~②)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작성 및 첨부 불필요)
 - (③)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의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사용자 메뉴얼이 첨부되어 있음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중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내수기업도 제출 必)
 - (⑨~⑬)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3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문의)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해외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컨설팅, 광고·홍보,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등 14개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참고-바우처 운영방식) 운영기관인 중진공·KOTRA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선정기업은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를 통해 각종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 <p style="text-align: center;">[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p> <p>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p>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업종 분류</th> <th>품목코드</th> <th>지원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조업</td> <td>33402中</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 </tr> <tr> <td>33409中</td> <td>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td> </tr> <tr> <td>46102中</td> <td>담배 중개업</td> </tr> <tr> <td rowspan="3">도매 및 소매업</td> <td>46331, 46333</td> <td>주류, 담배 도매업</td> </tr> <tr> <td>4722中</td> <td>주류, 담배 소매업</td> </tr> <tr> <td>5621</td> <td>주점업</td> </tr> <tr> <td>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td> <td>5821中</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td> <td>9124</td> <td>갬블링 및 베팅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div>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4개 분야 약 8,000여개 서비스(아래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참고)를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 * 바우처: 수출바우처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30~50%)으로 구성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 (지원품목)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은 기업의 산업 분류에 따라 4가지 세부사업(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으로 분류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주요 지원품목이 상이함(아래 표 참고)

세부산업	주요 지원 품목
소재·부품·장비	기초소재, 제약원료,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i)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ii)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iii)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iv)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 v)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vi)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vii)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viii)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가전 등 i)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ii) 식품 :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iii)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iv) 의약품 : 신경계감각기관용, 기관계용, 대사성, 조직세포 기능용, 항병원생물성 등 v)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등 i)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ii)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iii)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iv)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 세부사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 수준(진입, 성장, 확장)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이 상이함(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로, 4가지 세부사업 모두 동일한 비율임)

세부사업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국고 보조율
소부장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5천만원	(중소) 70% (중견) 50%
그린		(성장) 7천만원	
소비재		(확장) 10천만원	
서비스		(진입) 3천만원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성장) 5천만원 (확장) 5.5천만원	

※ 위의 평균 매출액 산정 기간은 '24년도 모집공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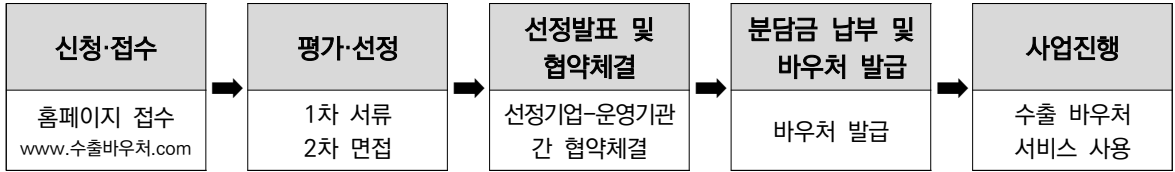
※ 바우처 발급액 최소단위: 2천만원

- (바우처 발급액별 국고 보조금 및 기업 부담금) 아래 표 참고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3,850만원	1,650만원	2,750만원	2,750만원
6,0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의 단계를 따름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 전년 12월~1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웹사이트(www.수출바우처.com 또는 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산업(소재·부품·장비/소비재/서비스/그린)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 저장 및 제출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가능
 -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참고-평가절차) 1차 서류 평가 및 2차 면접 평가로 진행
 - (1차 서류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 면접 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 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1, 2차 접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 (참고-평가기준)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아래 표 참고)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실적,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등

-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 적용
- ※ 산업별 우대사항은 아래 가점항목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 관세청 수출통계 및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참고-가점항목) 세부사업별 가점항목은 다음과 같음

연번	구분	소부장	그린	소재	서비스
1	고용창출 우수기업	√	√	√	√
2	산업융합 선도기업	√	√	√	√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	√	√
4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	√	√	√
5	사업재편승인기업	√	√	√	√
6	ICT 융합 품질인증 기업	√	√	√	√
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23년)	√	√	√	√
8	경제외교사절단 참가기업('23년)	√	√	√	√
9	KOTRA 지원단 운영 지자체 바꾸쳐 참가기업 (경기도, 충북도, 광주시) ('23년)	√	√	√	√
10	CES 혁신상 수상기업 ('21~'23년)	√	√	√	√
1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	√	√	
12	방산 GP 참여기업 ('23년)	√	√	√	
13	산업위기 대응 지역 소재기업	√	√		
14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	√		
15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23년)	√	√		
16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	√		
17	바이오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23년)	√		√	
18	뿌리기업	√			
19	뿌리기술 전문기업	√			
20	국제 공동 R&D 수행기업	√			
21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22	소부장 전문기업	√			
23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기업	√			
24	자동차부품기업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			
25	녹색인증기업		√		
26	수소 전문기업		√		
27	K-ESG 시범평가 우수 중소중견기업		√		
28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		
29	녹색혁신기업 인증기업		√		
30	친환경 경영시스템 인증기업(ISO 14001, 50001)		√		
31	로하스(LOHAS) 인증기업		√		
32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		
33	환경표지 인증기업		√		
34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선정기업		√		
35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유공 포상기업		√		√
36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우수기업		√		√
37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	
38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기업			√	
39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40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	
41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	
42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	√
43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수상기업(장관상)				√
44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기업(단체·장관상)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 7, 8, 9, 10, 12, 16, 17, 23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가점증빙 보유기업은 2차 면접 시 추가 확인 예정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참고-신청 유의사항)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선정 불가
 -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24년도 공고 기준)

연번	구분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필수	사업계획서	웹사이트 내 작성(별도 제출 불요)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웹사이트 내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③		사업자등록증명	NICE평가정보 oneclick 서류제출플랫폼*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년)	
⑤		4대보험 가입자명부('21~'23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⑧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⑨	선택	기타 우대조건(가점항목)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세부사업별 우대조건은 위의 '참고-가점사항' 표 참고
<p>※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 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p>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문의) 온라인 문의 및 유선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의)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 → 문의하기 →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유선 문의) 수출바우처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070-4866-0722 ▪ (시스템 관련 문의) 유선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이용 관련) ☎ 02-6004-8400, 070-4866-0722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3771-1100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p>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해외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컨설팅, 광고·홍보, 전시회, 해외 규격인증 등 14개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전문위원(KOTRA본사) 배정 및 해외무역관(KOTRA해외, 84개국, 129개 무역관) 연계를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목표시장 선정, 진출전략 수립 등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 (참고-바우처 운영방식) 운영기관인 중진공·KOTRA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선정기업은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를 통해 각종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 <p style="text-align: center;">[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p> <p>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p>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강소·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 0;">신청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재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 사업개시일(2024. 2.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4년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개시일(2024. 2. 1.)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1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고)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업종 분류</th> <th>품목코드</th> <th>지원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조업</td> <td>33402中</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 </tr> <tr> <td>33409中</td> <td>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td> </tr> <tr> <td>46102中</td> <td>담배 증개업</td> </tr> <tr> <td rowspan="3">도매 및 소매업</td> <td>46331</td> <td rowspan="3">주류, 담배 도매업</td> </tr> <tr> <td>46333</td> </tr> <tr> <td>4722中</td> </tr> <tr> <td>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td> <td>5821中</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9124</td> <td>캠핑 및 베팅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p>※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p> </div>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증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캠핑 및 베팅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증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캠핑 및 베팅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4개 분야 약 8,000여개 서비스(아래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참고)를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 * 바우처: 수출바우처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30~70%)과 기업분담금(30~70%)으로 구성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 바이어 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청문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당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 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초청 고객행사(설명회/세미나 등), 세일즈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성,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 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 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용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 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청산이 가능함

-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격요건에 따라 4가지 세부사업(내수중견, 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으로 분류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상이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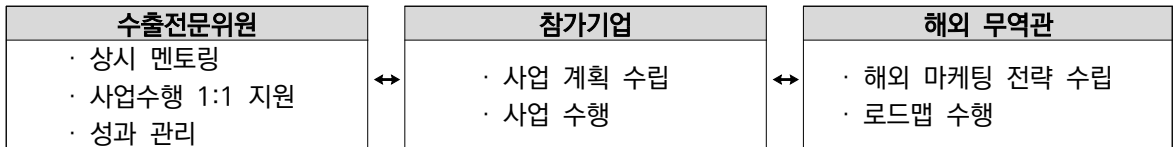
구분	내수중견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 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요건	-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예비중견기업	- WC 300, WC Plus - 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유형 5회 참가기업
지원횟수	최대 3회	최대 5회		
지원내용 ①	· 해외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컨설팅, 광고·홍보,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등 14개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내용 ②	· 수출전문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 네트워크(84개국, 129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중소) 1.3억원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 바우처 발급액은 세부사업별 발급 가능한 최대 액수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 최대 지원횟수 10회 초과 불가('내수중견' 유형 지원횟수는 제외)
- ※ 사업기간 내 바우처 발급액 증액 사유 발생시 WC 300, WC Plus 등 혁신형 기업 우대
- ※ 지원요건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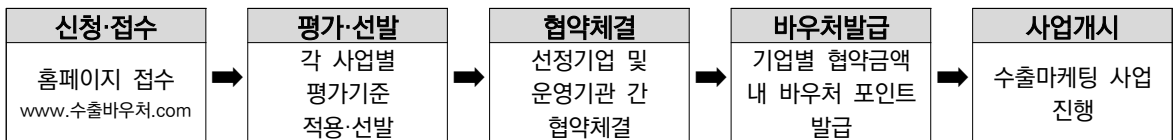
- 예비중견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WC 300 / WC Plus: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 300 / WC Plus 사업 선정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내용 ②)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해외무역관(KOTRA해외)'의 3자 협업체계를 통해 타켓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한 연간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 컨설팅, 광고·홍보,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등 14개 분야 수출마케팅 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3각 지원체계]



-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의 단계를 따름



신청기간

- 전년 12월~1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웹사이트(www.수출바우처.com 또는 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가능
-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참고-평가기준)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아래 표 참고)
- 평가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 동점 시 선정 기준: 1) 가점항목 많은 기업, 2) 본 사업 기존 참여기업

구분	내용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해외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계량) 서류심사 · (2차-비계량)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외부위원 입회)

- (참고-가점항목) 가점항목은 다음과 같음

연번	구분	주관기관
1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	WC300, WC Plus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4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5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6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7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ATC 협회
8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9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0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지방자치단체
11	수소 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12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13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14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15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16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참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참고-신청 유의사항)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선정 불가
-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웹사이트 내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③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
⑤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2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⑦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⑧		수출실적증명원('20~'22년)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⑨	선택	기타 우대조건(가점항목)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 세부사업별 우대조건은 위의 '참고-가점사항' 표 참고

신청서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문의) 온라인 문의 및 유선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의)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 → 문의하기 →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유선 문의) KOTRA 중견기업팀 ☎ 02-3460-7233, 7240, 7246 ▪ (시스템 관련 문의) 유선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4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사업명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 완화 - 선정 기업에 바우처 발급 후 기업이 바우처를 통해, 발생한 물류비에 대한 정산을 신청하면 중진공은 정산 검수 후 기업에 정산금 지급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 0;">지원신청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2년 및 '23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중기부 수출바우처('22년 2차 및 '23년 선발기업)과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3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업종 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품목코드</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33402중</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3409중</td> <td>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도매 및 소매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6102중</td> <td>담배 중개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331</td> <td rowspan="2">주류, 담배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33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22중</td> <td>주류, 담배 소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숙박 및 음식점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621</td> <td>주점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821중</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9124</td> <td>갬블링 및 베팅업</td> </tr> </tbody> </table>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중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중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중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중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기업 자부담금 30%) - 일반·온라인 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수출국 다변화기업 최대 15백만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지원조건 ①)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지원조건 ②) 기업이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산 가능/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인 경우 지원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 DPU, 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 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 할증료: 유류 할증료, 저유황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⑥ 정산 검수 신청 가능 물류비: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 정산 예정 금액: ⑥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 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 가능 · 국내 운임 및 취급 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 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 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지원한도)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기업 자부담금 30%)
- 일반·온라인 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중도 변경 불가)

신청구분	지원한도	비고
일반·온라인 수출기업	10백만원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 선정
수출국 다변화기업	15백만원	전전년도 수출국가 대비 전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신규 수출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전전년도, 전년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요)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사례】

구분	'21년도 수출국	'22년도 수출국	여부	비고
예시 1	일본, 중국	미국, 일본, 중국	O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증가
예시 2	미국, 중국	일본, 중국	X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동일
예시 3	일본, 중국	미국	X	신규국가 추가되었으나,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수 감소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며,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위의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총 신청액	지원금액
지원가능	예시 1	20만원	20만원	14만원
	예시 2	5만원+3만원+5만원+2만원+5만원	20만원	14만원
	예시 3	100만원+200만원+100만원+1만원+9만원	410만원	287만원
지원불가	예시 1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13만원	물류비 2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예시 2	10만원(인코텀즈 D)+10만원(인코텀즈 F)*	10만원	

* (지원불가 예시 2) 인코텀즈 F조건은 지원불가 항목이므로 총 신청액은 10만원임. 기업은 해당 10만원 집행액을, 지원이 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확인 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절차) 선정된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물류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② 정산 신청)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정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산가능 기간이 정해지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 초과외의 경우 정산불가 - (③ 정산금 지급)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shi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물류바우처지원' 선택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택1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수출바우처 웹사이트용 공인인증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가능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참고)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div>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90%;">신청서류</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사업신청서</td> </tr> <tr> <td>②</td> <td>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td> </tr> <tr> <td rowspan="3">③</td> <td>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td> </tr> <tr> <td>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td> </tr> <tr> <td>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td> </tr> <tr> <td>④</td> <td>중소기업확인서</td> </tr> <tr> <td>⑤</td> <td>사업자등록증명원</td> </tr> <tr> <td>⑥</td> <td>입금계좌 통장사본</td> </tr> <tr> <td>⑦</td> <td>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td> </tr> <tr> <td>⑧</td> <td>·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신청시, 해당할 경우) 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신청시) 전전년도, 전년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인감 날인하여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개인기업: 개인인감 날인 원칙 - (물류비 세부 신청 내역서) 물류비 건별 정산 가능 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엑셀파일 원본 제출(스캔본 제출 금지) -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동의란에 체크 입력(비동의 시 신청 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텍스)으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물류비를 입금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스캔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법인기업: 기업만/개인기업: 대표 개인 제출 - (온라인수출기업 증빙) 전자상거래 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증빙 중 택1(온라인수출기업에 한함) - (수출국 다변화기업 증빙) 전전년도, 전년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수출국 다변화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만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연번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신청시, 해당할 경우) 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신청시) 전전년도, 전년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연번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신청시, 해당할 경우) 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신청시) 전전년도, 전년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 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p>* (예시)1차 신청 탈락(신청일 '23.1.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3.2.14)시 신청일자 '23.2.14로 적용</p>
<p>문의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 055-752-8580 -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물류바우처' 선택 후 작성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5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사업명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①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수행기관(물류사)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거나, ②수행기관 이 외 물류사를 통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운송 완료 이후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물류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p> <p>매칭 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등록된 수행기관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참여기업이 등록된 수행기관 외 물류사를 이용한 후 선지출한 비용을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하는 사후정산 방식 가능</p> </div>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신청 제외 대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2023.1.31. 일 기준)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23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참여제한)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업종 분류</th> <th>품목코드</th> <th>지원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조업</td> <td>33402中</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 </tr> <tr> <td>33409中</td> <td>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td> </tr> <tr> <td>46102中</td> <td>담배 중개업</td> </tr> <tr> <td rowspan="3">도매 및 소매업</td> <td>46331</td> <td rowspan="2">주류, 담배 도매업</td> </tr> <tr> <td>46333</td> </tr> <tr> <td>4722中</td> <td>주류, 담배 소매업</td> </tr> <tr> <td>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td> <td>5821中</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9124</td> <td>검표링 및 배팅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p>※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p>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검표링 및 배팅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검표링 및 배팅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목</th> <th style="width: 15%;">비목</th> <th style="width: 70%;">상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국제운송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운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해외) 해상·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운송에 따른 보험료</td> </tr> </tbody> </table>	항목	비목	상세내용	국제운송비	운임	(한국→해외) 해상·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	보험료	운송에 따른 보험료			
	항목	비목	상세내용									
	국제운송비	운임	(한국→해외) 해상·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									
		보험료	운송에 따른 보험료									
<p>*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예시.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p> <p>**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 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p>												
<p>【정산 가능/불가 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충족요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수출신고필증 기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 DPU, DDP)에 한해 지원 가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산 가능항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 복합운송료 ④ 국제 특송이용료 ⑤ 추가 할증료: 유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 최종 정산 가능 금액: (①~⑤의 합계) × 70%(중소), 50%(중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산 불가항목 예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 국내 운임 및 취급 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수출신고필증 기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 DPU, DDP)에 한해 지원 가능 	정산 가능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 복합운송료 ④ 국제 특송이용료 ⑤ 추가 할증료: 유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 최종 정산 가능 금액: (①~⑤의 합계) × 70%(중소), 50%(중견) 	정산 불가항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 국내 운임 및 취급 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수출신고필증 기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 DPU, DDP)에 한해 지원 가능 											
정산 가능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 복합운송료 ④ 국제 특송이용료 ⑤ 추가 할증료: 유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 최종 정산 가능 금액: (①~⑤의 합계) × 70%(중소), 50%(중견) 											
정산 불가항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 국내 운임 및 취급 수수료(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발급액) 기업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자비분담율 상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35%;">① 중소기업</th> <th style="width: 40%;">② 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바우처 발급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 2,000만원 중 택 1</td> </tr> <tr> <td>국고보조율/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70% / 700만원, 1,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 500만원, 1,000만원</td> </tr> <tr> <td>자비분담율/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 300만원, 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 500만원, 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바우처 발급액	1,000만원, 2,000만원 중 택 1		국고보조율/금액	70% / 700만원, 1,4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0만원, 6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구분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바우처 발급액	1,000만원, 2,000만원 중 택 1											
국고보조율/금액	70% / 700만원, 1,4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0만원, 6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이용방식)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에 등록된 물류사 활용 또는 이외 물류사 활용 방식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수행기관(물류사) 활용) 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내 등록된 수행기관(물류사)의 서비스를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이용하고, 이용 종료 이후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 - (참여기업 사후정산) 기업이 등록된 수행기관 외의 물류사를 이용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운송이 완료된 후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의 단계를 따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평가·선발 평가기준 적용·선발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협약체결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바우처발급 기업별 협약금액 내 바우처 포인트 발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사업개시 국제 운송 서비스 이용 </div> </div>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www.exportvoucher.com/shipping)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가능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참고)
 -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23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
-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및 운영기관 공지 기한 내 자비분담금 미납 시에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하고,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물류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7조(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근거하여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간 물류 바우처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시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음.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시 5점 감점
15%이하	제재 없음
-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것을 물류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참고-평가기준) 수출가능성 및 예산 집행 계획 타당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계량	수출가능성(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수출국가 다변화 등)
비계량	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 수출실적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집계 예정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구비서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①	물류비 집행 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웹사이트 내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③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국세청 정부24
	⑤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⑥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선택	⑦	기타(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및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우대조건은 아래 표(지원 우대사항) 및 참가 신청 화면 참고
----	---	---------------------	--

【지원 우대사항】

연번	우대사항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기업
③	산업융합 선도기업
④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⑤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⑥	사업재편승인기업
⑦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 단, '② 비수도권 소재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의) 웹사이트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 시스템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이용 관련) ☎ 02-3460-3427 ※ 원격 지원 가능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해외지사화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하여 사업 참여기업 선택의 폭 확대 <p>*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https://www.okta.net/site/okta/page/major_project/localize/</p>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신청참여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주요 지원내용</th> <th>기간</th> <th>기업부담금</th> <th>수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진입</td> <td>[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td> <td>6개월</td> <td>70만원</td> <td>OKTA</td> </tr> <tr> <td rowspan="2">발전</td> <td rowspan="2">[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td> <td>6개월</td> <td>240만원</td> <td>KOTRA</td> </tr> <tr> <td>1년</td> <td>300~500만원 (지역별 차등)</td> <td>KOTRA 중진공</td> </tr> <tr> <td>확장</td> <td>[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td> <td>1년</td> <td>800만원</td> <td>중진공</td> </tr> </tbody> </table> <p>■ (지원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p> <p>■ (신청지역)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 기업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p> <p>■ 진행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신청·접수 지역·단계·기관 선택 </td> <td style="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선정완료 선정위원회 개최 </td> <td style="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통보·참가비 납부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td> <td style="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서비스 개시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td> </tr> </table> <p>■ 연간일정</p>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진공	신청·접수 지역·단계·기관 선택	→	선정완료 선정위원회 개최	→	통보·참가비 납부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서비스 개시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진공																															
신청·접수 지역·단계·기관 선택	→	선정완료 선정위원회 개최	→	통보·참가비 납부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서비스 개시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1월	2월	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차 서비스 개시	
	4월	5월	6월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6차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발전	-	-
	2차	발전	발전, 확장	진입
	3차	발전	발전, 확장	진입
	4차	발전	발전, 확장	진입
	5차	발전	-	진입
	6차	발전	-	-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중진공 및 OKTA) 1/2/4/6/8/10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 https://www.exportvouch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110,000원)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11,000원)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div>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37, 7439, 7441, 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76, 9679, 9680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중소기업팀(前수출기업화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 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제외 -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이 '0달러'인 기업 - (중단기업) 전전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0달러'인 기업 -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내용(기업 요건별 지원 내용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 수출 멘토링(공통)+해외 마케팅(별도 선발)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멘토링 공통)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 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수출 멘토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영문 카탈로그 제작 선발) 영문 카탈로그 미보유 기업 대상으로 제품 특징점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1page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1,000개사 내외) ▶ (글로벌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 선발) 내수 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150개사 내외) </div> - (중단기업) 수출 멘토링(공통) + 해외 마케팅(별도 선발)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멘토링 공통)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 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수출 멘토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과거 바이어 재접촉 선발)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과거 수출했던 바이어 대상으로 재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미 희망시 해당 사유 조사 결과 제공(선정기업 대상 별도 신청서 접수 예정) ▶ (글로벌 B2B 플랫폼 마케팅 지원 선발) 내수 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150개사 내외) </div> - (초보기업) 수출 멘토링 or B2B 플랫폼 입점지원 or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기업의 경우 상기 사업 중 1개만 선택이 가능하며, 각 사업별 지원가능 기업수가 초과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신청 마감될 수 있음

	<p>▶ (수출 멘토링 700개사)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 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수출 멘토링 지원 (700개사 내외)</p> <p>▶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500개사)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500개사)</p> <p>▶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300개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망 잠재 바이어의 수입수요를 발굴하여 제공하며, 필요시 화상상담 지원 (300개사)</p> <p>▶ (유관기관 연계 지원 공통)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p> <p>*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p>
신청기간	<p>▪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p> <p>▪ (선정기준 및 방법) 서류평가 + 현장평가</p> <p>-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여부, 우대조건 여부 확인</p> <p>- (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기업 대상, 수출전문위원이 신청서 내용 등 기업 실태조사 실시(대면/비대면)</p> <p>※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여부, 국내에서 선적하는지 여부, 무역/유통회사 여부 등을 종합 평가</p> <p>- (최종선정) 최종 선정 기업별 별도 안내</p> <p>▪ (우대조건) 선정시 우대조건은 아래와 같음</p>
신청방법	<p>□ 영문 카달로그(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또는 홈페이지 보유기업, 신청 당시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p> <p>□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1년~'23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p> <p>○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p> <p>*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p> <p>□ 소상공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p> <p>○ 소상공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p> <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p> <p>**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필수</p> <p>□ 초보기업의 경우, '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p>
신청서류	<p>▪ 전년 12월</p> <p>▪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p> <p>※ KOTRA, 무역협회 중,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p> <p>1)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p> <p>2) '사업신청' 클릭 → "20XX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p> <p>※ 사업 신청 단계시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필수</p>
신청서류	<p>▪ 신청서류(기업 요건별 신청서류 상이)</p> <p>- (내수·중단기업) 온라인 사업신청서, 외국어 카달로그 및 각종 증빙서류 등</p> <p>□ 내수기업·중단기업 대상 제출서류</p> <p>○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p> <p>○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p> <p>○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등 우선 우대 예정)</p> <p>*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로, 용량 초과시 업로드 불가한 바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p> <p>○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p> <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p> <p>**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필수</p> <p>***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p>

- (초보기업) 온라인 사업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 초보기업 대상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 초보기업 지원사업 3개 중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또는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선택 기업은 영문 카탈로그 제출 필수 (미 제출시 선정 불가)
 - *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로, 용량 초과시 업로드 불가한 바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필수
 -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문의처	▪ KOTRA 중소기업팀(前수출기업화팀) ☎ 02-3460-3272, 7541, 7546 / (E-mail) 2024export@kotra.or.kr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8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명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온실가스국제감축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전파(입찰 동향, 프로젝트 발굴), 조달 프로세스 단계별 팔로우업(벤더 등록, 오퍼·프라이싱 등), 전시회 참가 및 지사화 등 연계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혁신조달제품 제조기업 가점 부여(2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9개월간('24.4.15 ~ '24.12.31) 운영방식: 맞춤형 기간제 사업 기업부담금(참가신청비용): 300만원(VAT 포함) 지원내용: 1천만원 한도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시장조사, 로드쇼개최, 입찰수주지원, 지사화사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 외 KOTRA 유료서비스(조사대행, 세일즈등) 지원 불가 - 정보 전파(입찰 동향, 프로젝트 발굴), 조달 프로세스 단계별 팔로우업(벤더 등록, 오퍼·프라이싱 등), 전시회 참가 및 지사화 등 연계 지원 - 기업별 진출 희망 국가에서의 마케팅 활동 전주기 지원(기간제 사업)* 평가사항: 사업적합성(80%) - 해외조달시장진 출가능성, 로드맵 적절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적합성(20%) - 매출규모, 재무상태 등 모집/진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업체 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 KOTRA(본사담당자/진출 희망지역 무역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참고사항: 혁신조달제품 제조기업 가점, 동사 업에 5년이상 연속 참가한 국내기업은 2년간 지원 불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LR A[모집공고] --> B[참가 신청] B --> C[선정 평가] C --> D[기업 선정] D --> E[협약체결 참가비 납부] E --> F[사업 개시] </pre> </div>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12월~1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무역투자24 내사업신청후, [p300@kotra.or.kr]로서류제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BIG 유망시장추천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망(www.kotra.or.kr/bigdata) - 제출 서류 양식은 무역투자24홈 페이지 '사업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div>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참고) 1부 - 해외 마케팅 로드맵(첨부파일 참고)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소개자료 1부(자유양식) -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국/영문 카탈로그 각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02-3460-7494, 7499 / p300@kotra.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9 경기도 수출기회 바우처

사업명	경기도 수출기회 바우처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KOTRA 경기지원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내(內)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직전년도(2023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신청자격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의 서비스(프랜차이즈, 콘텐츠, 관광 등)/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경기도 소재 이외 기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직전년도(2023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초과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 신청일 당일 휴·폐업한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 - 신청일 당일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수출 바우처에 참여 중인 기업 * 신청일 당일 기존 참여 중인 수출 바우처 사업의 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업 * 중앙(산업부,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방(충북, 광주, 서울 등) 수출 바우처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 - 신청일 당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 바우처)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 * 수행기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 바우처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업 - 기업(소속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담배 도소매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 </div>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간: 9개월('24. 3. ~'2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바우처 협약기간 : 2024.03.01 ~ 2024.11.30 수출 바우처 발급액 : 기업 당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바우처 구성: 경기도 지원금 8,000,000원(80%) + 기업부담 2,000,000원(20%)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기업이 해외 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 바우처를 통해 소요 비용 정산 추진절차 및 일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신청·접수</p> <p>KOTRA무역투자24 사업신청*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gg_kotra@kotra.or.kr)</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평가·선발</p> <p>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선정위원회</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협약·바우처 발급</p> <p>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업개시</p> <p>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p> </div> </div> <p>※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기업분담금 미납부시 선정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단계(서류기본+현장평가+선정위원회) 고득점 순 최종 150개사 내외 선발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KOTRA 사업 신청 후 → 2) 관련 서류 이메일 제출 * 1), 2) 단계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 	

	<p>1) KOTRA 사업신청 [(필수) KOTRA 무역투자 24 사업 신청 + (선택) Buykorea 상품등록 2) 관련 서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주소: gg_kotra@kotra.or.kr - 제출 서류: 기업 신청서, 관련 증빙 등 * 이메일 자료 제출 시, 신청기업 제출 서류를 하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하나의 첨부파일로 압축해 송부(첨부 파일명은 기업명으로 저장)</p>																																																																																																																													
신청서류	<p>■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활동계획서, 증빙 등) 업로드</p> <table border="1" data-bbox="268 389 1492 1261"> <thead> <tr> <th>연번</th> <th>제출서류명</th> <th>필수</th> <th>해당</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기업지원신청서(엑셀)</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td> </tr> <tr> <td>1-2</td> <td>사업자등록증명서</td> <td>○</td> <td></td> <td>본사 '경기도' 소재여부확인</td> </tr> <tr> <td>1-3</td> <td>공장등록증명서</td> <td>○</td> <td>○</td> <td>제조시설 '경기도' 소재여부확인용 관련제품 '직접' 생산여부확인용</td> </tr> <tr> <td>1-4</td> <td>직접제조증빙서류</td> <td>○</td> <td>○</td> <td>1-3(공장등록증) 외 직접제조증빙 예) OEM계약서 등</td> </tr> <tr> <td>1-5</td> <td>간접제조증빙서류</td> <td>○</td> <td>○</td> <td>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21년-22년)</td> </tr> <tr> <td>1-6</td> <td>최근2개년 매출액 증빙</td> <td>○</td> <td></td> <td></td> </tr> <tr> <td>1-7</td> <td>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국문)</td> <td>○</td> <td></td> <td></td> </tr> <tr> <td>1-8</td> <td>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영문 등)</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9</td> <td>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0</td> <td>경기도 유망중소기업</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1</td> <td>경기도 수출프런티어(신인왕)</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2</td> <td>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3</td> <td>경기도산업단지RE100 참여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4</td> <td>2023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ESG대상기업 확인서 (23년 대상기업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급)</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1-15</td> <td>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td> <td></td> <td>○</td> <td>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td> </tr> <tr> <td>2-1</td> <td>해외진출계획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2-2</td> <td>수출바우처활용계획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1</td> <td>참가신청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2</td> <td>개인/기업 정보제공이용동의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3</td> <td>기업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4</td> <td>기업법위반부존재확인을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5</td> <td>기업법위반부존재여부확인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6</td> <td>기업법위반사실의맞구제신청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r> <td>3-7</td> <td>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동의서</td> <td>○</td> <td></td> <td>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td> </tr> </tbody> </table>	연번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	비고	1-1	기업지원신청서(엑셀)	○		첨부양식 활용	1-2	사업자등록증명서	○		본사 '경기도' 소재여부확인	1-3	공장등록증명서	○	○	제조시설 '경기도' 소재여부확인용 관련제품 '직접' 생산여부확인용	1-4	직접제조증빙서류	○	○	1-3(공장등록증) 외 직접제조증빙 예) OEM계약서 등	1-5	간접제조증빙서류	○	○	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21년-22년)	1-6	최근2개년 매출액 증빙	○			1-7	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국문)	○			1-8	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영문 등)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9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1	경기도 수출프런티어(신인왕)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3	경기도산업단지RE100 참여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4	2023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ESG대상기업 확인서 (23년 대상기업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급)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5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2-1	해외진출계획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2-2	수출바우처활용계획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1	참가신청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2	개인/기업 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3	기업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4	기업법위반부존재확인을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5	기업법위반부존재여부확인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6	기업법위반사실의맞구제신청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연번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	비고																																																																																																																										
1-1	기업지원신청서(엑셀)	○		첨부양식 활용																																																																																																																										
1-2	사업자등록증명서	○		본사 '경기도' 소재여부확인																																																																																																																										
1-3	공장등록증명서	○	○	제조시설 '경기도' 소재여부확인용 관련제품 '직접' 생산여부확인용																																																																																																																										
1-4	직접제조증빙서류	○	○	1-3(공장등록증) 외 직접제조증빙 예) OEM계약서 등																																																																																																																										
1-5	간접제조증빙서류	○	○	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21년-22년)																																																																																																																										
1-6	최근2개년 매출액 증빙	○																																																																																																																												
1-7	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국문)	○																																																																																																																												
1-8	회사소개, 제품카탈로그(영문 등)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9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1	경기도 수출프런티어(신인왕)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3	경기도산업단지RE100 참여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4	2023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ESG대상기업 확인서 (23년 대상기업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급)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1-15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		○	신청일 당일 유효기간 내																																																																																																																										
2-1	해외진출계획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2-2	수출바우처활용계획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1	참가신청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2	개인/기업 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3	기업신용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4	기업법위반부존재확인을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5	기업법위반부존재여부확인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6	기업법위반사실의맞구제신청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3-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직인날인 必)																																																																																																																										
문의처	<p>■ KOTRA 경기지원단: 031-273-6032 / conan100won@kotra.or.kr</p>																																																																																																																													
참고사항	<p>■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p>																																																																																																																													

10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사업명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해외진출상담센터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기업에 해외 시장 정보, 파트너 연결 및 바이어 발굴 등 16개 유형의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유료, 서비스 유형별 비용 상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기업(건설업 업체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지원 내용	수수료(VAT 별도)
	1	항목별 시장 조사	수요 동향, 수입 동향·수입 관세율, 경쟁 동향, 수출 동향, 소매가격 동향, 유통 구조, 품질 인증 제도, 생산 동향 등 조사	15만 원/1항목
	2	맞춤형 지원 서비스	KOTRA 해외 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 조사	신청 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진행	45만 원
	4	소비자 트렌드 설문 조사	신청 기업의 타깃군 대상 설문 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 원
	5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 기업의 타깃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 설문 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배송비 실비 부담)	45만 원
	6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발굴(2~3개사) 해외 수입 업체와의 거래 교신 지원 (2개월)	30만 원
	7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 업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조사	5만 원/개사
	8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 업체 발굴(3개사)	30만 원
	9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 조사 실시 * 최대 17문항 구성, 5개사 회신 결과 제공	30만 원
	10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 일반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3~4개사) * 프리미엄 지원: 일반 지원 + 통역 및 차량 지원	지역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11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 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 지원	15만 원
	12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 무역관까지 배송은 실비 부담	15만 원
	13	대리 면담 지원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 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 원
	14	바이어 실태 조사	신청 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 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15	전시회 대리 참관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 참관해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의요청 사항 수행, * \$100 이상의 입장료는 실비 부담	45만 원
16	수입 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확인,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 * 기업 신용도 및 구매 담당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 범주에 미포함	1만 원/개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함(증빙서류 제출 필요) 			
	대상기업	적용 서비스	할인률	증빙서류
	우수고용 창출기업	16종 전체	20%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소셜벤처)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등 정부/공기관 발급 인증서류(기술보증기금 발급)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증빙서류 문의하여 제출
	우수 방산기업			- 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사업 참여 실적확인서 제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국내 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적용을 위한 상기 제출 서류들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제출(신청서 작성페이지 하단의 첨부 파일에 파일 업로드 후, 추가 및 참고사항에 '할인 적용 요청 신청' 기재 ※ 사업신청서 제출 및 결제 완료 이후 단계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할인 적용 불가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상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 -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어에 '수출24' 검색 → 희망하는 서비스 유형 선택 → 지원내용 및 약관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서비스 유형별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기타 요구 서류 등 ※ 서비스 유형별 사업신청 페이지 참고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11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사업명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개요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매칭을 통한 1:1 수출상담회 지원																	
신청자격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분야별 사전 매칭 수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소재·부품·장비, 에너지·환경, 서비스, ICT, 소비재, 바이오, 전문무역상사)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한 1:1 수출상담회 지원 - 기업이 상담 가능 시간 및 희망 바이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바이어 리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개됨 ※ 분야별 세부품목은 아래 표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소재·부품·장비</td> <td>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 반도체 등</td> </tr> <tr> <td>에너지·환경</td> <td>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원전기자재, 환경기자재(수처리, 폐기물처리 등)</td> </tr> <tr> <td>서비스</td> <td>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스포츠테크</td> </tr> <tr> <td>ICT</td> <td>스마트 SOC(스마트 시티/팩토리/팜 등), ICT 융복합 전반</td> </tr> <tr> <td>소비재</td> <td>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td> </tr> <tr> <td>바이오</td> <td>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td> </tr> <tr> <td>전문무역상사</td> <td>기계, 뷰티, 화학, 식품 등 전문무역상사가 취급하는 종합품목</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품목	소재·부품·장비	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 반도체 등	에너지·환경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원전기자재, 환경기자재(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서비스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스포츠테크	ICT	스마트 SOC(스마트 시티/팩토리/팜 등), ICT 융복합 전반	소비재	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무역상사	기계, 뷰티, 화학, 식품 등 전문무역상사가 취급하는 종합품목
	구분	세부품목																
	소재·부품·장비	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 반도체 등																
	에너지·환경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원전기자재, 환경기자재(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서비스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스포츠테크																
	ICT	스마트 SOC(스마트 시티/팩토리/팜 등), ICT 융복합 전반																
	소비재	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무역상사	기계, 뷰티, 화학, 식품 등 전문무역상사가 취급하는 종합품목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무역투자24 웹사이트(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북업코리아 웹사이트(boomupkorea.com)를 통한 사전 상담신청 																	
	① KOTRA 무역투자24 웹사이트 접속 → 기업 회원가입 → 사업신청 → '2024 상반기 북업코리아(예시)' → 신청																	
	② 북업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 기업 회원가입 →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참가신청서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산업분야별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639, 7642 - 인프라 에너지산업팀 ☎ 02-3460-7498 - 서비스산업팀 ☎ 02-3460-3318, 7732 - ICT융복합팀 ☎ 02-3460-7477, 7463 - 소비재팀 ☎ 02-3460-7617, 3343, 3344 - 바이오의료팀 ☎ 02-3460-7622, 7620 - 중소혁신기업팀(전문무역상사) ☎ 02-3460-7544, 7539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사전 상담신청 페이지) 클릭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사전 상담신청 페이지) 클릭 																	

12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사업명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개요	▪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전 세계 120개 유망 바이어가 방한하여 의료기기 분야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더불어 계약체결식, 유럽 의료기기 규정(EU MDR) 등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의료기기 분야 국내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진찰 및 진단용기기, 치과 기자재 등 의료기기 전반) - KOTRA 회원사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세부프로그램 - ① 1:1 비즈니스 상담회		
		구분	1일차
	KIMES 및 GMEP 참가기업 (전시부스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A그룹 상담가능 - 방식: 바이어부스에서 상담진행 (국내기업 워크인) ▪ 바이어 B그룹 상담가능 - 방식: 자사부스에서 상담진행 (바이어 워크인) 	2일차
	GMEP 참가기업 (전시부스 미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A그룹 상담가능 - 방식: 바이어부스에서 상담진행 (국내기업 워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A그룹 상담가능 - 방식: 바이어부스에서 상담진행 (바이어 워크인) ▪ 바이어 B그룹 상담가능 - 방식: 자사부스에서 상담진행 (국내기업 워크인)
	- ② 수출계약 체결식) 사전 파악 및 현장상담에 따라 결정된 수출계약에 대한 체결식 개최 · “계약체결 바이어” 항공임/숙박 등 지원 혜택		
	- ③ 의료기기 등록제도 설명회) EU MDR 동향 및 대응방안 소개 세션별 발표 60분, Q&A 15분 사회자 진행, 한-양 동시통역 지원		
신청기간	▪ 전년 12월		
신청방법	▪ GMEP 홈페이지(https://gmep.kotra.biz/)에서 사업신청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		
문의처	▪ KOTRA 바이오의료팀(me_hq@kotra.or.kr, 02-3460-7628/7623)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13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사업명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개요	▪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CES 혁신상 수상을 위한 멘토링, 신청비용, 웨비나 강의자료, 무역관을 통한 후속지원을 제공
신청자격	▪ 혁신제품·기술을 CES 혁신상에 출품 희망하는 국내 기업 ※ 중견, 대기업 신청 불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카테고리별 2개 기업으로 구성해 CES 혁신상 신청서 작성법 관련 1:多 그룹 멘토링 제공 - (비용지원) 혁신상 신청비용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개별 신청 후,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비의 50%인 500달러 환급 - (후속지원) 아마존·알리바바 등 국제 유통망 입점, 수상제품 전자 카탈로그 제작 및 해외 바이어 대상 배포 등 후속사업 연계 지원 - (웨비나) 혁신상 수상전략 웨비나 강의영상 및 발표자료 제공 ▪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S 혁신상은 CES 전시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수상 가능 - 이전과 유사한 제품(또는 미선정 제품)도 신청 가능 - '23년 4월 1일 ~ '24년 4월 1일 기간 내 출시된 제품만 신청 가능('24년도 CES 기준)
신청기간	▪ 전년 8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 사업 신청 링크 접속 및 설문지 제출 - 사업 신청 링크: bit.ly/kotraces2024innovationawards ※ 설문 제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필수(공고문 내 첨부됨)
신청서류	▪ 설문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02-3460-7569 / ✉ flynn@kotra.or.kr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14 무역사절단

사업명	무역사절단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지방협력팀, KOTRA 지방지원단, 지자체·유관기관 등 사절단 파견 기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 파견 또는 화상상담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내수·수출 초보 기업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사절단 파견국별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등 진행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무역사절단 세부사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방법: '사업소개'-'무역사절단'-'세부사업보기' 2) 모집 중인 공고 확인 및 신청 3) 파견기관이 참가업체 선정 4) 기업·상품정보 온라인 등록(buykorea.org), SNS 광고, 화상 상담 등 상담 준비 5) 현지수출상담 실시 6) 상담 A/S 지원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수시(개별사업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인 세부사업 확인 후 세부사업별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홈페이지-'사업소개'-'무역'-'무역사절단'-'세부사업보기'-세부사업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사업에 따라 상이(사업별 공고문 참고하여 제출) 각 지역별 KOTRA 지방지원단 																																																						
문의처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역</th> <th>지역</th> <th>부서</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수도권</td> <td>서울*</td> <td>KOTRA 본사(사업부서)</td> <td>1600-7119</td> </tr> <tr> <td>경기 남부</td> <td>KOTRA 경기지원단</td> <td>031-206-5105</td> </tr> <tr> <td>경기 북부</td> <td>KOTRA 경기북부지원단</td> <td>070-7931-0743</td> </tr> <tr> <td>인천</td> <td>KOTRA 인천지원단</td> <td>032-822-9361</td> </tr> <tr> <td rowspan="4">영남권</td> <td>대구·경북</td> <td rowspan="2">KOTRA 대구경북지원단</td> <td>053-659-2556</td> </tr> <tr> <td>구미</td> <td>054-455-2970</td> </tr> <tr> <td>부산</td> <td>KOTRA 부산지원단</td> <td>051-740-4155</td> </tr> <tr> <td>울산</td> <td>KOTRA 울산지원단</td> <td>052-289-8056</td> </tr> <tr> <td rowspan="3">호남권</td> <td>경남</td> <td>KOTRA 경남지원단</td> <td>055-290-0602</td> </tr> <tr> <td>광주·전남·제주</td> <td>KOTRA 광주전남지원단</td> <td>062-369-8612</td> </tr> <tr> <td>전북</td> <td>KOTRA 전북지원단</td> <td>070-7931-0803</td> </tr> <tr> <td rowspan="3">충청권</td> <td>대전·충남·세종</td> <td rowspan="3">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td> <td>042-862-8316</td> </tr> <tr> <td>천안</td> <td>041-415-1513</td> </tr> <tr> <td>충북</td> <td>043-218-0016</td> </tr> <tr> <td>강원권</td> <td>강원</td> <td>KOTRA 강원지원단</td> <td>033-261-5314</td> </tr> </tbody> </table>				권역	지역	부서	연락처	수도권	서울*	KOTRA 본사(사업부서)	1600-7119	경기 남부	KOTRA 경기지원단	031-206-5105	경기 북부	KOTRA 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3	인천	KOTRA 인천지원단	032-822-9361	영남권	대구·경북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구미	054-455-2970	부산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55	울산	KOTRA 울산지원단	052-289-8056	호남권	경남	KOTRA 경남지원단	055-290-0602	광주·전남·제주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전북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03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6	천안	041-415-1513	충북	043-218-0016	강원권	강원	KOTRA 강원지원단	033-261-5314
	권역	지역	부서	연락처																																																			
	수도권	서울*	KOTRA 본사(사업부서)	1600-7119																																																			
		경기 남부	KOTRA 경기지원단	031-206-5105																																																			
		경기 북부	KOTRA 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3																																																			
		인천	KOTRA 인천지원단	032-822-9361																																																			
	영남권	대구·경북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구미		054-455-2970																																																			
		부산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55																																																			
		울산	KOTRA 울산지원단	052-289-8056																																																			
	호남권	경남	KOTRA 경남지원단	055-290-0602																																																			
		광주·전남·제주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전북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03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6																																																			
천안		041-415-1513																																																					
충북		043-218-0016																																																					
강원권	강원	KOTRA 강원지원단	033-261-5314																																																				
<p>※ 서울 소재 기업은 KOTRA 본사 사업부서 접촉(☎ 1600-7119) 후, 품목별 해외 마케팅 사업 문의</p>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15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사업명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해외바이어의 수출거래 성사 지원으로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분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지원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선정일 ~ 2024. 11월 말 ▪ 지원규모: 250개사 ▪ 지원내용: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무역실무 지원, 무역 사후관리 등 추가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구분</th> <th>지원내용</th> <th>지원대상</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상품페이지 제작지원</td> <td>·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기업 미니샵 제작(2차 도메인 제공)</td> <td rowspan="4">250개사 선발</td> <td rowspan="4">기업당 660만원 (자부담금 100만원 포함)</td> </tr> <tr> <td>바이어발굴</td> <td>·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td> </tr> <tr> <td>온라인마케팅</td> <td>· 제품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온라인홍보 등</td> </tr> <tr> <td>구매오피 사후관리</td> <td>·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오피의 유효성 검증 · 수출거래를 위한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td> </tr> <tr> <td>우수기업 특화지원*</td> <td>· 생산공정 동영상, 상품인증현황 등 추가로 포함된 상품페이지 구축 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우수기업 전용 카테고리 구성 및 홍보</td> <td>선발된 250개사 중 자가생산시설을 보유한 상위 50개사 대상으로 제공</td> <td></td> </tr> </tbody> </table>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상품페이지 제작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기업 미니샵 제작(2차 도메인 제공)	250개사 선발	기업당 660만원 (자부담금 100만원 포함)	바이어발굴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온라인마케팅	· 제품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온라인홍보 등	구매오피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오피의 유효성 검증 · 수출거래를 위한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우수기업 특화지원*	· 생산공정 동영상, 상품인증현황 등 추가로 포함된 상품페이지 구축 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우수기업 전용 카테고리 구성 및 홍보	선발된 250개사 중 자가생산시설을 보유한 상위 50개사 대상으로 제공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상품페이지 제작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기업 미니샵 제작(2차 도메인 제공)	250개사 선발	기업당 660만원 (자부담금 100만원 포함)																										
	바이어발굴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온라인마케팅	· 제품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온라인홍보 등																												
구매오피 사후관리	·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오피의 유효성 검증 · 수출거래를 위한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우수기업 특화지원*	· 생산공정 동영상, 상품인증현황 등 추가로 포함된 상품페이지 구축 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우수기업 전용 카테고리 구성 및 홍보	선발된 250개사 중 자가생산시설을 보유한 상위 50개사 대상으로 제공																												
* (우수기업 특화지원) 선발된 250개사 중 50개사를 대상으로 자가 생산시설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고득점기업 순으로 추가 현장검증을 통해 50개사에 ‘우수기업 특화지원’ 제공																														
신청기간	▪ 5~6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bizKore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kr.gobizkorea.com 																													
신청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여부</th> <th>연번</th> <th>제출서류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필수</td> <td>①</td> <td>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td> <td>[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td> </tr> <tr> <td>②</td> <td>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td> <td>[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td> </tr> <tr> <td>③</td> <td>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td> <td>[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td> </tr> <tr> <td>④</td> <td>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td> <td>[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td> </tr> <tr> <td>⑤</td> <td>청렴수행 이행서약서</td> <td>[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td> </tr> <tr> <td>⑥</td> <td>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달)</td> <td>* 조회: '23.2.28~'23.2.28(1부) ... '24.1.31~'24.1.31(1부) ⇒ 총 12부, 증빙파일 업로드</td> </tr> <tr> <td>⑦</td> <td>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td> <td>* 조회: 23.1.1~23.12.31, 증빙파일 업로드</td> </tr> </tbody> </table>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①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	②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	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⑤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달)	* 조회: '23.2.28~'23.2.28(1부) ... '24.1.31~'24.1.31(1부) ⇒ 총 12부, 증빙파일 업로드	⑦	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조회: 23.1.1~23.12.31, 증빙파일 업로드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①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																										
		②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																										
		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⑤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지 참고] - 온라인작성·인증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달)	* 조회: '23.2.28~'23.2.28(1부) ... '24.1.31~'24.1.31(1부) ⇒ 총 12부, 증빙파일 업로드																											
⑦		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조회: 23.1.1~23.12.31, 증빙파일 업로드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⑧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증빙파일 업로드	
	⑨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증빙파일 업로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증빙파일 업로드	
		⑪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 조회: 23.1.1~23.12.31, 증빙파일 업로드
	선택	⑫	공장등록증(자가 생산시설 보유한 경우)	증빙파일 업로드
		⑬	제품소개 카탈로그(한글, 영문 등)	증빙파일 업로드
		⑭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파일 업로드
	선택 (가점)	⑮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범부처연계	[붙임]참고, 온라인제출 및 증빙파일 업로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44, 9797, 9757 ▪ 고비즈코리아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E-mail gobiz@gobizkorea.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16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사업

사업명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사업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신청제외대상은 반드시 [별첨]의 세부사업별 모집 안내문 확인 ▪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024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 불가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한 입점·판매·마케팅, 콘텐츠 마케팅·라이브커머스, 해외향 자사물 구축·마케팅 등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세부사업</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td> <td>직접판매</td> <td>글로벌 쇼핑몰(Shopee, Qoo10 JP, Amazon) 내 직접 입점 및 판매 지원(쇼핑몰 내 개별마케팅(교육·컨설팅 포함) 및 전용 기획전 운영·홍보 등)</td> </tr> <tr> <td>위탁판매</td> <td>온라인 쇼핑몰의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등 전 과정 판매대행</td> </tr> <tr> <td colspan="2">미디어콘텐츠 마케팅</td> <td>제품 콘텐츠 제작(숏클립), 글로벌 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쇼핑 특수기 기획전, 판촉마케팅, 콘텐츠 활용교육 등 지원</td> </tr> <tr> <td rowspan="3">자사물 진출</td> <td>기반조성</td> <td>수행기관의 컨설팅 기반 해외향 자사물 신규 구축, 리뉴얼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td> </tr> <tr> <td>일반육성</td> <td>해외향 자사물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사물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td> </tr> <tr> <td>동반성장</td> <td>해외향 전문몰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전문몰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와 더불어 타 중소기업 제품 입점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td> </tr> </tbody> </table> 2.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외 물류비 할인,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글로벌 쇼핑몰 내 배송할인 마케팅 등 지원 		세부사업		지원내용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직접판매	글로벌 쇼핑몰(Shopee, Qoo10 JP, Amazon) 내 직접 입점 및 판매 지원(쇼핑몰 내 개별마케팅(교육·컨설팅 포함) 및 전용 기획전 운영·홍보 등)	위탁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등 전 과정 판매대행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제품 콘텐츠 제작(숏클립), 글로벌 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쇼핑 특수기 기획전, 판촉마케팅, 콘텐츠 활용교육 등 지원	자사물 진출	기반조성	수행기관의 컨설팅 기반 해외향 자사물 신규 구축, 리뉴얼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일반육성	해외향 자사물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사물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동반성장
세부사업		지원내용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직접판매	글로벌 쇼핑몰(Shopee, Qoo10 JP, Amazon) 내 직접 입점 및 판매 지원(쇼핑몰 내 개별마케팅(교육·컨설팅 포함) 및 전용 기획전 운영·홍보 등)																		
	위탁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등 전 과정 판매대행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제품 콘텐츠 제작(숏클립), 글로벌 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쇼핑 특수기 기획전, 판촉마케팅, 콘텐츠 활용교육 등 지원																		
자사물 진출	기반조성	수행기관의 컨설팅 기반 해외향 자사물 신규 구축, 리뉴얼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일반육성	해외향 자사물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사물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동반성장	해외향 전문몰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전문몰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와 더불어 타 중소기업 제품 입점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세부사업</th> <th>지원내용</th> </tr> <tr> <td rowspan="2">공동물류 물류지원</td> <td>물류비 상시할인</td> <td>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한 온라인 수출품목의 해외 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td> </tr> <tr> <td>물류거점 및 물류서비스(풀필먼트)</td> <td>수행기관(협약 물류사), 개별이용 물류사, 글로벌 쇼핑몰(아마존FBA, 쇼피SBS 등)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td> </tr> </table>		세부사업		지원내용	공동물류 물류지원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한 온라인 수출품목의 해외 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물류거점 및 물류서비스(풀필먼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개별이용 물류사, 글로벌 쇼핑몰(아마존FBA, 쇼피SBS 등)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p>글로벌 쇼핑몰, K뷰티·패션 전문몰에 입점한 참여기업의 풀필먼트·배송할인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확대 지원</p> <p>* 쇼핑몰별·국가별·시즌별 맞춤형 프로모션 마케팅 (기획전, 배너광고, SNS, 할인쿠폰, 무료배송 쿠폰 등)</p>
	세부사업		지원내용								
공동물류 물류지원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한 온라인 수출품목의 해외 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물류거점 및 물류서비스(풀필먼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개별이용 물류사, 글로벌 쇼핑몰(아마존FBA, 쇼피SBS 등)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p>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p>											

▪ 사업기간: 선정일 ~ '24.11.(지원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일정

<table border="1"> <tr><th>신청·접수</th></tr> <tr><td>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수</td></tr> </table>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수	→	<table border="1"> <tr><th>평가·선정</th></tr> <tr><td>세부사업별 평가 및 최종선정</td></tr> </table>	평가·선정	세부사업별 평가 및 최종선정	→	<table border="1"> <tr><th>사업 지원</th></tr> <tr><td>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참여기업 지원</td></tr> </table>	사업 지원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참여기업 지원	→	<table border="1"> <tr><th>성과점검</th></tr> <tr><td>사업지원 성과점검</td></tr> </table>	성과점검	사업지원 성과점검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수														
평가·선정														
세부사업별 평가 및 최종선정														
사업 지원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참여기업 지원														
성과점검														
사업지원 성과점검														

 신청기간 ▪ 4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하단 신청서류에 기재된 표 참고) ①~⑤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⑥~⑨ 원클릭서비스에 제출 | | 구 분 | 연 번 | 제 출 서 류 | 제 출 방 법 | |-----|---------------------|-------------------------------|---| | 공동 | ① | 자가진단*
(제외대상 및 수출준비도 확인 목적) | - 자가진단은 신청화면 탭에서 작성 | | | ② | 참여기업 신청서* | - 온라인 작성 | | | ③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또는 서명 후 첨부 | | | ⑤ | 청렴이행서약서* | - 온라인 동의 |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 | ⑥~⑨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 | | ⑦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 | | | ⑧ | '21년,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 | | ⑨ | '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사업별 | 세부사업별 제출서류는 [별첨] 참조 | |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사업문의) | 세 부 사 업 | 연 락 처 | |-----------------|--| |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 ☎ 055-751-9777, 9779 ✉ westeast@kosmes.or.kr |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 ☎ 02-2130-1482, 1485 ✉ donghyun.lee@kosmes.or.kr | | 자사몰 진출 | ☎ 055-751-9756, 9766 ✉ mirim91@kosmes.or.kr | | 공동물류 물류지원 | ☎ 1522-7060 ✉ gongdong@gobizkorea.com | | 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 | ☎ 1522-7060 ✉ gongdong@gobizkorea.com |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전산관련 문의): 1588-6234 / gobiz@gobizkorea.or.kr ▪ 원클릭서비스: 02-3771-1100 - 원클릭 서류 제출 불가능(또는 실패한) 경우: 02-6678-4462, 4433, 4435, 4431 - 서류제출 이메일 : oneclick@gobizkorea.com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에 반드시 회사명 명기 필요 |
|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는 지원요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혁신조달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자금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이 있음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직접대출/성장공유형 방식으로 운전자금 용자 - (직접대출)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전자금 용자(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직접대출/대리대출/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방식으로 시설/운전자금 용자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투자조건부) 연간 2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직접대출/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방식으로 시설/운전자금 용자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투자조건부) 연간 2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연간 10억원 이내(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17-1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운전자금 용자 - 지원요건(수출실적 기준)에 따라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로 분류									
신청자격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수출 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초보기업) 1~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참여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수출 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용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용자 - (성장공유형) 용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참고-자금용도) 운전자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용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운전 자금</td> <td>기업 경영활동</td> <td>·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td> </tr> <tr> <td>약속어음 감축</td> <td>·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직접대출/성장공유형 방식으로 운전자금 용자 		구분	용도	세부내용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구분	용도	세부내용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구분	용자조건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7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중 협의하여 결정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3년 이상인 경우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기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수행)

▪ (수출기업글로벌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전자금 용자

구분	용자조건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을
이차보전율	· 중점지원분야(3%), 그 외 업종(2%)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진단 생략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수행)

신청기간

▪ 연중 수시(매월 1회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 각 지역 본부별, 정책자금 유형별로 예산 현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웹사이트 → [지원사업] → [정책자금용자] → [지역본부 예산현황])를 통해 각 지역 본부별·정책자금 유형별 예산 현황 파악이 가능하나 실시간 정보는 아님

신청방법

▪ 중진공 웹사이트(www.kosmes.or.kr)를 통해 용자 신청
-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중진공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 (2. 신청자금 선택)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부 선택 → 신청 희망 자금 선택
- (3. 정보제공동의)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 (4. 사전기업진단) 중소기업, 창업기업, 용자제한기업 여부 등 확인
- (5. 서류제출)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온라인 서류(사업자 등록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제출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3개년
- (6. 체크리스트)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 (7.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 (8. 온라인 신청) '신청기회 부여' 기업은 필수서류(사업자 등록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및 용자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용자신청서 등
- 이 외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17-2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지원대상에 따라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분류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클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용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용자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성장공유형) 용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투자조건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보전 취급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참고-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table border="1" data-bbox="272 1576 1444 1948"> <thead> <tr> <th>구분</th> <th>용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시설 자금</td> <td>설비구입</td> <td>·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td> </tr> <tr> <td>사업장 건축</td> <td>※ (범위)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임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td> </tr> <tr> <td>사업장 매입</td> <td>·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td> </tr> <tr> <td rowspan="2">운전 자금</td> <td>기업 경영활동</td> <td>·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td> </tr> <tr> <td>약속어음 감축</td> <td>·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td> </tr> </tbody> </table> (창업기반지원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방식으로 시설/운전자금 용자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건축	※ (범위)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임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건축	※ (범위)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임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 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구분	용자조건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투자조건부)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7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즉시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중 협의하여 결정 · (투자조건부-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3%p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3년 이상인 경우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0.3%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사업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사업 평가기간에 한함)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직접대출/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방식으로 시설/운전자금 용자

구분	용자조건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투자조건부) 연간 2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연간 10억원 이내(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7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즉시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중 협의하여 결정 · (투자조건부-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거치 2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3%p · (성장공유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3년 이상인 경우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 (상환전환 우선주)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0.3%p ·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신청기간

- 연중 수시(매월 1회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 ※ 각 지역 본부별, 정책자금 유형별로 예산 현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 ※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웹사이트) → [지원사업] → [정책자금용자] → [지역본부 예산현황]를 통해 각 지역 본부별 정책자금 유형별 예산 현황 파악이 가능하나 실시간 정보는 아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공 웹사이트(www.kosmes.or.kr)를 통해 용자 신청 -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중진공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 (2. 신청자금 선택)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신청 희망 자금 선택 - (3. 정보제공동의)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 (4. 사전기업진단) 중소기업, 창업기업, 용자제한기업 여부 등 확인 - (5. 서류제출)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온라인 서류(사업자 등록 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3개년 - (6. 체크리스트)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 (7.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 (8. 온라인 신청) ‘신청기회 부여’ 기업은 필수서류(사업자 등록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및 용자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용자신청서 등 - 이 외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18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글로벌협력처 글로벌기획팀																																																																																
사업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공간(개별 기업 당 12~20㎡) 및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마케팅 전문가, 법률, 회계 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 지원 지원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실 입주 및 공유오피스 이용 등 사무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실) 현지 법인설립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공유오피스) 단기 이용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금융투자, 물류, ODA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지원, 금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융 컨설팅 지원 등 (투자) 현지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으로 정기 IR 피칭 행사 추진, 유망기업 상시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현지화) 거점별 특화분야를 설정,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제품디자인 현지화, 해외인증, 기술 컨설팅 등 제공 (마케팅) 거점별 특성에 따라 브랜드-K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수출시장 확대 지원 해외 현지 한인 동포 협단체, 민간 및 정부 네트워크 연결 지원 입주기업 및 방문기업, 국내 소재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현지 진출 자문서비스 지원(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 지원 지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북미(4)</th> <th colspan="3">유럽(2)</th> <th colspan="4">아시아(5)</th> <th colspan="3">중국(5)</th> <th colspan="2">남미(2)</th> <th colspan="3">중동(3)</th> <th rowspan="2">계</th> </tr> <tr> <th>시카고</th> <th>LA</th> <th>워싱턴</th> <th>뉴욕</th> <th>프랑크푸르트</th> <th>모스크바</th> <th>도쿄</th> <th>호치민</th> <th>하노이</th> <th>뉴델리</th> <th>방콕</th> <th>베이징</th> <th>광저우</th> <th>상하이</th> <th>선전</th> <th>총칭</th> <th>멕시코시티</th> <th>산티아고</th> <th>두바이</th> <th>리야드</th> <th>알마티</th> </tr> </thead> <tbody> <tr> <td>독립실 규모</td> <td>16</td> <td>20</td> <td>10</td> <td>9</td> <td>15</td> <td>8</td> <td>18</td> <td>15</td> <td>15</td> <td>14</td> <td>10</td> <td>17</td> <td>14</td> <td>22</td> <td>10</td> <td>8</td> <td>9</td> <td>8</td> <td>15</td> <td>10</td> <td>7</td> <td>270</td> </tr> </tbody> </table>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중국(5)			남미(2)		중동(3)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뉴델리	방콕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	총칭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알마티	독립실 규모	16	20	10	9	15	8	18	15	15	14	10	17	14	22	10	8	9	8	15	10	7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중국(5)			남미(2)		중동(3)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뉴델리	방콕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	총칭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알마티																																																											
독립실 규모	16	20	10	9	15	8	18	15	15	14	10	17	14	22	10	8	9	8	15	10	7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신청 절차 <table border="1"> <tr> <th>입주신청</th> <th>실태조사</th> <th>선정 결과 안내</th> <th>입주계약</th> <th>입주</th> </tr> <tr> <td>기업 → 중진공</td> <td>중진공 → 기업</td> <td>중진공 → 기업</td> <td>중진공 ↔ 기업</td> <td>GBC ↔ 기업</td> </tr> </table> 입주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증금</th> <th>임차료</th> <th>입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퇴소시 환불)</td> <td>임차료 실비의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td> <td>2년 입주 후 최대 2년 연장</td> </tr> </tbody> </table> 																	입주신청	실태조사	선정 결과 안내	입주계약	입주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기업	중진공 → 기업	중진공 ↔ 기업	GBC ↔ 기업	보증금	임차료	입주기간	500만원 (퇴소시 환불)	임차료 실비의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2년 입주 후 최대 2년 연장																																																
입주신청	실태조사	선정 결과 안내	입주계약	입주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기업	중진공 → 기업	중진공 ↔ 기업	GBC ↔ 기업																																																																													
보증금	임차료	입주기간																																																																															
500만원 (퇴소시 환불)	임차료 실비의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2년 입주 후 최대 2년 연장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자 이력서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www.ei.go.kr) 출력분 1부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 기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중진공 평가자는 상기 이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도 및 현재 수출실적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kita.net) 발급본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지역이 속한 나라에 대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증명원에 별도 표기되도록 발급요망 (예: 시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실적 별도 표기) - 국문 및 외국어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각 1부 - 국제규격(ISO, UL, CE 등) 및 산업재산권(특허 등), 정부(유관)기관 수상내역 사본 각1부 - 글로벌강소기업1000+(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혁신형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각 1부(신청일 기준 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대표자 이력서 1부 - 기타 회사 홍보자료 각 1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글로벌기획팀: 055-751-9675, 9676, 9685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19 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신청자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기업 수</th> </tr> </thead> <tbody> <tr> <td>글로벌 유망기업</td> <td>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td> <td>500개사 이내</td> </tr> <tr> <td>글로벌 성장기업</td> <td>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td> <td>300개사 이내</td> </tr> <tr> <td>글로벌 강소기업</td> <td>전년도 수출액 500~1,000만불 미만</td> <td rowspan="2">200개사 이내</td> </tr> <tr> <td>글로벌 강소+기업</td> <td>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기업 수	글로벌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500개사 이내	글로벌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300개사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1,000만불 미만	200개사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구분	지원 내용	기업 수																												
	글로벌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500개사 이내																												
	글로벌 성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300개사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1,000만불 미만	200개사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23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은 선정 불가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간: 선정일~'25년 12월 말(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 모집규모: 1,000여개사 내외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지원기관</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td> <td rowspan="2">중소벤처기업부</td> <td>[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사업 자동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0점 부여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2점) 부여 대중소동반진출 해외 홈쇼핑 진출 지원시 선정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td> </tr> <tr> <td>[강소/강소+단계(500만불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별도 가점 </td> </tr> <tr> <td rowspan="2">2</td> <td rowspan="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 <td>[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 물류지원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td> </tr> <tr> <td>[강소/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융자한도 우대(60억→100억) 정책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신청 시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td> </tr> <tr> <td>3</td> <td>한국무역협회</td> <td>-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td> </tr> <tr> <td>4</td> <td>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td> <td>-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td> </tr> <tr> <td>5</td> <td>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td> <td>- 해외 판로개척 우선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td> </tr> <tr> <td>6</td> <td>신용보증기금</td> <td>- 보증한도 우대 - 수출지원 보증프로그램 지원</td> </tr> <tr> <td>7</td> <td>한국무역보험공사</td> <td>- 수출 보증/보험 한도 우대 - 보증료/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td> </tr> <tr> <td>8</td> <td>기술보증기금</td> <td>- 보증한도 우대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td> </tr> </tbody> </table>		순번	지원기관	지원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사업 자동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0점 부여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2점) 부여 대중소동반진출 해외 홈쇼핑 진출 지원시 선정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강소/강소+단계(500만불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별도 가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 물류지원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강소/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융자한도 우대(60억→100억) 정책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신청 시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3	한국무역협회	-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해외 판로개척 우선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6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수출지원 보증프로그램 지원	7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 보증/보험 한도 우대 - 보증료/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8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순번	지원기관	지원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사업 자동선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0점 부여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2점) 부여 대중소동반진출 해외 홈쇼핑 진출 지원시 선정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강소/강소+단계(500만불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별도 가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 물류지원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강소/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융자한도 우대(60억→100억) 정책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신청 시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3	한국무역협회	-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해외 판로개척 우선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6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수출지원 보증프로그램 지원																													
7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 보증/보험 한도 우대 - 보증료/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8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우대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9	한국수출입은행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10	IBK기업은행	- 해외시장 수출 판로개척 지원(IBK TradeClub 가입지원) -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및 외국환 수수료, 환가로 우대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 여신 지원 시 금리 및 한도 우대 -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 IBK 비금융 서비스 종합지원(물류비 할인 등)
11	농협은행	- 외국환 거래 시 환율 및 각종 수수료 우대 -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12	KB국민은행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13	신한은행	-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4	씨티은행	-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5	하나은행	-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료 감면 지원 -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 전자방식(EDI,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 주관 수출입 아카데미 참가 기회 제공
16	우리은행	- 환가로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7	부산은행	-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8	경남은행	- 평가항목 우대 및 금리감면 -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9	대구은행	- 환율 우대 -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 퀵(QUICK) 데스크 서비스 지원-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20	SGI 서울보증	- 보험요율 10% 할인 - 보증한도 30억원까지 확대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
21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강소/강소+단계(500만불이상) 추가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R&D 우대

■ 강소단계 추가 지원

① 기술 개발사업(R&D) 전용 트랙 마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전용 트랙(80개사) 신설
- 최종 선정 후, 기정원에서 별도 서류평가를 통해 R&D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최대 4년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연 5억원)

** 단, R&D 졸업제 대상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추후 졸업제 타 대상사업 수행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지역 자율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지자체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 '23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既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신청기간

■ 전년 12월~1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table border="1" data-bbox="268 235 1410 817"> <thead> <tr> <th>구분</th> <th>연번</th> <th>제출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필수</td> <td>1</td> <td>참가신청서</td> <td>신청 사이트 內 작성</td> </tr> <tr> <td>2</td> <td>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td> <td>신청 사이트 內 작성</td> </tr> <tr> <td>3</td> <td>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td> <td>붙임 양식 작성 및 신청 사이트에 첨부</td> </tr> <tr> <td>4</td> <td>사업자등록증명원</td> <td rowspan="2">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td> </tr> <tr> <td>5</td> <td>'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td> </tr> <tr> <td>6</td> <td>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td> <td></td> </tr> <tr> <td>7</td> <td>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td> <td>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확인서 발급</td> </tr> <tr> <td rowspan="5">선택</td> <td>8</td> <td>수출실적증명원('21-'23)</td> <td>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실적)</td> </tr> <tr> <td>9</td> <td>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td> <td>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td> </tr> <tr> <td>10</td> <td>간접수출실적 증명서</td> <td>KTNET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td> </tr> <tr> <td>11</td> <td>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td> <td>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신청 사이트에 첨부</td> </tr> <tr> <td>12</td> <td>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1-'23)</td> <td>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신청 사이트에 첨부</td> </tr> </tbody> </table>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참가신청서	신청 사이트 內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사이트 內 작성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작성 및 신청 사이트에 첨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5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확인서 발급	선택	8	수출실적증명원('21-'23)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실적)	9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	10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	11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신청 사이트에 첨부	12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1-'23)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신청 사이트에 첨부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참가신청서	신청 사이트 內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사이트 內 작성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작성 및 신청 사이트에 첨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5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확인서 발급																																									
선택	8	수출실적증명원('21-'23)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실적)																																									
	9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																																									
	10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신청 사이트에 첨부																																									
	11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신청 사이트에 첨부																																									
	12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1-'23)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위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신청 사이트에 첨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문의: 055-752-8580 중진공 홈페이지 문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1357 중소기업지원플랫폼(민원증명): 02-3771-1100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0 대한민국 소싱위크 수출상담회

사업명	대한민국 소싱위크 수출상담회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바이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자격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제외 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업종 분류</th> <th style="width: 20%;">품목코드</th> <th style="width: 50%;">지원제외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조업</td> <td>33402中</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td> </tr> <tr> <td>33409中</td> <td>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td> </tr> <tr> <td rowspan="3">도매 및 소매업</td> <td>46102中</td> <td>담배 중개업</td> </tr> <tr> <td>46331, 3</td> <td>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td> </tr> <tr> <td>4722中</td> <td>주류, 담배 소매업</td> </tr> <tr> <td>숙박 및 음식점업</td> <td>5621</td> <td>주점업</td> </tr> <tr> <td>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td> <td>5821中</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9124</td> <td>갬블링 및 베팅업</td> </tr> </tbody> </table> <p>*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p>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매칭 및 온·오프라인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바이어와 상담매칭 지원 및 운영 관리 - 원활한 상담을 위한 통역, 상담시설 등을 제공 ▪ 중진공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상담회 사후관리 지원 ▪ 고비즈코리아(B2B 사이트) 내 상품 페이지 제작 및 홍보 지원 																								
신청기간	▪ 8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http://mng.gobizkorea.com/sourcing) - 참여기업당 해외바이어 최대 30개사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상세정보는 신청 홈페이지 참조 (바이어 정보 변동 가능) ※ 해외바이어의 선호도에 따라 신청한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753, 9778 ▪ 대한민국 소싱위크 수출상담회 사무국 ☎ 070-4640-5995 / ✉ 2023ksw.info@gobizkorea.com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1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사업명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컨설팅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신청·평가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사업구분	세부지원내용	기업부담금																									
	① 온라인수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시 : 기업분석, 상품별 타겟 플랫폼·국가 설정, 온라인 특화 상품 구성, 상품 노출 전략, 판매·물류관리 솔루션 등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500만원)																									
	② 글로벌 쇼핑몰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판매) 글로벌쇼핑몰(아마존 등)에 참여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직접판매 지원 (위탁판매) 글로벌쇼핑몰 판매경험이 많은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의 상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대행 지원 	없음																									
	③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상 국가·시장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SNS전용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커머스(미디어를 통한 상품판매) 지원 및 사전·사후 SNS홍보 등 연계 프로모션 지원 	없음																									
	④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비할인) 해외배송비(해상·항공 운임) 할인 지원, 목록통관 수출신고 지원 (풀필먼트 지원) 상품 집적부터 출고, 물류거점 제공, 현지배송, 반품까지 원스톱 지원 ※ 물류사 풀필먼트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23년 수출실적 구간별 정부지원금액 배정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기준('23년 일반통관+목록통관)</th> <th colspan="2">승인금액</th> </tr> <tr> <th>수출 판매물류</th> <th>반품 역물류</th> </tr> </thead> <tbody> <tr> <td>수출강소기업</td> <td>500만원 이상 ~</td> <td>2,5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수출성장기업</td> <td>1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td> <td>1,600만원</td> <td>160만원</td> </tr> <tr> <td>수출유망기업</td> <td>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td> <td>1,200만원</td> <td>120만원</td> </tr> <tr> <td>수출초보기업</td> <td>0불 초과 ~ 10만원 미만</td> <td>700만원</td> <td>70만원</td> </tr> <tr> <td>내수기업</td> <td>0불 (플랫폼 신규입점 등 수출예정 기업)</td> <td>500만원</td> <td>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23년 일반통관+목록통관)	승인금액		수출 판매물류	반품 역물류	수출강소기업	500만원 이상 ~	2,500만원	250만원	수출성장기업	1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	1,600만원	160만원	수출유망기업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200만원	120만원	수출초보기업	0불 초과 ~ 10만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내수기업	0불 (플랫폼 신규입점 등 수출예정 기업)	500만원	50만원
구분	기준('23년 일반통관+목록통관)	승인금액																										
		수출 판매물류	반품 역물류																									
수출강소기업	500만원 이상 ~	2,500만원	250만원																									
수출성장기업	1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	1,600만원	160만원																									
수출유망기업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200만원	120만원																									
수출초보기업	0불 초과 ~ 10만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내수기업	0불 (플랫폼 신규입점 등 수출예정 기업)	500만원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풀필먼트 연계 마케팅) 플랫폼별 입점 유망상품을 발굴하고, 공동기획전을 통한 물량집적으로 배송 및 풀필먼트 할인 등 판매 촉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원 불가 ※ 각 사업별 글로벌쇼핑몰 정책상 판매 제한품목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③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분) ④ '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⑤ '23년(2023.1.1.~2023.12.31.) 온라인수출 실적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아마존, 큐텐, 자사몰 등) 연간 판매 캡처화면 등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⑦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 ⑧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본요건 검토 ⑨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계획서 ⑩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⑫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⑭ 해외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⑮ 플랫폼(아마존, 큐텐 등) 계정보유 현황 - 선택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⑯ 혁신형 중소기업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7) - 글로벌소핑몰 진출지원: 055-751-9777, 9779, 9753 - 미디어콘텐츠마케팅: 02-2130-1482, 1485 - 온라인수출공동물류: 02-2130-1486, 1488, 1484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2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신청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지원항목</th> <th>지원내용</th> <th colspan="2">지원한도(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바우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국내·외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000 (국비 80%)</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 (자부담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td> <td colspan="2"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판로연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스타소공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td> </tr> </tbody> </table>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바우처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국내·외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2,000 (국비 80%)	500 (자부담 20%)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		판로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스타소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바우처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국내·외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2,000 (국비 80%)	500 (자부담 20%)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																				
		판로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스타소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																							
	<p>※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절차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고 중기부, 소진공</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접수 소진공, 소공인</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서류평가 평가위원회</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발표평가 평가위원회</td> <td style="font-size: 2em;">▶</td> </tr> <tr style="margin-top: 10px;">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약 공단↔소공인</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업수행 소공인</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결과보고 소공인→공단</td> <td style="font-size: 2em;">▶</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업비 정산 소공인↔공단</td> <td></td> </tr> </table>		공고 중기부, 소진공	▶	신청·접수 소진공, 소공인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협약 공단↔소공인	▶	사업수행 소공인	▶	결과보고 소공인→공단	▶	사업비 정산 소공인↔공단											
공고 중기부, 소진공	▶	신청·접수 소진공, 소공인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협약 공단↔소공인	▶	사업수행 소공인	▶	결과보고 소공인→공단	▶	사업비 정산 소공인↔공단																					
<p>*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급업체 매칭의 경우 전문기관이 보유한 수행(공급)업체 Pool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수행가능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추천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진행 가능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선택 및 신청 가능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청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조회</td> <td>(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광고조회”→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td> </tr> <tr> <td>신청서 제출</td> <td>(1단계)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td> </tr> <tr> <td>참고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소공인 판로개척’ 검색하여 사업신청방법 확인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td> </tr> </tbody> </table>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광고조회”→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소공인 판로개척’ 검색하여 사업신청방법 확인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광고조회”→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소공인 판로개척’ 검색하여 사업신청방법 확인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 (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 1 ~ 7까지 제출필수 ②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미동의 시 : 1 ~ 11까지 제출필수 																																							
신청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번</th> <th>제출서류</th> <th>발행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필수서류</td> <td>1</td> <td>〈서식1〉 수행계획서(8장이내)</td> <td>공고 내 서식 확인 신청단계 시 파일첨부</td> </tr> <tr> <td>2</td> <td>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신청서</td> <td rowspan="4">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td> </tr> <tr> <td>3</td> <td>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td> </tr> <tr> <td>4</td> <td>자가진단 체크리스트</td> </tr> <tr> <td>5</td> <td>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서 (단,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 중 데이터 조회 불가가 경우 추후 서류 보완요청) ※ 미동의 시 8~10번 서류 추가첨부 필수</td> </tr> <tr> <td>6</td> <td>(개인사업자만 해당)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1.31)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이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td> <td>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td> </tr> <tr> <td>7</td> <td>가점서류(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td> <td>신청단계 시 파일첨부</td> </tr> <tr> <td rowspan="4">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td> <td>8</td> <td>▶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td> <td rowspan="3">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td> </tr> <tr> <td rowspan="2">9</td> <td>3개 中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td> </tr> <tr> <td>1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td> </tr> <tr> <td>10</td> <td>▶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td> <td>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67)</td> </tr> <tr> <td rowspan="2">11</td> <td>□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td> </tr> <tr> <td>□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td> <td>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td> </tr> </tbody> </table>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행처	필수서류	1	〈서식1〉 수행계획서(8장이내)	공고 내 서식 확인 신청단계 시 파일첨부	2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서 (단,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 중 데이터 조회 불가가 경우 추후 서류 보완요청) ※ 미동의 시 8~10번 서류 추가첨부 필수	6	(개인사업자만 해당)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1.31)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이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7	가점서류(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신청단계 시 파일첨부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9	3개 中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67)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행처																																			
	필수서류	1	〈서식1〉 수행계획서(8장이내)	공고 내 서식 확인 신청단계 시 파일첨부																																			
		2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서 (단,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 중 데이터 조회 불가가 경우 추후 서류 보완요청) ※ 미동의 시 8~10번 서류 추가첨부 필수																																				
		6	(개인사업자만 해당)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1.31)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이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7	가점서류(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신청단계 시 파일첨부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9	3개 中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67)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번없이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는 신청단계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 소상공인24: 1644-5302 ▪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3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사업명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해외인증지원단									
사업개요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지원규모)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신청기간	▪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진행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신청·접수</td> <td style="width: 25%;">대상선정</td> <td style="width: 25%;">매칭·견적</td> <td style="width: 25%;">시험진행</td> </tr> <tr> <td>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신청기업)</td> <td>→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해외인증지원단)</td> <td>→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선정기업)1)</td> <td>→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선정기업)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기업은 시험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 (globalcertification@ksa.or.kr) 		신청·접수	대상선정	매칭·견적	시험진행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신청기업)	→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해외인증지원단)	→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선정기업)1)	→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선정기업)2)
신청·접수	대상선정	매칭·견적	시험진행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신청기업)	→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해외인증지원단)	→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선정기업)1)	→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선정기업)2)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신청서, 2. 신청 제품정보, 3. 중소기업 확인서, 4. 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 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참여기업명-구매기업명(서명), 품목명, 수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포함) - 5. 수출실적확인서(2022년(전체), 2023년(~10월까지) 수출실적, 수출실적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6. 지방세 납입증명서, 7. 국세 납입증명서,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사업자등록증, 10. 법인등록증(해당시-2023.11.1.일 이후 발행본), 11. 공장등록증(해당시-2023.11.1.일 이후 발행본) ▪ (신청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계약 금액, 인증 획득의 시급성, 그간의 수출실적, 수출의 파급 효과, 4대 시험기관의 시험가능 품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 이메일: globalcertification@ksa.or.kr - 전화번호: 02-6240-4770 - 홈페이지: https://globalcerti.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사업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가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중소기업(브랜드K 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가점(2점)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트랙합산 동시 신청 인증 건수는 최대 4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5개년('19년 ~ '23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트랙별 지원내용 <table border="1" data-bbox="271 1411 1444 169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패스트트랙</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td> </tr> <tr> <td>일반트랙</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별도 안내된 인증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td> </tr> </tbody> </table>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지원한도(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원전 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원 지원 (신청 시 원전분야 별도 선택 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요)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공고문 내 붙임 참고)”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별도 안내된 인증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공고문 내 붙임 확인 요망) 별도 안내된 인증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100억원 개별한도
		100억원 개별한도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공고문 내 붙임 참조

* 원전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 원 지원(신청 시 관련성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참조)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 단, 고비용인증*은 전국 경쟁으로 선정하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 금액을 별도 설정

* 고비용인증: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신청기간 ▪ (일반트랙) 2월, 5월, 8월 / (패스트트랙) 3~8월(상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공고문 내 붙임)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수출실적 증가	- [패스트트랙] 제출생략 - [일반트랙] 제출생략 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 (한국무역통신) 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 교육 수료증 제출('22년, '23년 및 당해 연도 교육 (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수출업무 담당자 역량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22년, '23년 및 당해 연도 참여완료에 한함)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지침 서식 활용
	수출준비 활동	- 제출생략 - 제출생략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	여성기업	- 제출생략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소·부·장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브랜드K 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제출생략
기타	원전인증 신청기업	- 원전관련 인증임을 확인 가능한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또는 원전관련 인증임이 입증 가능한 서류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5 수출컨소시엄

사업명	수출컨소시엄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현지활동, 사후관리, 구성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통 비용의 70~100% 지원 - (사전준비)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홍보 - (현지활동)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바이어 초청, 샘플발송 등 사후관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단계	보조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고
	사전준비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70%	100만원/업체	
		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및 외국어 공동 카탈로그 등
	현지활동	전시장 임차	70%		- 해외 상담 활동기간에 한함
		상담장 임차			
		차량 임차			
		통역			
		기타 마케팅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물품 운송료	편도 100%	해상운송 1CBM	- 전시·상담물품에 한함
	사후관리	초청 바이어 국내활동비	-	30만원/24시간	- 국내 상담 활동기간에 한함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 바이어 항공료	70%	-	- 이코노미석 왕복 1명
		상담장·차량 임차		-	- 실비 인정
		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통역비	20~30만원		- 영어·중국어·일어(20만원), 특수어(30만원) 한도	
	구성운영	공동홍보부스(전시회)	100%	-	- 1부스 이내 임차(최대 12㎡) - 장치비는 KOTRA 단가 적용
회선임차(전시회)		-		- 인터넷 2회선, FAX 1회선 이내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 입증 자료 제출(승인 범위내 인정) -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외주 진행시 비용 불인정	
간담회비(국내/국외)		-		-	-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해외전시포탈 접속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상담회)' → 희망 전시회/상담회 클릭 후 참가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② 참가동의서, ③ 기업정보활용동의서 - (첨부) 사업자등록증 -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 (첨부) 회사 및 제품소개서 - (첨부)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 (첨부)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첨부-해당시) 수출실적증명서, 해외특허·인증 증명서, 가점사항 증빙 사본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정책실 ☎ 02-2124-3296 / E-mail intlteam@kbiz.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전시회' 클릭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상담회' 클릭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26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사업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전시산업진흥회 ※ KOTRA담당부서: 해외전시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진행 해당 연도 1년 이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단독)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비용을 지원 * 개별참가: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견기업: 총 모집규모의 5% 이내로 선정 및 지원 * 지원제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 선정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전시산업발전법 제 2조'에 명시된 전시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4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연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 신청 혹은 여러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비용*, 해외마케팅 서비스(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아래의 '비용 지원' 부분 참고) '비용지원' 상세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해외전시회 1회참가 직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1.~24.12.31. 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 부스 임차료(필수),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 현지 법인·에이전시를 통해 참가하더라도,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시 지원가능 - 온라인 해외전시회 : 전시회 참가비(필수)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1회참가 직접비용'의 직접비용 우선 정산 이후, 잔액에 한해 정산 -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국내반출→해외전시회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당 1CBM 한도 지원(항공운송 시, 167kgs=1CBM으로간주) * 단, 특송(DHL, FEDEX, EMS 등) 운송비 미지원 - 온라인 해외전시회: 온라인 상담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 해외전시회 '현지주최사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 매칭서비스 등 유의사항: 동일 전시회 관련 상기 항목중 하나라도 다른사업과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 * 참가 직접비용(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운송비, 주최사 측 공식 마케팅 서비스 비용 '비용지원' 제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간접비용: 항공임, 현지체재비, 통역비, 각종홍보물(배너, 현수막, 브로셔 등) 제작 및 인쇄비, 물품구매 비용 등 * 단, 부스 혹은 인포데스크에 부착할 수 있는 일회성 그래픽 출력물만 지원 - 전시물품반송(수입:Return) 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 비용(9㎡당1CBM지원기준) -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개인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 참가신청 수수료: 협·단체, 민간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외화결제 시,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 국내 발생 부가세 -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 * 사후정산 간,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 '마케팅지원' 상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서비스(세부내용은 공고문 내 붙임 확인) - 대상: 개별참가 선정기업 중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 22년도 수출액(관세청통관) 기준으로 내수기업(0), 수출초보기업(0-10만불미만) 등으로 구분

	- 내용: 지원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 유형은 ① 바이어 발굴 방법 안내 및 ② 현장컨설팅
신청기간	▪ 전년 12월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 24(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투자24 로그인 → 사업신청 → 「202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검색 ※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수정 필요시 재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 (필수) 참가신청서 (온라인 신청) - (필수) 신청각서 (첨부양식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신규 상품정보 등록(선정기업 발표 이후 등록 진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등록(주의)〉</p> <p>① 전시회 참가제품 평가를 위한 필수 작업으로 신청기업은 사전에 BK 온라인 상품정보를 신규등록</p> <p>② 기존 등록된 상품정보는 '2023년 기준으로 정보가 갱신' 되어야 함</p> <p>* 승인까지 최대 4일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고려하여 조기 신청 권장</p> <p>* buyKorea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 (단, 사업 선정 시 상품등록 필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02-420-2042/ E-mail ex@akei.or.kr ▪ KOTRA 무역투자 24시스템 및 로그인 관련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3330, 7262, 7288/ E-mail kyh0302@kotra.or.kr ▪ BuyKoreaa 관련 - (로그인/회원가입/트레이드쇼) ☎ 070-5180-9107 - (상품/인콰이어리/견적) ☎ 070-5180-9106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27 해외비즈니스 매칭

사업명	해외비즈니스 매칭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기업이 작성한 거래제안서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의 해외지부 및 마케팅 오피스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모색 후 바이어 정보 제공 및 상담 주선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이며, tradeKorea(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기업회원(기업정보를 입력한 가입자)
지원내용	▪ 이용절차 - (① 신청서 작성) 기업이 tradeKorea에 등록된 회사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제안서 직접 작성하여 신청 - (② 국내기업 소개) 한국무역협회가 신청 확인 후 해외바이어 모색 및 상품 소개 - (③ 상품 관심의사 표시) 해외바이어가 기업 상품에 대한 관심의사 회신 - (④ 해외바이어 정보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에 해당 바이어 정보 제공 및 해외바이어 상담
신청기간	▪ 연중 수시(월 1회) - 매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 기업당 연 최대 3회로 이용 횟수 제한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kr.trade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입력 - 2) 대륙 및 국가 중 최대 3개 지역 선택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대륙: 유럽, 중동 - 3) tradeKorea에 등록된 회사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제안서 직접 작성 ▪ 신청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연간 3회 가능, 1회 신청 시 최대 3개 지역 선택 가능 - 이미 신청한 지역은 1년 이내 신청 불가 - 무역협회 회비 미납 시 선발 제한 - 상품설명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 바이어 발굴은 바이어 관심 의사 확인을 위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음 - 상품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바이어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서류	▪ 사업 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CBT마케팅센터 ☎ 02-6000-5499 / E-mail leokim0716@kita.net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28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사업명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현재 소싱이 진행 중인 글로벌 유망바이어 정보를 신청 기업에 제공하여 적합한 바이어 매칭 지원
신청자격	▪ tradeKorea(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Seller회원(기업정보를 입력한 가입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온라인 참가 신청) 신청 기업이 소싱 진행 중인 글로벌 유망바이어의 지역, 회사 소개, 품목 등 정보 확인 후 참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바이어 정보 확인 가능(아래 '참고사항'의 '사업 신청 페이지' 참고) - (② 신청기업 매칭여부 검토)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의 신청서 확인 후 해외바이어와 매칭 적격여부 검토 및 적격 기업정보를 해외바이어에 전달 - (③ 상품 관심의사 표시) 해외바이어가 기업 상품에 대한 관심의사 회신 - (④ 해외바이어 정보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에 매칭 결과 통보 및 상담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수시(월 1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모집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kr.trade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신청 가능한 글로벌 유망바이어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소싱품목 정보 확인 필수 - 2) 바이어 정보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내 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신청서류	▪ 사업 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CBT마케팅센터 ☎ 02-6000-4438 / E-mail trkmarket@kita.net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29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사업명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기업에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 바이어 매칭 지원
신청자격	▪ tradeKorea(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Seller회원(기업정보를 입력한 가입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콰이어리 등록) 해외바이어가 한국무역협회의 다양한 접수 경로를 통해 인콰이어리 정보 등록 - (② 인콰이어리 접수 및 분류) 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접수 후 지역, 회사소개, 품목 등 정보를 tradeKorea 웹사이트 내 게시 - (③ 거래 알선 신청) 신청 기업이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세부 정보 확인 후 거래 알선 신청 ※ 사업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인콰이어리 정보 확인 가능(아래 '참고사항'의 '사업 신청 페이지' 참고) - (④ 매칭여부 검토 및 결과통보)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의 신청서 확인 후 해외바이어와 매칭 적격여부 검토 및 적격 기업정보를 해외바이어에 전달 - (⑤ 국내 기업정보 회신) 해외바이어와 기업 간 직접 연락을 통해 거래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수시 -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등록일로부터 7일간 모집(건 별 등록일 상이)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kr.trade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 신청 가능한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확인 ※ 국가 및 소상품목 정보 확인 필수 - 2) 인콰이어리 정보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 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신청서류	▪ 사업 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tradeKorea) ☎ 1566-5114 / E-mail tradekorea@kita.net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30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사업명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무역협회 해외지부(10개소)를 통한 통역, 전문가 상담 알선, 유통망 입점, 거래선 관리 등 현지 실무 지원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회원사 기업ID와 해당 기업ID가 자사소속 승인을 완료한 일반ID)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 해외지부) 도쿄, 뉴욕,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 뉴델리, 자카르타, UAE - (공통 지원 서비스) 각 해외지부별 지원 서비스 유형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 기재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해외지부별 지원 서비스는 아래 '참고사항'의 사업 신청 페이지 참고 · (시장/통상정보 제공) 산업/품목별 시장정보 혹은 해외지부별 통상정보 제공 · (바이어 신용조사) 해외기업의 비즈니스, 재무정보 제공 ·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무역협회 본부·지부 주관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대상 지원, 기타 전시회는 협의후 간접지원 가능 · (물류통관 자문 지원) 외부 물류 전문가(현지 물류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 알선 · (인허가 취득 지원) 현지 인증 전문가 정보 제공 및 알선 · (현지지사 설립 지원) 지사 설립 관련 지원기관 및 대행업체 정보 제공 · (해외투자유관기관 상담) 해외투자유관기관 담당자 연결 지원 · (법률자문서비스) 현지 로펌 정보 및 연락처 안내 · (출장자 지원) 통역 알선, 현지 숙소 및 교통편 안내 ·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안내 등 - (기타 지원 서비스) 특정 해외지부에 한해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시장성 분석, 바이어 수출 성약 지원, 거래선 관리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브랜드 홍보 지원, IP등록 지원, 현지 바이어 통역서비스 등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참고사항'의 '사업 신청 페이지' 참고
신청서류	▪ 사업 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 1566-5114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31 OK FTA 컨설팅

사업명	OK FTA 컨설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 기업에 품목 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내 정부지원 컨설팅(OK FTA 컨설팅, Yes FTA 컨설팅 등)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 ③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지원내용	▪ 종합 컨설팅(A) 및 기초 컨설팅(B~C)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컨설팅 내용</th> <th>지원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종합</td> <td>A유형</td> <td>종합컨설팅</td> <td>필수 6일 + 선택 4일 (총 6~10일)</td> </tr> <tr> <td rowspan="2">기초</td> <td>B유형</td> <td>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td> <td>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td> </tr> <tr> <td>C유형</td> <td>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td> <td>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td> </tr> </tbody> </table>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일수	종합	A유형	종합컨설팅	필수 6일 + 선택 4일 (총 6~10일)	기초	B유형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	C유형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일수														
	종합	A유형	종합컨설팅	필수 6일 + 선택 4일 (총 6~10일)													
	기초	B유형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													
C유형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필수 2일 + 선택 3일 (총 2~5일)														
▪ (기업분담금)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발생,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 부담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전년도 매출액</th> <th>기업분담금</th> </tr> </thead> <tbody> <tr> <td>50억원 미만</td> <td>무료</td> </tr> <tr> <td>50억원 ~ 100억원 미만</td> <td>10%</td> </tr> <tr> <td>100억원 ~ 500억원 미만</td> <td>20%</td> </tr> <tr> <td>500억원 ~ 1,000억원 미만</td> <td>30%</td> </tr> <tr> <td>1,000억원 ~ 1,500억원 미만</td> <td>40%</td> </tr> <tr> <td>1,500억원 이상</td> <td>50%</td> </tr> </tbody> </table>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50억원 미만	무료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2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 이상	50%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50억원 미만	무료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2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 이상	50%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okfta@kita.net)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 ▪ 사업진행 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문의처	▪ (FTA 콜센터) ☎ 국번없이 1380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32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중소·중견 무역업계의 한-중 FTA 및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컨설팅 제공 - 컨설팅 내용에 FTA 활용(관세/통관) 분야,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분야 포함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한-중 FTA 및 RCEP 활용 희망 업체) ※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한-중 FTA 또는 RCEP 활용 컨설팅(택1) - (선택)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 ▪ 컨설팅 세부내용 	
	[필수] 1일(MD)	[선택] 9일(MD)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또는 RCEP 방문교육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원산지/통관실무(5MD 이내) · (인증) 인증 취득 절차(2MD 이내) · (지재권) 상표/특허/계약(2MD 이내) · (FTA 시스템) 시스템 구축, DATA 작성, 서류발급(2MD 이내)
	※ 총 12MD 중 필수컨설팅 포함 10MD	
	▪ (기업분담금)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시 발생,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 부담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50억원 미만	무료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2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 이상	50%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국번없이 1380, 1번 누르고 차이나데스크 연결 요청) 신청 ※ 웹사이트 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chinadesk01@kita.or.kr)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 ▪ 사업진행 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문의처	▪ (FTA 콜센터) ☎ 국번없이 1380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33 인증/지재권 컨설팅

사업명	인증/지재권 컨설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대응 서비스
신청자격	▪ 전국 중소·중견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TBT)컨설팅)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규정, 제품표준 등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방해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1~3일 방문하여 해외인증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상국의 기술표준, 제품인증 등 관련 기초정보 제공 - 해외인증 취득 세부 절차 안내 및 신청 문서 작성 지원 등 ▪ (지식재산권(IP) 컨설팅) 해외 수출시 검토해야 할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실안 등) 현황 및 이슈 파악, 주요 지식재산 권리화 방안과 침해 이슈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현황 및 이슈 안내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등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대응 솔루션 제공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참고-기업분담금) 무료(국고 전액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후 FTA 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전화를 통해 후속 절차 진행(서류보완, 컨설팅 진행 등)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 ▪ 사업진행 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문의처	▪ (FTA 콜센터) ☎ 국번없이 1380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사업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국제협력실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신청자격	▪ (공통)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사업명	신청자격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 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상용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및 기업 등	
지원내용	▪ 사업별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비율 및 규모
	해외인증획득 지원	○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자유공모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5~90%이내 - 기업당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 총 지원규모 : 2억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해당 소요사업비의 100% - 전시회 참가 희망기업 지원은 공모에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별도 공고 ○ 총 지원규모 : 7억원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 선정과제 수 : 6개 사업 이내 ○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2억원 내외 ○ 과제기간 : 9개월 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
		○ 해외 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 선정과제 수 : 2개 사업 이내 ○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4.5억원 이내 ○ 과제기간 : 1년 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
	해외 상용화 지원	○ 해외 상용화 지원 - 자유공모	○ 선정과제 수 : 1개 사업 ○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10억원 이내 ○ 과제기간 : 1년 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85%이내
	※ 사업별 지원분야는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공고 가능하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사업별 지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현금 부담 비율이며 사업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세부 사업명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신재생설비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해외인증획득 지원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85%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해외 타당성조사 및 해외상용화 지원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경우, 해외전시회는 지정 공모함			
전시회 명칭	장 소	기 간	사업비
InterSolar Europe	독일 뮌헨	'24.6.19 ~ 6.21	700백만원
Solar Power International	미국 애너하임	'24.9.9 ~ 9.12	
PV Expo	일본 도쿄	'24.10.2 ~ 10.4	
신청기간	▪ 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제출 마감시한 제출분까지 유효, 단 해외인증획득지원의 경우 지원예산 소진까지 계속		

수시 접수)
※ 단,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명	제출처
신재생에너지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타당성조사지원, 해외상용화지원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①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접속 후, 해당사업별 신청 ※ 신청서 등 단순저장은 '24.3.25(월) 9시 이후 접수기간 내 가능 ※ 신청서 등 최종제출은 '24.3.25(월) 9시 ~ '24.4.15(월) 16시까지 (우편번호 : 44538)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지원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실 해외진출·EID지원팀

사업명	제출서류
해외인증획득지원	1. 사업계획서 (기술요약서, 기업소개서 포함) 직인날인 사본 1부, 전자파일(한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해외인증기관 접수증(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확인)
	4. 견적서 및 수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인증신청수수료, 성능검사비용에 한정, 컨설팅 등 기타비용 제외)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해당기업만 제출)
	6.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각 1부
	7.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TUV 등 각종 인증서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8.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1부(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를 명시한 경우)
	9. 기타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기업만 제출)
해외시장개척지원	1. 사업계획서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고일기준 유효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용등급확인서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7. (참여기관) 참여기관 사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예비/본)타당성조사지원, 해외상용화지원	1. 사업계획서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고일기준 유효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용등급확인서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7. (참여기관) 참여기관 사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8. 사업계획 평가 가점 및 감점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9. 예비/본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당시)
	10. 프로젝트 관련 증명서류(수주계약서, MOU, LOI, Letter 등)

※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제출 서류(평가 당일)

사업명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비고
		인쇄본	전자파일	
해외인증획득 지원	사본 10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본 10부	10부	담당자 이메일 제출	
해외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 지원				

문의처

-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상용화 지원 관련: 052-920-0611
- 해외시장 개척지원 관련: 052-920-0614
- 해외인증 획득지원 관련: 052-920-0615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원전기자재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력원자력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력으로 해외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해외 출장 제약이 발생하여 해외 현지 대면 수행이 불가한 해외 마케팅 업무를 KOTRA 무역관 전담직원이 대행해주는 'KOTRA 지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수행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세부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또는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최근 3년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실적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한수원 주관 협력연구 개발과제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인증 보유기업 선정배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한수원 해외 판로개척 사업(혁신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배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지사화 사업 지원: 업체당 1~2개 국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당 무역관 1~2개를 배정하여 지원 예정(미국, 캐나다, UAE, 사우디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에 배정 희망 무역관 순위 조사 예정(단, 무역관 미선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서비스: 아래 중 최대 3개까지 지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별로 참여 중소기업 부담금액 발생 가능(ex. 전시회 부스참가비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서비스명</th> <th>No</th> <th>서비스명</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수출성약 지원</td> <td>⑥</td> <td>인허가 취득 지원</td> </tr> <tr> <td>②</td> <td>전시상담회 참가 지원</td> <td>⑦</td> <td>브랜드 홍보</td> </tr> <tr> <td>③</td> <td>물류통관 자문</td> <td>⑧</td> <td>프로젝트 참가</td> </tr> <tr> <td>④</td> <td>출장지원(대행)</td> <td>⑨</td> <td>현지 법인설립 지원</td> </tr> <tr> <td>⑤</td> <td>기존 거래선 관리</td> <td>⑩</td> <td>기타 기업요청 서비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국가 원자력산업 조사보고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지사화 사업이 진행되는 4개국(미국, 캐나다, UAE, 사우디) 대상 원전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 배포 			No	서비스명	No	서비스명	①	수출성약 지원	⑥	인허가 취득 지원	②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⑦	브랜드 홍보	③	물류통관 자문	⑧	프로젝트 참가	④	출장지원(대행)	⑨	현지 법인설립 지원	⑤	기존 거래선 관리	⑩
No	서비스명	No	서비스명																							
①	수출성약 지원	⑥	인허가 취득 지원																							
②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⑦	브랜드 홍보																							
③	물류통관 자문	⑧	프로젝트 참가																							
④	출장지원(대행)	⑨	현지 법인설립 지원																							
⑤	기존 거래선 관리	⑩	기타 기업요청 서비스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문 첨부문서 참고) 이메일 제출 선정 절차: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준은 공고문 첨부문서 참고 선정 규모: 20개사 내외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KOTRA 사이트에 가입해야 함(미가입 시 사업 포기로 간주)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신청서 (사업 종료시) 참여기업 결과보고서(지원성과 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급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 혁신제품 인증서(해당시)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KITA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제출 가능 신청지역 수출실적 증빙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입금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배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착오·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최용훈 대리: ethan.choi@koema.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36 혁신기자재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사업명	혁신기자재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남부발전/해외법인	
사업개요	▪ 국산 혁신기자재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해외 발전소를 활용하여 혁신기자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Track-record를 확보하고자 시제품 제작비, 운송비, 시험료 등을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6개사 ※ 정부인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출시 사업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법인과 기업 간 매칭 - 시제품제작비·운송비·시험료 지원(기업당 최대 0.5억원) ※ 시제품 설치 후, 지원기업의 회계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시행 - 거점국가 및 인근국가 마케팅 지원 ▪ 실증장소: 요르단 - 알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칠레 - 켈라 복합화력발전소 ▪ 사업 추진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TD A[과제공모 (15일간)] --> B[과제접수] B --> C[1차 사전검토] C --> D[기업선정 심의위원회] D --> E[기업실사 (필요시)] E --> F[협약체결] F --> G[기자재 제작] G --> H[현장 설치] H --> I[설치 결과보고] I --> J[기자재 모니터링] </pre> </div>	
신청기간	▪ 7월	
신청방법	▪ 남부발전 동반성장플랫폼(9988.kospo.co.kr) 접속 → [사업공고] → 본 사업의 신청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 신청서 제출 ▪ 평가방법: 서면평가 ▪ 선정방법: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6개사 선정	
신청서류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발전회사 납품·시공·연구개발 실적 확인증(최대 5건) ▪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정부인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특허등록·실용신안 증명서(최대 5건)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발전회사 정비적격기업 확인증 각 1부 ▪ 국문·영문 회사 홍보자료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 - 김주형 차장: 070-7713-8182 / kjh1202@kospo.co.kr - 김덕근 대리: 070-7713-8187 / deokgeun@kospo.co.kr	
참고사항	▪ ('22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주관부처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조달청,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해외 거점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 8에 따라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기업을 의미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본 제도는 지정 평가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5점) 부여 ※ 신청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정(5년) + 재지정 3회(15년, 기업의 재지정 신청이 있으면 심사 후 재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지정기간: 20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 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작성 및 컨설팅, 조달벤더 등록, 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 제공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A, B등급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2)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3)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우대(최대 7.5점) 4)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우대(최대 5점) 유관기관 지원사업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2점) 2)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및 기술보증수수료 인하 3) 기업은행 환율우대 및 외국환 수수료 일부감면 4) 산업은행 해외송금수수료 일부 감면 5) 무역보험공사 지원 &#8211; 보증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등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G-PASS기업마크 부착(A, B등급만 해당)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2) 현장실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 3) 1차 심사: 신청서류, 현장실태조사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 조달시장 진출 노력, 해외 조달시장 진출 의지 및 가능성 평가 4) 2차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상시(분기별 1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시기에 따라 지정분기가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이메일: contact@gpass.or.kr														
신청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제출 필수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td> </tr> <tr> <td>2</td> <td>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td> </tr> <tr> <td>3</td> <td>수출실적 증빙자료</td> </tr> <tr> <td>4</td> <td>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td> </tr> <tr> <td>5</td> <td>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td> </tr> <tr> <td>6</td> <td>그 밖에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요구한 자료</td> </tr> </tbody> </table>	번호	제출 필수 서류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3	수출실적 증빙자료	4	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	5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	6	그 밖에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요구한 자료
	번호	제출 필수 서류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3	수출실적 증빙자료													
	4	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													
	5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													
6	그 밖에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요구한 자료														
- (공통사항)															
·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만 심사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심사하지 않음															
- (신규지정)															
· 수출실적은 등 평가실적은 신청 월 기준 직전 3개년의 실적만 인정 ※ 예) 2022년 7월에 신청 시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 까지의 실적만 인정															
- (재지정)															
· 수출실적 및 각종 사업 참가 실적은 직전 지정기간 시작월을 포함한 5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 ※ 예) 2022년 5월 29일 지정 기업의 경우 재지정 신청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6443, 7590 ▪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02-6203-7732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사업명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을 매칭시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해외 진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조달기업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른 G-PASS기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 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신청 및 선정 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23~'24) 참여 중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2개년 사업(계약 시작일로부터 2025.12.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계약 사업기간: 계약 시작일로부터 2024.12.31.까지 선정규모: 7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10개사 선정(조달청 선정 7개사, 수행사 선정 3개사) 사업금액(1차): 340백만원 (조달청부담 85% + 기업부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역량개발, 시장분석, 사업 발굴 등 해외마케팅 활동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 대금은 정부 예산에서 85%를 지급하고, 15%는 선정기업인 국내 기업이 부담 -> 조달청부담 85%: 국내기업 10개×28.9백만원 = 289백만원('24년 1차 확정) 업체부담 15%: 국내기업 10개×5.1백만원 = 51백만원 * '25년 2차 예정 사업금액: 국내기업 10개사 × 34백만원 = 340백만원 ** 사업금액은 수행사의 해외마케팅 활동비로 업체 지원금이 아님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 역량개발 교육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해외 현지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등 일련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사업 수행사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분석 및 전략 수립 후 협업가능한 해외기업과 매칭하고 해외사업을 조사·발굴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용역 사업 ■ 사업단계별 지원내용(전문 수행사에서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사업진행 단계</th> <th>수행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참가기업 선정 및 매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보고서 작성 수출전략기업 수출역량보고서·기업별 지원계획서 작성 및 해외 유망 기업과의 매칭 작업 </td> </tr> <tr> <td>수출전략기업 역량개발 및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검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 - 기업별 또는 과정별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수출 전략 기업에게 제공 해외기업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수출 전략기업과 수행사 간, 수출전략기업과 해외기업 간) 체결, 해외기업 CEO 초청 등 분쟁대비 업무협약 법률자문 등 </td> </tr> <tr> <td>사업발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현지 시장조사, 제품의 경쟁성 조사보고서 등 해외정부조달 입찰참가 발굴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영업기획 및 사업발굴) 등 </td> </tr> <tr> <td>사업수행 및 사후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강화 영업 활동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계약, 납품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상설 자문체계 운영 </td> </tr> </tbody> </table> 			사업진행 단계	수행 내용	참가기업 선정 및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보고서 작성 수출전략기업 수출역량보고서·기업별 지원계획서 작성 및 해외 유망 기업과의 매칭 작업 	수출전략기업 역량개발 및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 - 기업별 또는 과정별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수출 전략 기업에게 제공 해외기업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수출 전략기업과 수행사 간, 수출전략기업과 해외기업 간) 체결, 해외기업 CEO 초청 등 분쟁대비 업무협약 법률자문 등 	사업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현지 시장조사, 제품의 경쟁성 조사보고서 등 해외정부조달 입찰참가 발굴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영업기획 및 사업발굴) 등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강화 영업 활동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계약, 납품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상설 자문체계 운영
사업진행 단계	수행 내용												
참가기업 선정 및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보고서 작성 수출전략기업 수출역량보고서·기업별 지원계획서 작성 및 해외 유망 기업과의 매칭 작업 												
수출전략기업 역량개발 및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략기업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 - 기업별 또는 과정별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수출 전략 기업에게 제공 해외기업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수출 전략기업과 수행사 간, 수출전략기업과 해외기업 간) 체결, 해외기업 CEO 초청 등 분쟁대비 업무협약 법률자문 등 												
사업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현지 시장조사, 제품의 경쟁성 조사보고서 등 해외정부조달 입찰참가 발굴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영업기획 및 사업발굴) 등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강화 영업 활동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계약, 납품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상설 자문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절차(추후 변동 가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조달청 사업수행사 모집공고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조달청 참가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조달청 사업수행사 및 참가기업 최종선정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수행사 기업 간 매칭, 역량개발 및 해외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 </div> </div>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 신청' > '국내지원사업'에서 신청 ※ 상기 방법으로 신청 불가시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공고문 내 붙임 참조) ▪ 신청기업 기초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공고문 내 붙임 참조)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고문 내 붙임 참조)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70-4056-7589, 6442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39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사업명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PASS기업 또는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신청 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인 경우 '13~'23년도까지 해외전시회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우(단,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원포기는 제외) 최근 연속 4년간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으로 참가하는 경우로서 타사명의로 비용이 납부된 경우 정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의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전시회: 2024년(2월~12월중)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하는 전시회만 해당 자금지원: 업체당 600만 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 당 650만원 한도 (부스비) 500만원 한도의 부스 스페이스 임차료 및 장치비(비품제외) (운송비) 100만원 한도의 전시물품 운송비(다만, 실 지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50% 추가 지원(50만원 한도) ※ 예) 전시물품 운송비로 400만원 소요되는 경우, 100만원 및 1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50%(50만원 한도)인 50만원, 총 150만원 지원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심사 생략의 경우 지원 제한 여부 등 평가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스비) 송장(인보이스) 및 입금 확인증 (운송비) 송장(인보이스)* 및 입금 확인증 * 배송물품내역(전시물품임을 기재) 명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조달정보센터(www.pps.go.kr/gpass)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개별전시회'에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방법으로 신청 불가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1부 심사 증빙서류 각 1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7590, 6487, 6443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주관부처	▪ 조달청, 경기도, 고양시														
운영기관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킨텍스, 정부조달마스협회,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사업개요	▪ 해외바이어 초청 등 우수제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 등록업체, 기술인증제품 생산업체, 공공조달시장진출 희망업체(본사 경기도 소재), 신기술·신제품 인증업체, G-PASS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전사회는 참가대상이 제한되므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사무국(031-995-8283)으로 참가 여부 확인 요망 ▪ 신청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업체 - 단순무역, 유통, 전시품목 비관련업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어 유치 - 참가업체 초청 희망 바이어 우선 유치(해외 바이어 항공료 및 숙박 지원) - 해외 바이어 - 참가업체 간 1:1 수출 상담회 운영(현장 통역 무료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설명회 참관 등 ▪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관) LED조명, 디지털 전관방송시스템, PC 및 데스크탑, 회의시스템 등 - (사무기기관) 사무용 가구, 교육용 가구,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이동식서가 등 - (건설환경관) 태양광 가로등, 밸브류, 데크플레이트, 난방용 전열관, 투수블록, 안내판, 조형물 등 - (기계장치관) 향온흡습기, 열교환기, 부스터펌프 시스템, 무대장치, 다목적 차량 등 - (안전제품관) 교통 안전 시설물, 화재감시 시스템, 방독면, 위험물 보관함, 안전시약장 등 ▪ 참가비: 부스별, 신청일자별 상이(10% VAT 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조기신청(20%할인)</th> <th>일반신청</th> <th>규격</th> </tr> </thead> <tbody> <tr> <td>조립부스</td> <td>1,600,000원/부스</td> <td>2,000,000원/부스</td> <td>3m x 3m x 2.5m(H)</td> </tr> <tr> <td>독립부스</td> <td>1,250,000원/부스</td> <td>1,600,000원/부스</td> <td>3m x 3m x 5m(최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원사는 별도 참가비를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회 문의 요망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70-4887-2621) ※ 경기도 소재기업(본사기준)은 별도 참가비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 요망 (엑스포 사무국: 031-995-8283) 			구분	조기신청(20%할인)	일반신청	규격	조립부스	1,600,000원/부스	2,000,000원/부스	3m x 3m x 2.5m(H)	독립부스	1,250,000원/부스	1,600,000원/부스	3m x 3m x 5m(최대)
구분	조기신청(20%할인)	일반신청	규격												
조립부스	1,600,000원/부스	2,000,000원/부스	3m x 3m x 2.5m(H)												
독립부스	1,250,000원/부스	1,600,000원/부스	3m x 3m x 5m(최대)												
신청기간	▪ 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한 엑스포 참가 신청(참가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참가비 100% 입금) - 수출상담회 관련 정보 등록 및 바이어 선택(첨부된 매뉴얼 참고 요망)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류 1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준비사무국(KINTEX 전시3팀): 031-995-8283, koppex@koppex.com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월드엑스포탈): 02-830-2106, mice@worldexportal.com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4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사업명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주관부처	▪ 조달청
운영기관	▪ 조달청
사업개요	▪ 글로벌 바이어(해외 발주처·조달벤더·전문무역상사 등)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중견 조달기업과의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사례 설명회, 관세 및 국제 분쟁 관련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신청자격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한 대상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자금과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에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 상담회)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발주기관·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주선 및 통역 서비스 제공 ※ 1:1 상담은 바이어 수요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요가 없을 경우 주선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해외 발주처 조달 정책 및 방향, 유망 품목 및 진출 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 (전문가 컨설팅) 해외조달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세 관련 애로 혹은 분쟁 관련 전문가와 1:1 전문 컨설팅 제공
신청기간	▪ 9월
신청방법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GPPM20XX.com’*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참가 신청 * 예) 2024년 사업의 경우 ‘GPPM2024.com’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수출 상담회, 설명회, 컨설팅 각 분야별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류	▪ ‘GPPM20XX.com’ 웹사이트 내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042-724-6442, 7589 ✉ hbmyung@korea.kr, ksnv14@korea.kr
참고사항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42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사업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주관부처	▪ 조달청
운영기관	▪ 조달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 국내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1:1 사전 실무 컨설팅 및 수출상담회 개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1, 2번을 모두 충족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 조달기업(증빙자료 첨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수행 경험이 있는 기업(증빙자료* 첨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예시) 사업협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의 최종평가확인서 등 ▪ 신청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3년 혁신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에 참가했던 기업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참고-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품목 적합도, 진출계획, 가점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총점 60점 미만 획득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신청수가 저조한 경우 심사를 생략하거나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격여부(신청제한 대상) 확인 후 선정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기업 현황·해외 진출 수요·기술 파악 등을 위한 1:1 실무 컨설팅을 통해, 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용 기술 및 제품 소개 자료 제작 지원 - (수출상담회)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후, 현지 상담회 개최를 통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비, 현지 체류비 등 소요비용은 기업부담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품목 적합도, 조달시장 진출계획 등을 포함한 심사서(공고 내 붙임 참조요망) 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총점 60점 미만 획득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신청업체가 선정업체 수 이하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제한대상 확인 후 선정
신청기간	▪ 2월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접속 → ‘공지사항’ → 게시글 확인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global@tipa.or.kr 로 송부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및 증빙자료 ▪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글로벌RnD협력실 ☎ 044-300-0445 / ✉ global@tipa.or.kr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43 수출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은 지원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선적전★	·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
선적후★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대상거래)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무역 수출거래(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매입★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대상거래)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재판매거래 제외)	· 수출자가 특정한 수입자와의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포괄매입★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대상거래)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 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 수출거래(단, 대출 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부여

43-1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사업명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 ※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K-SURE가 보상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K-SURE가 보상 상품구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한도 우대</td> <td>·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td> </tr> <tr> <td>보험·보증료 할인</td> <td>·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td> </tr> <tr> <td>수입자 신용조사</td> <td>·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td> </tr> <tr> <td>수출 초보기업 우대</td> <td>·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td> </tr> <tr> <td>컨설팅 제공</td> <td>·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절차	내용
① 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② 보증신청 (수출자 및 금융기관 → K-SURE)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청약서 제출방법> - 전자보증 가능은행(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③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의 신용도, 수출실적, 무역금융 이용현황, 현금흐름, 대표자 면담 및 사업장 실사 결과 등을 심사하여 보증한도 책정
④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 필수
⑤ 보증료 납부 (수출자 → K-SURE)	· 수출자가 K-SURE에 보증료(신용보증한도 × 보증요율) 납부 ※ 보증료는 연 0.5%~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보증료 납부 확인 후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 발급
⑦ 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출자)	·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 대출 실행 후 전자문서(전자보증 은행) 또는 사이버영업점(비전자보증 은행)을 통해 K-SURE 앞으로 대출금리 통보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비상장기업용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용	· 수출실적확인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주주현황표(비상장기업용)
추가서류		· 단기지급능력검토표

- ② 보증기간 연장시(조건변경 또는 재약정)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필수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절차 및 서류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절차 및 서류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추가서류	※ 영업담당자가 개별 요청시 제출
기타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조건변경 신청서 · 보증서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서	

· 수출신용보증부 대출금 상환내역통지서

③ 기타서류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 수출진흥금융시 추가서류 · 수출준비자금시 추가서류(수출계획서) · 제출서류 및 내용확인서(환변동보험 환수금회수 특례보증의 경우) · 산업기술 R&D 과제이행 성공기업 확인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수출성장금융 수출이행계획서

2)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 상사현황표(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기업용) ·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기업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비상장기업용) · 수출실적확인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아래) · 풀링(Pooling) 대상 신청 목록
법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수출실적확인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아래)
법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영업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3-2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사업명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대상거래)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계약자</td> <td>· 금융기관</td> </tr> <tr> <td>보증하는 채무</td> <td>·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td> </tr> <tr> <td>담보위험</td> <td>·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td> </tr> <tr> <td>보증비율</td> <td>· 90% 이내</td> </tr> <tr> <td>보증약정</td> <td>·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 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td> </tr> <tr> <td>보증서 유효기간</td> <td>·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td> </tr> <tr> <td>기타</td> <td>·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필수</td> </tr> </tbody> </table> <p>※ 연대보증인 입보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한도 우대</td> <td>·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td> </tr> <tr> <td>보험·보증료 할인</td> <td>·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td> </tr> <tr> <td>수입자 신용조사</td> <td>·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td> </tr> <tr> <td>수출 초보기업 우대</td> <td>·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td> </tr> <tr> <td>컨설팅 제공</td> <td>·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td> </tr> </tbody> </table> <p>※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p>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 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기타	·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필수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 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기타	·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필수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이용절차		
	절차	내용	
	① 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②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사이버영업점) · (수출자)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사이버영업점 → 국내기업신용조사)	
	③ 보증신청 (수출자 및 금융기관 → K-SURE)	·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영업부서) ※ <청약서 제출방법> - 전자보증 가능은행(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④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및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⑤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자필 서명 필요)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가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거래현황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개인기업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②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 수출통지 내용변경 승인신청서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③ 기타서류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 약관 내용 확인서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신청서 · 수출실적확인서(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설명서 ·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 · 신용보증한도 해지 요청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영업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3-3 수출신용보증: 매입*

사업명	수출신용보증: 매입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¹⁾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대상거래)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재판매거래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자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선택 가능 ※ 수출신용보증(매입)에서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 있음 상품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계약자</td> <td>· 금융기관</td> </tr> <tr> <td>보증하는 채무</td> <td>·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td> </tr> <tr> <td>보증비율</td> <td>· 90% 이내</td> </tr> <tr> <td>보증약정</td> <td>·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td> </tr> <tr> <td>보증서 유효기간</td> <td>·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td> </tr> <tr> <td>담보위험</td> <td>·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td> </tr> <tr> <td>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td> <td>· 선택</td> </tr> <tr> <td>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td> <td>·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td> </tr> <tr> <td>보증관계 성립범위</td> <td>·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td> </tr> <tr> <td>보증료</td> <td>· 연 1회 선납(연 0.5%~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	· 연 1회 선납(연 0.5%~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	· 연 1회 선납(연 0.5%~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한도 우대</td> <td>·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td> </tr> <tr> <td>보험·보증료 할인</td> <td>·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td> </tr> <tr> <td>수입자 신용조사</td> <td>·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절차	내용
① 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②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사이버영업점) · (수출자)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사이버영업점 → 국내기업신용조사)
③ 보증신청 (수출자 → K-SURE)	·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영업부서)
④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및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⑤ 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수출자는 보증기간(1년) 보증료 선납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 필수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가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⑦ 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자)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매입 ※ 별도의 수출 및 대출통지 없이 매입 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개인기업	· 상사현황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② 신용보증 기간 연장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개인기업	· 상사현황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 보증상대방 변경 협약서

④ 기타서류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정서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신청서 · 수출실적확인서(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신용보증한도 해지 요청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영업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3-4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사업명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선택 가능 ※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 있음 ▪ (대상거래)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선택 가능 ▪ 상품구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계약자</td> <td>· 금융기관</td> </tr> <tr> <td>보증하는 채무</td> <td>·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td> </tr> <tr> <td>보증비율</td> <td>· 90% 이내</td> </tr> <tr> <td>보증약정</td> <td>·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td> </tr> <tr> <td>보증서 유효기간</td> <td>·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td> </tr> <tr> <td>담보위험</td> <td>·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td> </tr> <tr> <td>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td> <td>· 선택</td> </tr> <tr> <td>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td> <td>·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td> </tr> <tr> <td>보증관계 성립범위</td> <td>·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td> </tr> <tr> <td>보증료</td> <td>· 연 1회 선납(연 0.25%~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한도 우대</td> <td>·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	· 연 1회 선납(연 0.25%~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	· 90% 이내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	· 연 1회 선납(연 0.25%~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절차	내용
① 보증이용 상담	· K-SURE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
②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자 → K-SURE)	· K-SURE의 평가등급이 없거나 최근 결산자료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의뢰(사이버영업점 → 국내기업신용조사)
③ 보증신청 (수출자 → K-SURE)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준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 〈청약서 제출방법〉 - 전자보증 가능은행(신한, 하나, 국민, 우리):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④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자)	· K-SURE는 보증신청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무역금융 이용현황, 현금흐름, 대 표자 면담 및 사업장 실사 결과 등을 심사하여 보증한도 책정
⑤ 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 (수출자 ↔ K-SURE)	· 수출자는 보증기간(1년) 보증료 선납 · K-SURE와 수출자(연대보증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 필수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가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⑦ 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자)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매입 ※ 별도의 통지 없이 매입 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청약서 ·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 채무자 주주명부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 내 발급분)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②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 보증상대방 변경 협약서

③ 기타서류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정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설명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부대출 실적증명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잔액 관련 확약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대출금 상환내역 통지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청약서류 미변동 확인사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영업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4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은 지원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선적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대상기업-수입자)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 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다이렉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 중소·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Plus+·중소Plus) 다이렉트 플러스 특약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 불가 (대상거래)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URE가 정한 이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 건별로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비대면 소액 간편 보험제도)
중소중견 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수출실적 50백만 달러 이하,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 중소·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대상거래-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대상거래-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30백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대상거래-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대상거래-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부여

44-1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사업명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대상기업-수입자)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구조 <pre> graph LR K[K-SURE] E[수출자] I[수입자] E -- "① 수출계약체결" --> I E -- "② 보험한도 요청" --> K K -- "③ 보험한도 책정" --> E E -- "④ 물품수출" --> I K -- "⑤ 수출통지" --> I I -- "⑥ 수입자 대금 미지급시 보험금 지급" --> K style E fill:#f96 style I fill:#333,color:#fff style K fill:#f96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 수출자
보험가액	· 수출대금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95% 이내 · 재판매: 95% ※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 손실) × 부보율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운영방식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주요내용	·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 (결제기간 2년 이내 거래)	·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 전체를 가입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책정한도	인수한도	보상한도
장점	· 수출거래별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 고위험 거래 보험가입 용이 · 개별보험 대비 낮은 보험요율 · 편리한 수출통지 절차(월간 또는 연간 통지)
단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요율	· 저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 보상절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이용절차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개별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서(일반/위탁가공) · 청약서(중계무역) · 청약서(재판매)

2)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준)포괄

구분	주요내용
(준)포괄특약 가입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보험특약 가입신청서 · 준포괄보험특약 청약서
포괄보험 한도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 신청서(일반/위탁가공) · 보상한도 신청서(중계무역) · 보상한도 신청서(재판매)
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 표준양식(코드포함) · EDI 표준양식(작성샘플) · 협약서 · KT-NET XML EDI 양식 <p>※ LC은행 전체코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이버영업점 → 간편조회서비스 → 국외은행조회)</p>

신청서류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공통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지서(개별) · 수출통지서(포괄) · 수출통지서(준포괄) · 결제통지서 · 수출통지 내용변경 승인신청서 · 결제조건 변경신청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보험금 청구권 양도 신청서 · 상사현황표

4) 신용조사 관련 신청서류: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참고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단기보험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 클릭

44-2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사업명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소액 간편 보험제도로, K-SURE가 정한 이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 건별로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신용등급 미보유시 KED 등급 CCC+ 이상 ※ 특례 G급(최근 3년 연속 적자 등)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 가능 ※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Plus+ 또는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불가(단, 수입자 지정형의 경우 동일한 수출입자에 대하여 유효한 단기수출보험 개별보험 인수한도가 존재하는 경우 책정 제한) (대상거래) 관세청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거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심사, 수출통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이용시에는 별도의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심사절차 및 수출통지가 생략되어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이용이 가능함(단, 수입자 지정형의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품은 사이버영업점 전용 비대면 상품(단, 보험료 지원은 기업 소재 지역 담당 영업부서에 문의) - 청약기간(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수출 전·후 보험가입이 가능함 - 수입자 지정 여부에 따라 '일반형(수입자 미지정)'과 '수입자 지정형'으로 구분 상품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담보위험</td> <td colspan="3">·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td> </tr> <tr> <td>청약기간</td> <td colspan="3">· 수출신고 수리일 익일 ~ 10일 이내 ※ 수출신고 수리일이 2020.10.09.인 경우, 2020.10.10.~2020.10.19. 이내 청약 신청 가능</td> </tr> <tr> <td rowspan="4">인수한도 및 보험료율</td> <td>구분</td> <td>일반형 (수입자 미지정)</td> <td colspan="2">수입자 지정형</td> </tr> <tr> <td rowspan="3">인수한도</td> <td>수출자별 10만 달러</td> <td colspan="2">수출자별 30만 달러</td> </tr> <tr> <td>수출건별 5만 달러</td> <td>수입자별 20만 달러</td> <td>수입자별 10만 달러</td> </tr> <tr> <td>수출자별 한도 복원 가능</td> <td colspan="2">동일 수입자별 한도 복원 불가</td> </tr> <tr> <td>보험료율</td> <td>0.3%</td> <td>0.2%</td> <td>0.25%</td> </tr> <tr> <td>보상비율</td> <td colspan="3">· 95%</td> </tr> <tr> <td>보험료</td> <td colspan="3">· 인수한도 × 보험료율(원화납부)</td> </tr> <tr> <td>수입자 제한사항</td> <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등급) 자본잠식 G급 또는 R급(정보 부족 기업 제외) (클레임) 클레임 등 사유로 분쟁·소송중 (만기 도래 미결제) 만기 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 지연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담보위험	·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청약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 익일 ~ 10일 이내 ※ 수출신고 수리일이 2020.10.09.인 경우, 2020.10.10.~2020.10.19. 이내 청약 신청 가능			인수한도 및 보험료율	구분	일반형 (수입자 미지정)	수입자 지정형		인수한도	수출자별 10만 달러	수출자별 30만 달러		수출건별 5만 달러	수입자별 20만 달러	수입자별 10만 달러	수출자별 한도 복원 가능	동일 수입자별 한도 복원 불가		보험료율	0.3%	0.2%	0.25%	보상비율	· 95%			보험료	· 인수한도 × 보험료율(원화납부)			수입자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등급) 자본잠식 G급 또는 R급(정보 부족 기업 제외) (클레임) 클레임 등 사유로 분쟁·소송중 (만기 도래 미결제) 만기 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 지연 		
구분	내용																																												
담보위험	·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청약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 익일 ~ 10일 이내 ※ 수출신고 수리일이 2020.10.09.인 경우, 2020.10.10.~2020.10.19. 이내 청약 신청 가능																																												
인수한도 및 보험료율	구분	일반형 (수입자 미지정)	수입자 지정형																																										
	인수한도	수출자별 10만 달러	수출자별 30만 달러																																										
		수출건별 5만 달러	수입자별 20만 달러	수입자별 10만 달러																																									
		수출자별 한도 복원 가능	동일 수입자별 한도 복원 불가																																										
보험료율	0.3%	0.2%	0.25%																																										
보상비율	· 95%																																												
보험료	· 인수한도 × 보험료율(원화납부)																																												
수입자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등급) 자본잠식 G급 또는 R급(정보 부족 기업 제외) (클레임) 클레임 등 사유로 분쟁·소송중 (만기 도래 미결제) 만기 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 지연 																																												

- (국별인수방침) 고위험 인수제한국가(10개국)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 (중국 무신용장 수입대행거래) 수입대행 계약체결 중국 수입자

▪ 보상절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을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류

- 위 '신청방법' 참고
-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핀테크사업부)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4-3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사업명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수출실적 50백만 달러 이하,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G급(최근 3년 연속 적자 등)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 가능 ※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대상거래-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대상거래-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 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 보험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함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상품구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담보위험</td> <td>·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 (특약) 무역 클레임 위험</td> <td>·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td> </tr> <tr> <td>대상거래</td> <td>결제기간 1년 이내</td> <td>결제기간 180일 이내</td> </tr> <tr> <td rowspan="2">보험계약 대상 수입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청약시 사전등록(최대 50개)</td> </tr> <tr> <td>수입자</td> <td colspan="2">·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 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 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제외</td> </tr> <tr> <td>신용장 개설은행</td> <td colspan="2">·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td> </tr> <tr> <td>위험별 책임금액</td> <td>· (기본위험) 최대 1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최대 5만 달러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td> <td>· (기본위험) 최대 3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td> </tr> <tr> <td>보상비율</td> <td>100%</td> <td>95% 이내</td> </tr> <tr> <td>보험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할증률)</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지) 없음 (보험계약기간) 1년 단위 체결·갱신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 등록된 수입자 및 신용장 은행은 공사의 내용 변경 승인일 이후 선적 건부터 보험 효력 발생)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선납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절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담보위험	·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 (특약) 무역 클레임 위험	·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시 사전등록(최대 50개)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 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 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제외		신용장 개설은행	·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		위험별 책임금액	· (기본위험) 최대 1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최대 5만 달러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	· (기본위험) 최대 3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	보상비율	100%	95% 이내	보험료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할증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지) 없음 (보험계약기간) 1년 단위 체결·갱신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 등록된 수입자 및 신용장 은행은 공사의 내용 변경 승인일 이후 선적 건부터 보험 효력 발생)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선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담보위험	·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 (특약) 무역 클레임 위험	· (기본) 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시 사전등록(최대 50개)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 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 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제외																													
신용장 개설은행	·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																														
위험별 책임금액	· (기본위험) 최대 1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최대 5만 달러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	· (기본위험) 최대 3백만 달러 · ※ 개별 수입자별 최대 3십만 달러 · ※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3십만 달러 · (클레임 위험)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1만 달러																													
보상비율	100%	95% 이내																													
보험료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할증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지) 없음 (보험계약기간) 1년 단위 체결·갱신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 등록된 수입자 및 신용장 은행은 공사의 내용 변경 승인일 이후 선적 건부터 보험 효력 발생)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선납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원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구분	주요내용
안내문	· 청약서 작성방법 안내
신청서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청약서
기타서류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청구권 양수도 승인 신청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참고사항

- (영업총괄실) ☎ 1588-3884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4-4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사업명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 <p>※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보험료 지원사업이 존재하며, 반드시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개별 공고를 확인 후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 요망</p> <p>-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확인: 클릭</p>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30백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 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대상거래-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대상거래-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단체 보험) 이용시에는 별도의 신용조사, 한도책정 등이 생략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이용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가입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 보험료는 지자체, 협회 및 단체, 금융기관 등이 대신 납부 상품구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re> graph TD A[단체 보험계약자] -- ① 보험가입 모집 --> B[수출자 피보험자] A -- ② 보험 청약 --> C[K-SURE 보험자] B -- ④ 보험료 납부 --> C C -- ③ 보험 승낙 --> A B -- ⑤ 사고 통지 --> C C -- ⑥ 보험금 지급 --> B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약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보상비율</td> <td>95% 이내</td> <td>90% 이내</td> </tr> <tr> <td>책임금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간 5만 달러 이내</td> </tr> <tr> <td>제한사항</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의 경우 보상 제외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 발생 수입자 혹은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td> </tr> <tr> <td>보험기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년(보험증권에 명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절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상비율	95% 이내	90% 이내	책임금액	연간 5만 달러 이내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의 경우 보상 제외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 발생 수입자 혹은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상비율	95% 이내	90% 이내															
책임금액	연간 5만 달러 이내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의 경우 보상 제외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 발생 수입자 혹은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 (보상되지 않는 손실)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참고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이용절차 - ① 신청서류 제출 → ② 단체(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 ③ 보험증권 발급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는 지원 기관 또는 단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확인 요망(개별 공고 확인 요망)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영업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5 수출보증보험*

사업명	수출보증보험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신청자격	▪ (대상기업) 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기업 ▪ (대상거래) ①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②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외), ③기타 서비스·용역 수출

▪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

* 수출보증서의 종류: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수출자의 수출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상품구조

지원내용



▪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담보위험	정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사유가 수출기업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경우
	부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 보증채무이행청구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수출기업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계약 자체에서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수출기업이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보험가액		· 수출보증서상에 표시된 보증금액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모율 ※ 부모율: 100% 이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부모율 K-SURE가 정함
보험료		· 보험금액에 수출기업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신청서류(아래 '신청서류' 참고) 작성하여 기업별 담당자에 우편제출 혹은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구분	내용	
신청서류	· 수출보증보험 청약서	
	· 수출보증보험 선수금 입금통지서	
	· 수출보증보험 내용변경 요청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개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분양사업 및 PF지급보증 현황	
	· 수출실적확인서	
	· 주주현황표	
	· 보험료 환급 청구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46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사업명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주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 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신청자격	-																									
지원내용	<p>▪ 서비스 개요</p> <pre> graph TD A[국내기업] -- "① 조사신청" --> B[K-SURE] B -- "② 조사의뢰" --> C[조사기관] C -- "③ 조사실시" --> D[국외기업] D -- "④ 자료제공" --> C C -- "⑤ 조사보고서 접수" --> B B -- "⑥ 등급평가 및 조사보고서 제공" --> A A -- "⑦ 조사 수수료 납부" --> B </pre>																									
	<p>▪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고서 종류</th> <th>정보 제공내역</th> <th>목적</th> </tr> </thead> <tbody> <tr> <td>요약보고서</td> <td>·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td> <td>·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td> </tr> <tr> <td>Full Report</td> <td>· K-SURE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 보고서 원본(영문)</td> <td>· 상세 정보 수집</td> </tr> </tbody> </table> <p>※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역은 현지 신용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Full Report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평가항목) 재무적 요소(회사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비재무적 요소(종업원수, 조사기관등급 등)</p> <p>▪ (참고-신용등급책정 방식) 국외기업의 자산과 업종에 따라 유형(중기업 중공업, 중소기업 비제조업 등)을 구분한 후, 국외기업 유형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평가</p> <p>▪ (참고-주요 평가 항목) 재무적 요소(회사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비재무적 요소(종업원수, 조사기관등급 등)</p> <p>▪ 신용조사 보고서 신청 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청방법</th> <th>내용</th> <th>상세설명</th> <th>소요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기존 자료구매</td> <td>기존 보고서 구매</td> <td>· 6개월 이내 조사된 기존 보고서가 있는 경우</td> <td>당일</td> </tr> <tr> <td>신규신청</td> <td>신규 조사 진행</td> <td>· 상기 이외의 경우 또는 신규 조사 희망 시</td> <td>통상 2~3주</td> </tr> </tbody> </table> <p>▪ 신용조사 보고서 조회 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회 가능 시기</th> <th>조회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공사의 신용조사 완료 시</td> <td>· 신청자 이메일로 요약보고서가 발송되며,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조회 가능</td> </tr> </tbody> </table> <p>▪ 신용조사 수수료</p>		보고서 종류	정보 제공내역	목적	요약보고서	·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 K-SURE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 보고서 원본(영문)	· 상세 정보 수집	신청방법	내용	상세설명	소요기간	기존 자료구매	기존 보고서 구매	· 6개월 이내 조사된 기존 보고서가 있는 경우	당일	신규신청	신규 조사 진행	· 상기 이외의 경우 또는 신규 조사 희망 시	통상 2~3주	조회 가능 시기	조회방법	공사의 신용조사 완료 시
보고서 종류	정보 제공내역	목적																								
요약보고서	·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 K-SURE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 보고서 원본(영문)	· 상세 정보 수집																								
신청방법	내용	상세설명	소요기간																							
기존 자료구매	기존 보고서 구매	· 6개월 이내 조사된 기존 보고서가 있는 경우	당일																							
신규신청	신규 조사 진행	· 상기 이외의 경우 또는 신규 조사 희망 시	통상 2~3주																							
조회 가능 시기	조회방법																									
공사의 신용조사 완료 시	· 신청자 이메일로 요약보고서가 발송되며,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조회 가능																									

기업규모	보고서 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정보부족기업 또는 장기소요(40일 초과)
중소·중견기업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요약보고서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99,000원	33,000원	면제

▪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방법	납부
가상계좌 입금	·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 계산서 발생 - 조사 완료일 익월 첫 영업일 - 마스터 대표 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 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일괄 납부 (조사 완료일 익월 27일까지)
신용카드	· 조사완료시 건별 납부 안내	건별 납부 (조사 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이용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www.ksur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사이버 영업점 회원가입 → ② 신용조사 신청 → ③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④ 보고서 조회 → ⑤ 수수료 납부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아래 '기타 참고사항' 참고)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구분	주요내용	
신청서류	서비스 신청서류	· 국외기업 신용조사 의뢰(사이버영업점 로그인 후 신청) · 수출자 제출자료 확인서
	기타	· 신용조사 수수료 환급신청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조사부)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47 TRADE-SURE 컨설팅★

사업명	TRADE-SURE 컨설팅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이행에 따른 대외위험을 사전에 제거·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중소기업의 경우 신청 자격 기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연간 수출실적 천만불 미만의 수출(예정) 중소기업 ※ 컨설팅 지원횟수는 기업당 총 6회(동일 컨설턴트 배정은 최대 2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 금융, 수출입, 법무, 회계(세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서비스이나, 컨설팅 지원 횟수는 기업당 총 6회(동일 컨설턴트 배정은 최대 2회)로 제한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분 야</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금융 (무역보험)</td> <td>수출금융 조달</td> <td>· 정책자금 및 금융·보증기관 안내 ·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등 활용방안</td> </tr> <tr> <td>무역보험 활용방안</td> <td>· 수입자 신용조사, 보상 및 해외 채권 추심 절차 안내 · 대금 미회수위험 관리 및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보험(보증)제도 안내</td> </tr> <tr> <td>환위험 관리</td> <td>· 환율 동향 및 전망 · 환위험 헷지 방안</td> </tr> <tr> <td colspan="2">수출입</td> <td>· 해외마케팅 및 수출판로 개척, 원산지 증명, 수출계약, FTA 활용 등</td> </tr> <tr> <td colspan="2">법무</td> <td>·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등</td> </tr> <tr> <td colspan="2">회계(세무)</td> <td>·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검토 등</td> </tr> </tbody> </table>		분 야		주요 내용	금융 (무역보험)	수출금융 조달	· 정책자금 및 금융·보증기관 안내 ·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등 활용방안	무역보험 활용방안	· 수입자 신용조사, 보상 및 해외 채권 추심 절차 안내 · 대금 미회수위험 관리 및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보험(보증)제도 안내	환위험 관리	· 환율 동향 및 전망 · 환위험 헷지 방안	수출입		· 해외마케팅 및 수출판로 개척, 원산지 증명, 수출계약, FTA 활용 등	법무		·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등	회계(세무)		·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검토 등
	분 야		주요 내용																		
	금융 (무역보험)	수출금융 조달	· 정책자금 및 금융·보증기관 안내 ·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등 활용방안																		
		무역보험 활용방안	· 수입자 신용조사, 보상 및 해외 채권 추심 절차 안내 · 대금 미회수위험 관리 및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보험(보증)제도 안내																		
		환위험 관리	· 환율 동향 및 전망 · 환위험 헷지 방안																		
	수출입		· 해외마케팅 및 수출판로 개척, 원산지 증명, 수출계약, FTA 활용 등																		
	법무		·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등																		
	회계(세무)		·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중소기업 우대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증한도 우대</td> <td>·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td> </tr> <tr> <td>보험·보증료 할인</td> <td>·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td> </tr> <tr> <td>수입자 신용조사</td> <td>·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td> </tr> <tr> <td>수출 초보기업 우대</td> <td>·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td> </tr> <tr> <td>컨설팅 제공</td> <td>·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구분	내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시, 필히 혁신중소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상시 ▪ 이용절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컨설팅센터 웹사이트(tradesure.ksur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중소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문의처	▪ (고객가치부) ☎ 1588-3884																				
참고사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 조사·입찰지원	
사업명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 조사·입찰지원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
운영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인프라금융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 고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기업: 신청서접수일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 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의미함. 단,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고객 기업도 가능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의 연도별 「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수출형 혁신성장 산업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업으로, 서비스산업(보건의료·제약 등), 에너지산업(신재생에너지 등), ICT융합 산업(로봇, 스마트기기 등) 등 30개 품목으로 구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조사 및 입찰 관련 외부용역비용 일부(단순 자료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조사지원) 신규 수출거래 발굴, 해외투자, 해외사업 수주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의 일부지원 - (2. 입찰지원) 국제 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포함)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입찰타당성 검토 등 사전 조사 활동에 드는 용역비용의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사는 신청기업이 직접 선정하며, 용역계약은 신청접수일 기준 완료되지 않은 계약 또는 체결 예정인 계약으로 함 지원금액: 3억원 범위 내(중소기업은 용역금액의 70%, 중견기업은 용역금액의 50% 까지 지원) 업무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류접수 2)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내·외부전문가(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로 구성 후 사업별 평가시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기준: (공통) 용역계획, 사업타당성, 신청기업의 사업경험 및 역량 등 / (입찰지원)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컨소시엄을 평가 3) 사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평점 및 연간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예산규모, 사업운영방향, 산업별 포트폴리오, 특정 신청 기업 및 특정 산업군 편중 등 4) 용역비용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방법: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지급방식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용역수행사 앞 직접 지급(단, 신청기업이 사업선정 이전에 용역수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앞 지급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용역비용지급 신청서, 용역수행사 청구내역서 등 5) 용역보고서 제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행 완료 후, 해당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를 수출입은행 앞 제출 - 용역보고서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목적부합성, 내용의 적정성) - 필요시, 신청기업 앞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가능 - 평가 결과(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 정보 포함) 및 평가이력은 향후 수출입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업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ail(fs@koreaexim.go.kr)로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시, 제목에 [신청구분], 사업명, 기업명 기재 예) [조사지원 신청] A국 가나다 신규 투자를 위한 컨설팅(A주식회사) [입찰지원 신청] A국 가나다 건설공사(A주식회사) ※ 서류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판단시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 - 심사를 위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 신청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규정상 여신부적격자(연체 등) 및 여신억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대출 중 해외시장개척자금대출과 중복 수혜여부 확인

2) 해외건설협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업에 대한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조사지원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	
공통	1. 신청서
	2.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현황표
	3. 사업제안서
	4.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5. 최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6. 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7.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잠정용역가격내역서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사업선정위원회 기업발표(PT) 자료 ※ 참고: 신청서류는 이메일 접수하되, 일체 서류(재무제표 제외)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사업선정담당부서 앞 1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추가서류 ^{주)}	1. 사업자등록증
	2. 회사소개자료

주)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중 신청서접수일 기준 당행 여신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출

신청서류

▪ 입찰지원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	
공통	1. 신청서
	2.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현황표
	3. 사업제안서
	4.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5. 최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6. 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7.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잠정용역가격내역서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사업선정위원회 기업발표(PT) 자료 ※ 참고: 신청서류는 이메일 접수하되, 일체 서류(재무제표 제외)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사업선정담당부서 앞 1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추가서류 ^{주)}	1. 사업자등록증
	2. 회사소개자료

주)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중 신청서접수일 기준 당행 여신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출

문의처

▪ 해외사업개발팀: 02-6255-5244, 5245

참고사항

▪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수출금융보증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수입/해외사업 등 지원 대상 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조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기업(주채무자)</td> <td>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td> </tr> <tr> <td>보증수혜자</td> <td>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td> </tr> <tr> <td>보증금액</td> <td>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td> </tr> <tr> <td>보증기간</td> <td>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기업(주채무자)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수혜자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구분	내용										
	대상기업(주채무자)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수혜자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절차 											
	<p>[사례]</p> <p>- A 기업은 화학제품운반선 수출을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U\$1억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양호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대출기간 및 불확실한 조선산업 경기 동향 등을 이유로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p> <p>☞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보증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상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문의처'의 연락처를 통해 보증상담 신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선박의 경우 선박 자금수급계획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기업별로 신청 시, 요구되는 관련 서식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수은 알림 공간] → [서식/약관] 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금융1부(02-6255-5415) 혁신성장금융2부(02-6255-5161) 혁신성장금융3부(02-6255-5425) 혁신성장금융4부(02-6255-5267) 인프라금융부(02-6255-5221) 전력에너지금융부(02-6255-5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랜트금융부(02-3779-6417) 자원금융부(02-3779-6432) 투자금융부(02-6255-5107) 해양프로젝트금융부(051-922-8838) 해양금융단(051-922-8884)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 해당 페이지 내 '담당부서 안내' 클릭 시, 지역별 담당자 확인 가능 											

사업명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개발협력 분야(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사항) 창업 후 업력 최대 10년 이내인 기업만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CTS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 포함)도 참여 가능하나, CTS 파트너로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등록을 마쳐야 함 (스타트업) 창업 후 업력 최대 10년 이내 조건(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기준)은 CTS 신규 참여 시에만 해당, Seed 1 완료 이후 Seed 2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만큼의 기간이 가산됨을 감안하여 업력제한 폐지 (사회적기업) 사회문제를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을 의미하며, 상법상 주식회사면서 정관에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함이 확인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Seed 2) Seed 1 완료 기업은 Seed 1에서 개발한 혁신제품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회계기준 매출, 개도국수혜증빙 필요) 달성*한 이후 공모를 통해 Seed 2 지원이 가능, 그 외 Seed 1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Seed 2 공모 참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법인(NGO, 기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혁신제품이 보급되어도 인정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ed 0(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 개발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혁신벤처의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검증 지원, 개발도상국 현지 자원 연계, 시장탐색 기회 제공, 현지 사업 파트너십 확보 등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 강화 (공통) 개발협력사업 기획/관리 역량강화 교육, 1:1 팀별 담임 멘토링, 분야 전문가 멘토링, 개발도상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교육(온라인) (우수팀 대상) 파일럿 현지시장 리서치 프로젝트 비용*, 개발도상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온라인 멘토링 및 자원 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IR 등) 진행, CTS 선배 기업과 네트워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출장비용으로 전환 검토 가능 ※ 최종 평가 우수팀은 Seed 1 프로그램 참여 시 서면심사 가산점(2점) 제공 Seed 1(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기술) Proof of Concept 및 개도국(1개국에서 사업진행 가능) 내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검증 결과 도출 (제품) 시제품 제작, 실용화 및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문제 해결가능성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및 실험 1개 사업당 최대 3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사업비 지급은 마일스톤 달성 및 코이카의 정산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인건비 및 직접경비(타겟 BOP시장 현지 출장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포함) ※ 제품 제작단가 및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소비자 가격 지원 불가) Seed 2(시범사업, 비즈니스 준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환경에서 성능검증이 이루어진 혁신제품의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을 통한 개도국 내 보급 및 일부 판매 후 현지 지사 설립(창업)을 통해 동일 지역 내에서 시범 판매를 통해 성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구매자의 국적 관련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대상지역 국가 주민이 제품 구매로 인한 직접적인 수해를 입어야 함 1개 사업당 최대 5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사업비 지급은 마일스톤 달성 및 코이카의 정산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인건비 및 직접경비(타겟 BOP 시장 현지 조사 출장비, 기술 개량, 마켓 테스트 비용, 현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현지 활동비용, 보급 및 시범판매를 위한 제품비용 등 포함) ※ 단, 제품비용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아닌 제작단가 지원(제작단가 및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비용 포함)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모시, 공모설명회도 함께 개최되며 따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ed 0: Seed 1, 2와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웹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서 양식을 활용해 지원서 작성(기업 기본 정보,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 후, 공고 웹페이지 내 접수 페이지를 통해 양식 기입 및 작성된 지원서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Seed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웹페이지에 첨부된 제안서 양식*을 활용해 제안서 작성 후 KOPI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 0: 없음 (위의 '신청방법'의 Seed 0 참고) ▪ Seed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 1/Seed 2 제안서 1부 - Seed 1/Seed 2 국문 사업개요서 1부 - Supporting Information 1부 - 실적 증빙자료 1부 - CTS 공모 서약서 1부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 CTS 공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제안서에 명시된 핵심인력 모두 해당) <p>※ 위의 각종 첨부파일에 대한 양식의 경우 제안서 양식*내에 포함되어 있음, 각종 증빙은 해당 양식 내에 기재 요망</p>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CTS 지원센터: 02-6916-9661~3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주관부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영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사업개요	▪ 글로벌 ODA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역량 강화, ODA 시장 진출 컨설팅 등의 집중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항) 해외 ODA 조달시장 관련 교육, 입찰 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및 컨설팅 진행 - 글로벌 ODA 조달시장 교육 - 글로벌 ODA 국제 조달시장 입찰 정보 제공 - 글로벌 ODA 조달시장 상위 공급사(벤더) 발굴/매칭 - 중점지원기업 컨설팅 진행 (1:1 대면상담, EOI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지원) - 글로벌 ODA 기관 별 입찰 참여 지침서 제공 및 활용방안 안내 - 국제기구 및 MDB 기관 방문 기회 제공 (출장 기업 선정 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DABIZ 이메일(admin@kodabiz.com)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참고-선정절차) 서류심사 → 온라인 인터뷰 → 최종선정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참가비 적용(3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류) ①~② 필수, ③~⑨ 기타(미제출시 불인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60%;">항목</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필수</td> <td>① 중점지원기업 참가신청서 및 기초자료</td> <td></td> </tr> <tr> <td>② 정보제공 동의서</td> <td></td> </tr> <tr> <td rowspan="7">기타</td> <td>③ 최근 3개년 수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td> <td>· 무역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td> </tr> <tr> <td>④ 최근 3개년 해외 ODA 사업 프로젝트 수주 증빙</td> <td>·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td> </tr> <tr> <td>⑤ 해외 네트워크 보유 증빙</td> <td>· 현지 사업자등록증명 등</td> </tr> <tr> <td>⑥ 국내·외 인증 증명서 및 국제산업재산권</td> <td>· (국내인증) 우수제품, NEP, NET 등 · (해외인증) CE, UL, FDA 등 인증서 · (국제산업재산권) 국제 특허 증빙</td> </tr> <tr> <td>⑦ 외국어 홍보물 증빙자료</td> <td>· 카탈로그, 웹사이트, 동영상 등</td> </tr> <tr> <td>⑧ 경영 재무상태 관련 증빙자료</td> <td>· 기업 신용등급 및 최근 3개년 매출액</td> </tr> <tr> <td>⑨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시 가점인정)</td> <td>· 혁신제품 인증서, G-PASS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비수도권 확인용),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그 외 인증서</td> </tr> </tbody> </table>		항목	비고	필수	① 중점지원기업 참가신청서 및 기초자료		② 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③ 최근 3개년 수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 무역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	④ 최근 3개년 해외 ODA 사업 프로젝트 수주 증빙	·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⑤ 해외 네트워크 보유 증빙	· 현지 사업자등록증명 등	⑥ 국내·외 인증 증명서 및 국제산업재산권	· (국내인증) 우수제품, NEP, NET 등 · (해외인증) CE, UL, FDA 등 인증서 · (국제산업재산권) 국제 특허 증빙	⑦ 외국어 홍보물 증빙자료	· 카탈로그, 웹사이트, 동영상 등	⑧ 경영 재무상태 관련 증빙자료	· 기업 신용등급 및 최근 3개년 매출액	⑨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시 가점인정)	· 혁신제품 인증서 , G-PASS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비수도권 확인용),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그 외 인증서
	항목	비고																						
필수	① 중점지원기업 참가신청서 및 기초자료																							
	② 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③ 최근 3개년 수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 무역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																						
	④ 최근 3개년 해외 ODA 사업 프로젝트 수주 증빙	·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⑤ 해외 네트워크 보유 증빙	· 현지 사업자등록증명 등																						
	⑥ 국내·외 인증 증명서 및 국제산업재산권	· (국내인증) 우수제품, NEP, NET 등 · (해외인증) CE, UL, FDA 등 인증서 · (국제산업재산권) 국제 특허 증빙																						
	⑦ 외국어 홍보물 증빙자료	· 카탈로그, 웹사이트, 동영상 등																						
	⑧ 경영 재무상태 관련 증빙자료	· 기업 신용등급 및 최근 3개년 매출액																						
	⑨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시 가점인정)	· 혁신제품 인증서 , G-PASS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비수도권 확인용),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그 외 인증서																						
문의처	▪ (중점지원기업 접수처) ☎ 02-6203-7728/7761 / E-mail admin@kodabiz.com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해외진출 관련 기업역량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상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계</th> <th>대상</th> <th>지원내용</th> <th>지원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반 조성</td> <td>전략수립 [1단계]</td> <td>-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td> <td>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td> <td>1억원 (총 6억원)</td> </tr> <tr> <td>역량강화 [2단계]</td> <td>-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td> <td>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 1단계 수행기업 가점 5점('25년~)</td> <td>3억원 (총 30억원)</td> </tr> <tr> <td colspan="2">판로개척 [3단계]</td> <td>-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td> <td>입찰 및 투자 지원,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td> <td>2억원 (총 18억원)</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총계</td> <td>54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단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반 조성	전략수립 [1단계]	-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	1억원 (총 6억원)	역량강화 [2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	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 1단계 수행기업 가점 5점('25년~)	3억원 (총 30억원)	판로개척 [3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	입찰 및 투자 지원,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	2억원 (총 18억원)	총계				54억원
	구분	단계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반 조성	전략수립 [1단계]	-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	1억원 (총 6억원)																							
		역량강화 [2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	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 1단계 수행기업 가점 5점('25년~)	3억원 (총 30억원)																							
	판로개척 [3단계]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완료 기업	입찰 및 투자 지원,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	2억원 (총 18억원)																							
	총계				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전문가 활용, 마케팅, 기술실적확보, 출장 및 초청, 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분야</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전문가 활용</td> <td>전략 컨설팅(해외진출 전략 컨설팅)</td> </tr> <tr> <td>브랜드 개발(컨셉/CI/브랜드/디자인 개발 등)</td> </tr> <tr> <td>전문 컨설팅(법무, 세무, 통관, 수출, 회계, 시장조사 등)</td> </tr> <tr> <td>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해외법인설립, 공공조달 참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td> </tr> <tr> <td rowspan="4">마케팅</td> <td>통번역</td> </tr> <tr> <td>전시회/행사 참가(해외 전문 전시회, 제품시연회 등)</td> </tr> <tr> <td>홍보물 제작(영상, 브로슈어, 웹페이지, 모형 등)</td> </tr> <tr> <td>전자상거래 등록 홍보/광고(TV, 신문, 잡지, SNS 등)</td> </tr> <tr> <td rowspan="3">기술실적확보</td> <td>인증</td> </tr> <tr> <td>특허 등 지재권 취득</td> </tr> <tr> <td>시험분석·대행 제품 샘플 제작</td> </tr> <tr> <td rowspan="2">출장 및 초청</td> <td>국외출장</td> </tr> <tr> <td>바이어 초청</td> </tr> <tr> <td rowspan="2">수수료</td> <td>물류비(수출물품 선적, 시제품, 전시참가용)</td> </tr> <tr> <td>수출보험</td> </tr> </tbody> </table>				지원분야	세부내용	전문가 활용	전략 컨설팅(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개발(컨셉/CI/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전문 컨설팅(법무, 세무, 통관, 수출, 회계, 시장조사 등)	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해외법인설립, 공공조달 참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마케팅	통번역	전시회/행사 참가(해외 전문 전시회, 제품시연회 등)	홍보물 제작(영상, 브로슈어, 웹페이지, 모형 등)	전자상거래 등록 홍보/광고(TV, 신문, 잡지, SNS 등)	기술실적확보	인증	특허 등 지재권 취득	시험분석·대행 제품 샘플 제작	출장 및 초청	국외출장	바이어 초청	수수료	물류비(수출물품 선적, 시제품, 전시참가용)	수출보험		
	지원분야	세부내용																										
전문가 활용	전략 컨설팅(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개발(컨셉/CI/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전문 컨설팅(법무, 세무, 통관, 수출, 회계, 시장조사 등)																											
	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해외법인설립, 공공조달 참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마케팅	통번역																											
	전시회/행사 참가(해외 전문 전시회, 제품시연회 등)																											
	홍보물 제작(영상, 브로슈어, 웹페이지, 모형 등)																											
	전자상거래 등록 홍보/광고(TV, 신문, 잡지, SNS 등)																											
기술실적확보	인증																											
	특허 등 지재권 취득																											
	시험분석·대행 제품 샘플 제작																											
출장 및 초청	국외출장																											
	바이어 초청																											
수수료	물류비(수출물품 선적, 시제품, 전시참가용)																											
	수출보험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12월~1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협회 웹사이트(www.kei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제출서류	수량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2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각 1부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각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각 1부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역량강화, 판로개척에 해당)(관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 02-6933-9514, 02-2088-0175 / ✉ ge100@keia.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 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친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①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②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모집구분</th> <th>주요 지원내용</th> <th>지원기간</th> <th colspan="2">지원금액^{주4)}</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단년도 사업^{주1), 주2)}</td> <td>-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td> <td>협약일 ~ '24.11.30.</td> <td colspan="2">최대 5억원</td> </tr> <tr> <td rowspan="2">다년도 사업^{주3)}</td> <td>1단계 (1년차)</td> <td>-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td> <td>협약일 ~ '24.11.30.</td> <td>최대 3억원</td> <td rowspan="2">총 최대 5억원</td> </tr> <tr> <td>2단계 (2년차)</td> <td>-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td> <td>'25.1.1. ~ 10.31.</td> <td>최대 2억원</td> </tr> </tbody> </table> <p>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 사업의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 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주4)}		단년도 사업 ^{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3억원	총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5.1.1. ~ 10.31.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주4)}																				
단년도 사업 ^{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3억원	총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5.1.1. ~ 10.31.	최대 2억원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제출(https://ecosq.or.kr, 가입시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서류제출시 사업책임자 핸드폰 인증 필요)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032-540-2178, 2189 ✉ ydjung@keiti.re.kr, soondae1318@keiti.re.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54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해외사업개발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범위)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예비타당성조사</th> <th>본타당성조사**</th> </tr> </thead> <tbody> <tr> <td>지원대상</td> <td>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td> <td>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 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td> </tr> <tr> <td>지원금액*</td> <td>프로젝트 당 2억원 내외</td> <td>프로젝트 당 10억원 내외</td> </tr> <tr> <td>세부 과업내용</td> <td>사업타당성 사전검토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td> <td>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td> </tr> <tr> <td>정부지원금 지원범위</td> <td colspan="2">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60% (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td> </tr> </tbody> </table> <p>* 지원금액은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p> <p>** 본타당성조사 상시 접수 가능</p> <p>※ 예비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확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제안서 작성·신청 <small>신청기업/ 참여기관</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전검토 <small>전담기관</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표평가 <small>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전담기관 조정(필요시) <small>기술원</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확정 <small>기술원</small></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 간담회) 3월(예정)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 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지원금액*	프로젝트 당 2억원 내외	프로젝트 당 10억원 내외	세부 과업내용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60% (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 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지원금액*	프로젝트 당 2억원 내외	프로젝트 당 10억원 내외															
세부 과업내용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입찰계획서 근거 자료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60% (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전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까지 도착 분에 한해 인정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본부동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원본/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원본	-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본타당성조사(상시접수)는 공문 필수
	2	사업제안서	사본	-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제안서 내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
	5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6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 자료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
	8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	-
	9	예비타당성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사본	-	- 본타당성 신청일 경우 * 특수 여건 사업은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여부 결정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본	-	- 정량평가 증빙 - 가점 증빙 1) 발주처 MOU, LOI, Letter 중 1개 2) 고용창출 우수기업 증빙 등	
※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02-2284-1756, 1778, 1766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사업명	물기업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주관부처	▪ 한국환경공단		
운영기관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물관리기술 보유 물기업 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현지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수출 촉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제품 보유기업 - 현지 협력기관(카타르 대학)으로부터 요청받은 수요에 기반한 '지정형 공모'와 참여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형 공모'로 추진 ※ 지정형 공모의 경우 기업제안 기술에 대한 카타르대학 기술검토 후 현지 수요기관과 매칭 예정 		
	구 분	대상국가	모집기술
	지정형	카타르 (카타르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담수 농축수 자원화(유가자원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 공정기반(NF 및 RO) 및 전기 분리 기반공정(CDI, ED, BPED)를 이용한 농축수 유가자원회수 (Mg, Li, K, NaCl 등) 기술, 다중 회수 기술 ○ 스마트팜 농업용수 처리/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기반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 용수처리/재활용기술
	자율형	제한없음	- 해외수요처 보유대상 물산업 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단독참여 불가,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학계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불가)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건당 1.5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2년) -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현지 기술검증 등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참여주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 		
	참여주체	지원비율	비고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80%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중견기업	70%	
대기업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및 신청서류) - 제출방법: 온라인신청(waterrnd6415@keco.or.kr)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중소기업 확인서 등 기업구분 증빙서류 ⑥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1부), ⑦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⑧ 시제품 제작관련 입주기업 제품 반영 증빙서류 ⑨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 현지 수요처와 현지 성능평가 등 사업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구매의향서 등 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⑫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⑬ 청렴서약서 ⑭ 집적단지 및 클러스터내 입주기업 확인 증빙자료(입주계약서 등) ⑮ 최근 3년간 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직접·간접수출) 및 한국무역협회(직접수출)에 발급한 실적 증명원에 한함) <p>※ 수출입실적의 경우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를 통한 확인 절차가 수행될 수 있음</p>			
신청기간	▪ 2~3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을 통한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waterrnd6415@keco.or.kr 		

<p>신청서류</p>	<p>▪ (제출서류)</p> <p>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중소기업 확인서 등 기업구분 증빙서류 ⑥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中 1부), ⑦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⑧ 시제품 제작관련 입주기업 제품 반영 증빙서류 ⑨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 현지 수요처와 현지 성능평가 등 사업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구매의향서 등 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⑫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⑬ 청렴서약서 ⑭ 집적단지 및 클러스터내 입주기업 확인 증빙자료(입주계약서 등) ⑮ 최근 3년간 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직접·간접수출) 및 한국무역협회(직접수출)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원에 한함) ※ 수출입실적의 경우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를 통한 확인 절차가 수행될 수 있음</p>
<p>문의처</p>	<p>▪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담당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박종호 과장(053-601-6113), 조은찬 대리(053-601-6116)</p>
<p>참고사항</p>	<p>▪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p>

56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 사업

사업명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물산업협의회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신청자격 필수요건: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신청자격	구분	필수요건 세부항목	
	업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인증* 	
	* 공고문 내 '해외 인증 예시'에 포함되는 인증 또는 이외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연구시설 개선 지원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혁신기술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년 지원, 공동지원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관리 		

- 1)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 ※ 정기평가: 연 1회, 종합평가: 5년/1회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수시)
 -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 2)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1년 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
- 지정 유효기간
- 1)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가능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 2)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 가능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 추진절차




신청기간 ▪ 3월

신청방법

- 접수 방법: 신청서류 메일 제출(접수메일: [innowater @kwp.or.kr](mailto:innowater@kwp.or.kr))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시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공고문 내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 발표자료** 및 관련 서류 일체(「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참조)
 - *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 **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

	<p>제출예시) 기업명.zi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_기업명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증명서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5. 제출서류_기업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5-3. 법인등기부등본 5-4.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5-5. 재무제표('21&'22년) 5-6. 인증서(국외), 5-7. 지식재산권 5-6. 고용보험명부 6. 가점 서류_기업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6-1-a. NET 6-2. 가점명 7. 발표자료_기업명 																													
신청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목 록</th> <th style="text-align: center;">담당기관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자등록증</td> <td>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td> </tr> <tr> <td>2. 중소기업확인서</td> <td>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td> </tr> <tr> <td>3. 법인등기부등본</td> <td>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td> </tr> <tr> <td>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td> <td>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td> </tr> <tr> <td>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td> <td>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td> </tr> <tr> <td>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 실적증명서</td> <td>◦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td> </tr> <tr> <td>7. 해외 인증서 등</td> <td>해당 기업에 한함</td> </tr> <tr> <td>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SEARCH → 특허·실용신안 →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td> <td>특허청(www.kipo.or.kr)</td> </tr> <tr> <td>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 → 증명원신청,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0.1.1~12.31/'21.1.1~12.31/'22.1.1~공고일)</td> <td>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td> </tr> <tr> <td>10. NET/NEP</td> <td>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td> </tr> <tr> <td>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td> <td>◦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td> </tr> <tr> <td>12. 기업부설연구소 ◦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바로가기 서비스 → 인증서 출력</td> <td>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td> </tr> <tr> <td>13. 기타 가점 증빙서류</td> <td>해당 기업에 한함</td> </tr> </tbody> </table>	목 록	담당기관 예시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3.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 실적증명서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7. 해외 인증서 등	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SEARCH → 특허·실용신안 →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특허청(www.kipo.or.kr)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 → 증명원신청,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0.1.1~12.31/'21.1.1~12.31/'22.1.1~공고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NET/NEP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	12. 기업부설연구소 ◦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바로가기 서비스 → 인증서 출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목 록	담당기관 예시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3.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 실적증명서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7. 해외 인증서 등	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SEARCH → 특허·실용신안 →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특허청(www.kipo.or.kr)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 → 증명원신청,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0.1.1~12.31/'21.1.1~12.31/'22.1.1~공고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NET/NEP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																												
12. 기업부설연구소 ◦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바로가기 서비스 → 인증서 출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물산업협회의 혁신형 물기업 담당과: 02-2634-6784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주관부처	▪ 환경부
운영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사업개요	▪ 국내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발주처 등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평가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국내·외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기술 ▪ 지원 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 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 지원 대상국: 북미(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물시장 및 물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지역 이외의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지원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 평가 또는 기술 검증 - 진출 대상국 발주처나 수요처 등의 요구에 의한 건으로 국내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 단, 기술 테스트 또는 검증을 위한 진행 정도가 구체화되어 공고된 사업 기간 내 현지 기술평가 진행이 가능한 사업 ▪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현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기술평가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획득할 예정인 사업 ▪ 신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 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정부의 사업화 또는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지원 불가하며 그로 인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술 평가 또는 테스트, 제3자 검증 소요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테스트 비용, 물품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타 경비 등 ▪ 해외 진출 및 기술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 7~8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방법: 메일(kwp@kwp.or.kr)로 관련서류 제출 ▪ 참가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전자우편(kwp@kwp.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제목: (기업명)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신청 ▪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마감시한까지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 * 운영지침에 제시된 양식 이외의 지원사업 신청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 가능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공문 및 본 사업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 6)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부 7) 별지 서식의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신청기업 중 주관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을 제외한 신청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 협정문 등 컨소시엄 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필요 -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이메일로 서류접수 후 회신 이메일로 접수확인증 송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 한국물산업협의회 물기업 담당과: 02-2634-6785
참고사항	▪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물산업 해외전시회 한국관					
주관부처	▪ 환경부					
운영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사업개요	▪ 국내 우수 물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중소 물기업 ▪ (물산업 해외전시회 개요)* '24년도 공고 기준					
지원내용	구분	ACE	SIWW	WETEX	WEFTEC	
	일시	'24.6.11~13 (회의:10~13)	'24.6.19~21 (회의: 18~22)	'24.10.1~3	'24.10.7~9 (회의: 5~9)	
	장소	미국 애너하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컨벤션센터)	UAE 두바이 (두바이 무역센터)	미국 뉴올리언스 (모리얼컨벤션센터)	
	한국관 규모	12부스 (30ft x 40ft)	13부스 (6m x20m)	16부스 (36sqm/블록 x4개)	12부스 (30ft x 40ft)	
	참가기업 모집수	10개사	11개사	14개사	10개사	
	기업부담금**	4백 만원	4백 만원	3백 만원	4백 만원	
	참여기관	대구시, 수공, 공단, 인증원, KWP	대구시, 수공, 인증원, KWP	수공, 공단, KWP	대구시, 수공, 공단, 인증원, KWP	
	* 상기 전시회 일정 등 안내사항은 전시회 주최기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의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자유과제 분야와 연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별도 안내)					
	▪ (지원사항)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부스임차·설치비		· 부스임차·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 해상 1CBM 편도 (발생되는 tax, 수수료 및 반송비용 제외)				
통역원		· 전문통역원 1인/1~2개				
홍보·마케팅 지원		· 한국관 참가기업 통합 디렉토리 제작 및 배포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기타		· 전시자 뱃지 2매, 기념품, 네트워킹 행사 참여등				
※ 불포함 사항(기업 자체부담)						
- 전시부스 내 기본 제공 장치 외에 추가 장치비용, 편도 운송료(복편),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수수료, 참가기업 출장경비 등 선정기업 지원사항 외 항						
신청기간	▪ 2월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한국물산업협의회 정가영 사원: jga0@kwp.or.kr)					
	▪ 선정방법: 전시회별 평가위원 평가 및 선정 - 평가결과 및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별 최대 3개 전시회 참가지원 * 예시) A기업이 4개 전시회 전부 선정된 경우 기업희망 우선순위 1~3순위 전시회만 참가가능 → 4순위 전시회는 차상위 B기업 선정					
신청서류	▪ (제출서류) - 1. 한국관 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국·영문 회사/제품 소개서, 4. 수출실적증빙서류('21~23년) 5. 표준재무제표('20~22년), 6. 고용보험명부, 7. 특허 및 인증서 증빙서류 8. 온라인 홍보물 및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SNS 링크, 전시회 출장보고서 등)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선정 후 전시품 해상 운송일정 확인 및 전시품 사전준비 필수 * ACE 24 전시품 운송은 3월 중순 서류접수 및 입고 마감 예정*					
문의처	▪ 정가영 사원: jga0@kwp.or.kr, 02-2634-6798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입 지원 사업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개요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 기업(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후속 성과 및 우수사례 창출 적극 지원	
신청자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 이력이 있는 기업 * 상담 이력('24년 3월 15일까지 상담 신청완료)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	
지원내용	▪ 시장 진입 맞춤형 비용 지원: 국내·외 시험검사·인허가·임상시험 설계 및 기타 국내·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정부지원금의 5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매칭)	
	구분	내용
	지원분야 및 내용	① 국내·외 시험검사 및 인허가 관련 소요비용 ② 국내·외 임상검사 설계 관련 소요비용 ③ 기타 국내·외 시장 진입* 소요비용 * 수출대상국 시장 및 진출전략 조사 분석 등
지원규모	· 기업당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총 10개 기업 내외) ※ 선정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3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제출(방문 제출 가능) - (이메일 접수처) kimkh825@khidi.or.kr - (우편 제출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혁신팀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및 신청서 ※ 사업 예산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포함(사업계획서 내 참조) ▪ 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요약재무제표 - (해당시) 산업재산권 보유시 해당 서류 - (해당시) 혁신의료기기 지정제품 보유시 해당 서류 - (해당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업일 경우 해당 서류 - (해당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해당시) 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관련 서류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혁신팀) ☎ 043-713-8881 / E-mail kimkh825@khidi.or.kr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지원사업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개요	▪ 주요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내 국산 제품으로 구성된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구현하여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각 전시회별 상이(각 전시회 특성에 따름)																							
지원내용	<p>▪ 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 및 전시부스 소요비용* 지원 · 부스 임차료, 설치 및 장치비, 부대시설비, 비즈니스 매칭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등 *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진흥원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여 통합전시관 조성 및 운영 ** 전시부스 디자인, 공간배치 등은 진흥원에서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참여기업 협조 예정 - (자부담 사항) 전시품 운송·통관 비용, 참여기업 출장인원 출장비·체재비 ※ 신청기업은 통합전시관 부스내에서 구현 될 제품홍보영상(3분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시기간동안 1인 이상 담당자 필히 상주 <p>▪ 추진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신청 접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정통보(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적서류 접수 마감(선정기업) → 전시물품 집하(선정기업) → 전시회 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 사업성과공유(선정기업)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사전설명회 등의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성과 공유는 현장제출임 <p>▪ 평가 및 선정 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td> <td>·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전시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자료제출 마감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면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td> <td>·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평가(평가결과 70점 미만 기업 탈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평가</td> <td>· 최종 점수에 따라 선정</td> </tr> </table> <p>※ 전시회별 선정평가 별도 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전시회만 선정될 수 있음) ※ 모집결과에 따라 평가방식(서면평가, 발표평가 등) 변동 가능, 추후 통보 예정</p> <p>▪ 평가항목(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신청 제품의 우수성 (50점)</td> <td colspan="2">· 신청 제품의 매출 규모 및 수출 이력 · 신청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등 인증 건수 · 신청 제품의 전시회 참가 적합성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업의 적절성 (40점)</td> <td colspan="2">· 신청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 내부 역량, 제품(기술)의 유망성 · 국내·외 시장진출 의지 ※ 시장진출 가능성, 기술수준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시회 파급효과 (10점)</td> <td colspan="2">· 전시회를 통한 시장진입, 매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점 (10점)</td> <td>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5점)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5. 여성기업(1점) 6. 장애인기업(1점)</td> <td>7. 벤처 인증기업(1점) 8. 사회적 기업(1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td> </tr> </table>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전시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자료제출 마감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		서면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평가(평가결과 70점 미만 기업 탈락)	↓		종합평가	· 최종 점수에 따라 선정	신청 제품의 우수성 (50점)	· 신청 제품의 매출 규모 및 수출 이력 · 신청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등 인증 건수 · 신청 제품의 전시회 참가 적합성 등		신청기업의 적절성 (40점)	· 신청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 내부 역량, 제품(기술)의 유망성 · 국내·외 시장진출 의지 ※ 시장진출 가능성, 기술수준 등		전시회 파급효과 (10점)	· 전시회를 통한 시장진입, 매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가점 (10점)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5점)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5. 여성기업(1점) 6. 장애인기업(1점)	7. 벤처 인증기업(1점) 8. 사회적 기업(1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전시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자료제출 마감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																								
서면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평가(평가결과 70점 미만 기업 탈락)																							
↓																								
종합평가	· 최종 점수에 따라 선정																							
신청 제품의 우수성 (50점)	· 신청 제품의 매출 규모 및 수출 이력 · 신청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등 인증 건수 · 신청 제품의 전시회 참가 적합성 등																							
신청기업의 적절성 (40점)	· 신청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 내부 역량, 제품(기술)의 유망성 · 국내·외 시장진출 의지 ※ 시장진출 가능성, 기술수준 등																							
전시회 파급효과 (10점)	· 전시회를 통한 시장진입, 매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가점 (10점)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5점)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5. 여성기업(1점) 6. 장애인기업(1점)	7. 벤처 인증기업(1점) 8. 사회적 기업(1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규정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통 제출서류)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TF팀: 043-713-8561, movement325@khidi.or.kr																							
참고사항	▪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61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사업명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개요	▪ 해외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 마케팅, 현지시장조사, 국제운송,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비용 지원																
신청자격	▪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관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지원규모</td> <td>총 10개 기업 내외</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최대 15백만원 내외</td> </tr> </tbody> </table>		구분	주관기관	전체 지원규모	총 10개 기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내외									
	구분	주관기관															
	전체 지원규모	총 10개 기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관리기관(진흥원)은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내용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분류</th> <th>주요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마케팅</td> <td>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등</td> </tr> <tr> <td>2</td> <td>현지시장 조사</td> <td>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td> </tr> <tr> <td>3</td> <td>국제운송 지원</td> <td>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td> </tr> <tr> <td>4</td> <td>글로벌 협력</td> <td>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 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td> </tr> </tbody> </table>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등	2	현지시장 조사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3	국제운송 지원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4	글로벌 협력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 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등														
2	현지시장 조사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3	국제운송 지원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4	글로벌 협력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 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 비용의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 사업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0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사업 시작 시(4월 예정), 2차분은 하반기 시작 시(9월 예정) 사업비 교부																	
-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계상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주관기관으로 입금되고, 신청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에 총사업비를 생성 ※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 신청기업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신청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를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필(아래 표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분류</th> <th>주요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마케팅</td> <td>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td> </tr> <tr> <td>2</td> <td>현지시장 조사</td> <td>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td> </tr> <tr> <td>3</td> <td>국제운송 지원</td> <td>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td> </tr> <tr> <td>4</td> <td>글로벌 협력</td> <td>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td> </tr> </tbody> </table>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	2	현지시장 조사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3	국제운송 지원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4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															
2	현지시장 조사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3	국제운송 지원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4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 신청기업은 지원 사업 수행 시 추진할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종료일에 결과보고서 제출필요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보고서 함께 제출(정부지원금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사업종료 전 지정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이 사용내역대로 지출되었는지 확인)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 보고에 본 사업을 통한 지원 성과를 제출																	
- 사업 수행기업은 진흥원에서 사업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연도별 성과 : ① 지원 사업 당해 년도 및 차년도의 지원 제품 및 기업의 매출·수출 실적(계약건이 차년도로 진행될 경우 차년도 성과 제출) ② 지원 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 사업년도 이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한 후속 성과관리 예정(연2회)
- 사업 수행을 통한 국산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성과 홍보 시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 평가 항목(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 신청기업의 적절성(40%),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50%), 파급효과(10%)로 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의 적절성 (40점)	- 맞춤형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부 * 기업규모, 종업원 수, 업력 등 - 신청기업 제품(기술)의 유망성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 수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 - 신청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업 추진 의지 - 신청기업의 경쟁력(연구개발 투자 비중 및 매출 등)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50점)	-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 금액 규모의 타당성 및 지출계획의 구체성	
파급효과 (10점)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결과 활용계획 등	
가산점 (10점)	1.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5점)	6. 장애인기업(1점)
	2.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7. 벤처 인증기업(1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8. 사회적 기업(1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9. 전년도 우수과제 기업(3점)
	5. 여성기업(1점)	10. 전년도 불성실과제 기업(-3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기업: 참여기업이 의료기기 산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품: 참여기업의 제품이 의료기기 산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은 제품

▪ 추진절차



- ※ 중간점검 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기업은 사업 수행 시 지원금 교부조건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요함 (지원금 사용 계획(산출내역서) 시 회계정산비용 포함 의무)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선정 통보 및 협약 서류 안내</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필요 서류 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협약체결</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선금지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잔금지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 </div> </div> <p>※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필요 서류)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입인지, 선금청구 공문, 선금 교부신청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착수계, 사업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p> <p>※ (잔금 지급 필요 서류) 잔금청구 공문, 잔금 교부신청서, 완료계,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정산보고서, 결과 보고서</p> <p>※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예정</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한국보건산업진흥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신청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청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청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청기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청기업</div> </div>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1부) ※ 이메일 제출: 신청서 원본파일 및 부록서류 스캔파일 일체, 우편/방문 제출: 사업신청서 1부 및 부록서류 일체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1부 및 부록서류 일체(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및 신청서 원본파일(PDF 파일 금지) ※ 원본 전자 파일과 부록서류는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요망 ※ 파일제목 예시: (기업명)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스프링 및 여타의 제본 금지, 반드시 사업신청서 좌측 상단에 집계 고정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부록서류는 반드시 각 사업신청서 내부 “V 첨부서류”에 첨부(개별첨부 금지) 1)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 5) 기타 신청기업의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565, hjpark13@khidi.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개요	▪ 진출 국가 의료기관 및 수요처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성과(인허가, 협약, 계약 등) 도출 ▪ (지원대상)																											
신청자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단독 진출</th> <th>동반 진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원대상</td> <td colspan="2">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또는 '의료기관'</td> </tr> <tr> <td colspan="2">※ '23년도 지원사업(모델, 시범, 실증) 참여기업·기관이 본 사업을 통하여 매출 계약 성사 등 구체적인 해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td> </tr> <tr> <td rowspan="2">지원규모</td> <td>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td> <td>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td> </tr> <tr> <td colspan="2">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td> </tr> <tr> <td rowspan="2">지원기간</td> <td colspan="2">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td> </tr> <tr> <td colspan="2">*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td> </tr> <tr> <td rowspan="2">지원조건</td> <td colspan="2">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td> </tr> <tr> <td colspan="2">※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td> </tr> <tr> <td>수행내용</td> <td colspan="2">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td> </tr> </tbody> </table>		분야	단독 진출	동반 진출	지원대상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또는 '의료기관'		※ '23년도 지원사업(모델, 시범, 실증) 참여기업·기관이 본 사업을 통하여 매출 계약 성사 등 구체적인 해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지원규모	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		수행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	
	분야	단독 진출	동반 진출																									
	지원대상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또는 '의료기관'																										
		※ '23년도 지원사업(모델, 시범, 실증) 참여기업·기관이 본 사업을 통하여 매출 계약 성사 등 구체적인 해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지원규모	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																											
수행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평가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의료기관 또는 기업 -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접수 기간 내 사업계획 관련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단독 진출</th> <th>동반 진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원규모</td> <td>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td> <td>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td> </tr> <tr> <td colspan="2">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td> </tr> <tr> <td rowspan="2">지원기간</td> <td colspan="2">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td> </tr> <tr> <td colspan="2">*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td> </tr> <tr> <td rowspan="2">지원조건</td> <td colspan="2">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td> </tr> <tr> <td colspan="2">※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td> </tr> <tr> <td>수행내용</td> <td colspan="2">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td> </tr> </tbody> </table>		분야	단독 진출	동반 진출	지원규모	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		수행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						
	분야	단독 진출	동반 진출																									
	지원규모	국고보조금 2억씩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 이내 지원																									
		국고보조금 2억 ~ 최대 3억원 지원 (6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 진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실제 현지 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총 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35% 이상 매칭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업의 자율 제시 (예시) 200백만원(총사업비)=130백만원(국고보조금)+70백만원(자기부담금)																											
수행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모델개발 및 활용 실적(현지 의료기관 도입, 임상 활용 등)을 통한 인허가, 협약, 계약 등의 진출 성과 달성																											
신청기간	▪ 1월~2월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제출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후, 사업계획서 및 별지서식 등을 다운로드 하여 해당서류 일체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접수처 - (이메일 접수처) plan123@khidi.or.kr (디지털헬스케어팀) - (우편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팀 조정훈 책임연구원 043-713-8471, plan123@khidi.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 SW/ICT기업 대상으로 유망 SW 제품/서비스의 해외 현지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목표 시장 진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목표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현지화와 수출마케팅 등을 추진 중인 국내 중소·중견 SW/ICT 기업(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과 당해연도(2024년)에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7개 과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총 사업비의 25%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예) 정부지원금(70백만원), 민간부담금(23.4백만원) ▪ 지원내용: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 SW제품/서비스 대상으로 현지 시장에 맞는 SW 현지화(전략수립, 개발, 품질검 증 등) 및 수출마케팅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를 위한 전략수립/현지화개발/품질검증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활동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금지원</td> <td> <table border="1"> <tr> <td>현지화 전략수립</td> <td>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td> </tr> <tr> <td>현지화 개발</td> <td>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td> </tr> <tr> <td rowspan="2">품질검증</td> <td> <p>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 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td> </tr> </table></td></tr></tbody> </table>		구분	활동내용	자금지원	<table border="1"> <tr> <td>현지화 전략수립</td> <td>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td> </tr> <tr> <td>현지화 개발</td> <td>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td> </tr> <tr> <td rowspan="2">품질검증</td> <td> <p>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 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td> </tr> </table>	현지화 전략수립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현지화 개발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품질검증
구분	활동내용										
자금지원	<table border="1"> <tr> <td>현지화 전략수립</td> <td>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td> </tr> <tr> <td>현지화 개발</td> <td>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td> </tr> <tr> <td rowspan="2">품질검증</td> <td> <p>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 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td> </tr> </table>	현지화 전략수립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현지화 개발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품질검증	<p>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 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현지화 전략수립	<p>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현지화 개발	<p>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 (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품질검증	<p>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 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2) 수출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시장 진출관련 마케팅 및 수출전략 마련을 위한 활동 ·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해외시장 조사(경쟁사 동향, 유통구조 등), 현지 잠재 고객사·투자사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해외전시 참여, 세일즈 툴킷 제작 등 										

신청기간	▪ 2~3월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시스템(<https://smart.nipa.kr>)을 통한 전산접수 - ※ 주의사항: 사업신청서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마감 시간 준수																												
신청서류	▪ 과제접수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산접수시		---	----------------	-------		1	사업수행계획서	○		2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협약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현금 출자(납입) 협약서	○		5	사전 자기점검표	○		

		제출서류	전산접수시
	6	평가항목 참조표	0
	7	사업자등록증	0
	8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0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0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0
	11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0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0
<p>*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전산 접수해야 하며, 필수 서류 전부(일부) 누락할 경우 적정성(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p> <p>* 위의 첨부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침령이행각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p>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사업문의): 043-931-5591 ▪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전산접수문의): 070-5151-8239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상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전시회 참가 및 기상기업 실무 지원을 통한 국내 기상 장비·기술의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기상장비·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관기관 및 기상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시장 수출 기반 조성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신청자격 제한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 조치 중인 기업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 중견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타 정부기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div>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선정 시점(5월예정)~당해년 12월말 지원예산: 약 106백만원 지원규모: 총 8개사 내외 기업 지원(기업 신청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개최기간 및 장소: 2023년 10월 3일~5일, 스위스 제네바 Palexpo 지원내용: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 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전시회 개최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원에서 일괄 추진하며, 별도 참가 시 예산 미지원 - 항공료, 숙박, 여비, 기업 전시 물품 운송비 등은 미지원 사업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월별 준비현황 점검] →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 → [수출실적 보고]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실적 제출 필요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수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을 통해 사업신청: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 서류 송부 ※ 사업담당자 이메일: cyenture@kmiti.or.kr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공문(기업 자율 양식)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기타 증빙서류(신청서 및 계획서상 기재한 증빙자료 사본 제출) 각 1부 <p>※ 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p>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070-5003-5246/ cyenture@kmiti.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65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상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수출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외대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 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및 세금 납부 불이행자 회생 기업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 자본잠식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 조치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div>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0백만원/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분야: 수출규모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조합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분류</th> <th style="width: 50%;">수출실적증명서 기준*</th> <th style="width: 30%;">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수출 초보</td> <td>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10만불 미만'</td> <td>2천만원 이내</td> </tr> <tr> <td>수출 유망</td> <td>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td> <td>3천만원 이내</td> </tr> <tr> <td>수출 성장</td> <td>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td> <td>5천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p>※ 선정기업 수는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대상기업 부담 필수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6조(수출실적 인정금액), 28조(증명발급기관)에 근거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p>		분류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지원한도	수출 초보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10만불 미만'	2천만원 이내	수출 유망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	3천만원 이내	수출 성장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5천만원 이내
분류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지원한도												
수출 초보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0~10만불 미만'	2천만원 이내												
수출 유망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	3천만원 이내												
수출 성장	3년 평균 수출액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5천만원 이내												

수출 규모		지원분야	지원 내역	지원한도	
성장	유망	초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홍보영상의 경우 지원한도 10백만원	5백만원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5백만원
			국제전시회 참가	· 국제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1천만원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시장 조사 비용	1천만원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1천만원
			시제품 제작·개선	· 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2천만원
			국제 물류 운송	·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5백만원
			해외인증·특허획득	· 해외 기술 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1천만원
			기술현지화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공정 제작개선 컨설팅, 제조 필요한 전문가인 용역비, 재료비 등	3천만원
<p>※ 수출규모(초보·유망·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가능</p> <p>※ 당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사업비 적정성 부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p> <p>▪ 사업 일정 - [신청기간]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점검]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실시] → [수출실적 보고]</p>					
신청기간	▪ 2월				
신청방법	<p>▪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공고 웹페이지 첨부파일참고)</p> <p>※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p> <p>▪ 이메일 서류제출: yul0616@kmiti.or.kr</p>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별지 제2호] (※ 기술현지화 지원 시 제출) 3. 서약서 [별지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7.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8. 최근 5년간 수출실적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11.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 070-5003-5246, 5247/yul0616@kmiti.or.kr				
참고사항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K-테스트베드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 ※ 담당부서: 물산업혁신처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이 보유한 인프라를 개방하여 국내 쏠 산업 분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기술·제품 실증을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모든 산업 분야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나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우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제품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공판로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기업이 제안하는 R&D 과제를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또는 공동 연구·개발 시행 - (단순실증) 기업이 참여기관의 실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제품의 실·검증 시행 - (기술·제품 성능확인) 기업이 참여기관의 실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실증 진행 후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기술·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목표 성능 달성과제는 성능확인서 발급 ▪ 지원기간: 최대 1년(필요시 연장가능) ▪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총 43개 기관, '24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하하여 홈페이지 참고 요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1단계 개발 기술·제품과 적합한 실증인프라 정보 사전 파악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2단계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공모 지원 (실증 참여분야 및 실증 희망기관 선택 필요)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3단계 기관별 자체평가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6단계 우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예정)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5단계 종합평가 (성능확인서 발급 등)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4단계 계약체결 및 실증 지원 * (단순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 (성능확인) 자체평가/현장평가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 및 실증인프라 현황 메뉴를 통해, 실증 지원 정보를 사전 제공 ※ 참여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및 인프라 매칭(공모기간 종료 후 과제선정 시행하지만, 상세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하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지원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관의 실증인프라 운영 여건에 따라 테스트베드 제공이 지연되거나, 실증인프라 매칭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3~4월 ▪ (하반기) 9~10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테스트베드 누리집(www.ktestbed.net) 접속 → [기술개발 공모] → [통합공모 신청] * 과제신청 시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공고문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기관별 신청 유의사항’을 통해 개별 기관 별도 제출서류 유무 확인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분야별, 기관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기관별 접수 유의 사항 참고 요망 - 과제 제출(확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내용 확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확정)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담당자에게 반력 요청 후 재제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 테스트베드운영부(제도 관련 문의): 042-629-2522 ▪ 한국수자원공사 테스트베드운영부(시스템 관련 문의): 042-629-2523 ▪ 기관별 실증 인프라 관련 문의: 개별 기관별 담당자 검색 후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테스트베드 누리집(www.ktestbed.net) 접속 → [플랫폼 소개] → [담당자 연락처] 탭에서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K-테스트베드 플랫폼) 클릭

67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사업명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지원 내역			
	수출 희망기업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희망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수출 진입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100만 미만(별도 지정한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US\$30만 미만)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 중인 기업 			
	수출 확장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100만 이상 US\$500만 미만(별도 지정한 서비스업은 US\$30만 이상 US\$150만 미만)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수출 주력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500만 이상(별도 지정한 서비스업은 US\$150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지정한 서비스업 					
업종코드 (대분류)		분류명	업종코드 (대분류)	분류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지원내용 				
	단계	수출희망 기업 특례보증	수출진입 기업보증	수출확장 기업보증	수출주력 기업보증
	지원대상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기업 (수출희망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연 수출실적 US\$100만 미만 등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30만 미만)	연 수출실적 US\$100만~\$500만 등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30만~\$150만)	연 수출실적 US\$500만 이상 (별도지정 서비스업은 US\$150만 이상)
	대상채무	운전자금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기업당 한도	최대 3억원	30억원 (최고보증한도 대상보증은 70억원)		
	매출액 한도	사정특례	매출액의 1/2~1/4	매출액의 1/2~1/3	매출액의 1/2
	보증료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90% 이상		
	비금융 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 신용보증 수수료율 0.2%p 감면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상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타 참고사항'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이용 절차 웹페이지 참고 1. 보증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방문상담 생략) ※ 상담 단계에서,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상담 가능 2.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료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p>3. 보증심사 및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p>4. 보증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제출 또는 고객센터의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자료원천</th> <th style="width: 50%;">신용조사자료</th> <th style="width: 25%;">고객협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대법원등기자료</td> <td>-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td> <td>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td> </tr> <tr> <td>행정정보자료</td> <td>-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td> <td>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활용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보직원이 직접 수집</td> </tr> <tr> <td>금융거래정보자료</td> <td>- 전자금융거래확인서</td> <td rowspan="2">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td> </tr> <tr> <td>국세청자료</td> <td>-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td> </tr> <tr> <td>세무회계자료</td> <td>-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td> <td>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td> </tr> <tr> <td>기타자료</td> <td>-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능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td> <td>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td> </tr> </tbody> </table> <p>*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등</p>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기자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행정정보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활용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보직원이 직접 수집	금융거래정보자료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국세청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세무회계자료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기타자료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능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기자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행정정보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활용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보직원이 직접 수집																			
금융거래정보자료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국세청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세무회계자료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기타자료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능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8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페이지) 클릭 ▪ (사업 소개 페이지) 클릭 																				

사업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유망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글로벌마켓 테스트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역량증진 및 수출활성화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 업체 50개사 내외 - (품목) 농기계, 친환경 농자재, 사료, 동물용 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스마트팜 포함),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의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 조치)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 대상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div>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및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분야를 동시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지원업체 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분야 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 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증범위</td> <td>·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 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제외</td> </tr> <tr> <td>지원한도</td> <td>·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td> </tr> <tr> <td>지원내용</td> <td>· 해외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시장 조사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td> </tr> <tr> <td>지원절차</td> <td>· 선정업체는 인증 취득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td> </tr> </tbody> </table> (분야 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 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td> <td>·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td> </tr> <tr> <td>지원내용</td> <td>· 수출국 현지 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 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현지 광고·홍보,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입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td> </tr> <tr> <td>지원절차</td> <td>· 선정업체는 마켓테스트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 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해외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시장 조사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절차	· 선정업체는 인증 취득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수출국 현지 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 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현지 광고·홍보,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입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	지원절차	· 선정업체는 마켓테스트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구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 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해외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시장 조사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절차	· 선정업체는 인증 취득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 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 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수출국 현지 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 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현지 광고·홍보,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입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																			
지원절차	· 선정업체는 마켓테스트 및 비용 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신청기간	2~3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을 통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smart_ag@ekr.or.kr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수) 사업 참가신청서 1부(웹사이트 내 작성) ② (필수) 사업계획서 1부(웹사이트 내 작성) ③ (필수) 온라인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minwon.dataline.co.kr/epis.n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기업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 (관련 문의처) 02-3771-1155 ④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선택)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 </div> ▪ (계량평가 증빙자료) 가산점 증빙 및 실적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 증빙)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60%;">항목</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30%;">증빙서류</th> </tr> </thead> <tbody> <tr> <td>① 협회* 추천 기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시설원예협의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 추천서</td> </tr> <tr> <td>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5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래 참고</td> </tr> <tr> <td>-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인증서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td> </tr> <tr> <td>-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기업</td> </tr> <tr> <td>-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인증서</td> </tr> <tr> <td>-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기 수행 완료 기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기관 직인 실증 결과보고서 등</td> </tr> </tbody> </table> - (실적 증빙) 수출 및 해외 마케팅 활동 등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계약서/MOU 사본 ② 해외 마케팅 활동 추진 실적(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등) ③ 국내외 인증서(ISO, HACCP, GAP, GMP, KGMP 등) ④ 수출제품 관련 특허(출원) 등록증 </div> 	항목	점수	증빙서류	① 협회* 추천 기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시설원예협의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5점	협회 추천서	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	5점	아래 참고	-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3점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인증서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해당 인증서	-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기 수행 완료 기업		관련 기관 직인 실증 결과보고서 등
항목	점수	증빙서류																		
① 협회* 추천 기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시설원예협의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5점	협회 추천서																		
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	5점	아래 참고																		
-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3점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인증서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해당 인증서																		
-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기 수행 완료 기업		관련 기관 직인 실증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고객센터' - 'Q&A 게시판'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 061-338-5750, / E-mail smart_ag@ekr.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사업명	농산업체 수출단계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운영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 수출농산업체에 해외 바이어 대상 현지 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신청자격	<p>▪ 농기자재, 스마트팜, 농식품(바이오 포함), 품종 분야 농산업체 ※ 농진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최대 60% 우선 선정, 그 외 참여기업 40% 수준 선정(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참여 제한 대상 ></p> <p style="text-align: center;">※ 아래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판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내용	<p>▪ (지원내용) ① 현지 수출용 제품 개선, ② 홍보자료 제작, ③ 통번역서비스 ④ 지식재산권보호 ⑤ 개별박람회 참가 ⑥ 전문가 컨설팅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추진(항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 → 사업완료 후, 증빙 정산 및 자부담비(지원금의 10%) 상계처리하여 지급</p> <p>※ (사업참가 협약 이후) 제출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 미제출 시, 참가기업은 농진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지원비 10%)을 납부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수출용 제품개선) (수출대상국의 규격 및 기준을 고려한) 샘플 제작, 제품 개선, 디자인, 라벨링, 포장 등 - ② 홍보자료 제작) 바이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자료 제작, 홈페이지 개선, 홍보영상 제작 등 ※ 홍보자료는 수출 증대(성과)를 목표로 제작되어야 함(외국어 제작 필수) - ③ 통번역서비스) 현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통역, 글로벌 마케팅 자료를 위한 외국어번역 - ④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의 현지 IP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등록유지비용 제외 - ⑤ 개별 박람회 참가)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전시 물품 운송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 ⑥ 전문가 컨설팅)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상담 및 조사, 현지 마케팅 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의 자료조사 <p style="text-align: center;">【박람회별 정산 가능 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의사항-개별박람회</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항공비, 현지 체재비 등 출장비, 참가 보증금 및 취소수수료, 전시물품 반송비(수입), 핸드캐리 운송비 등)은 불인정 · 해외 개최 박람회만 인정 </td> </tr> </tbody> </table>	주의사항-개별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항공비, 현지 체재비 등 출장비, 참가 보증금 및 취소수수료, 전시물품 반송비(수입), 핸드캐리 운송비 등)은 불인정 · 해외 개최 박람회만 인정
주의사항-개별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항공비, 현지 체재비 등 출장비, 참가 보증금 및 취소수수료, 전시물품 반송비(수입), 핸드캐리 운송비 등)은 불인정 · 해외 개최 박람회만 인정 			
신청기간	▪ 1~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dennisl@koat.or.kr)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음 			
신청서류	구분	연번	내용	
	필수	①	· 참가신청서	
		②	· 사업계획서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 참가서약서	
		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 전전년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기타 서류 인정 불가)	
		⑦	·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빙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⑧	· 전전년도,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금연월’ 기준, 1인 사업자 등 제출불가 기업은 별도 문의)	
		⑨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국문·영문 및 기타 언어로 제작된 영상, 브로슈어 모두 해당)	
	필수 (해당시)	⑩	· 농촌진흥청·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 이전 계약서(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내용의 계약서만 인정)	
	선택	⑪	· 우대사항 증빙자료(농진원 기술이전기업, 농기자재 수출기업협의회(AEA) 회원사)	
선택	⑫	· 기타 심사와 관련한 참고서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글로벌사업팀) ☎ 063-919-1456/ E-mail dennisl@koat.or.k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사업 공고 페이지) 클릭 			